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1-593

2021년 공익법인 업무 편람

전라북도교육청

목 차

Ⅰ 법인일반

1. 법인의 정의 ····· 9
2. 법인의 종류 ····· 9

Ⅱ 법인의 설립과 해산

1. 법인의 설립 ····· 15
2. 법인의 해산·청산 ····· 106

Ⅲ 법인의 관리·운영

1. 재산관리 ····· 143
2. 사업관리 ····· 208
3. 정관관리 ····· 231
4. 임원관리 ····· 254
5. 회계관리 ····· 276

Ⅳ 법인 지도·감독

1. 행정처분 기준 ····· 311
2. 민원사무처리 기준 ····· 329

Ⅴ 부록

1. 법인 관련 질의·회신 ····· 343
2. 법인 관련 주요 판례 ····· 497
3. 법인 관련 법령 비교 ····· 586

일 러 두 기

본 업무편람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환경 변화와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개정된 법령과 지침 결과를 반영하고자 2010년에 발간된 “공익법인 업무편람”을 보완・개정 하였습니다.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본 편람의 내용을 참조하는 시점에 따라 법령 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거 법령 등은 항상 확인하고 해석 및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령과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변화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전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 및 관계 부처(교육부, 도교육청, 지자체 혹은 타부서 등)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서식은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고,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업무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예시문으로 수록하였으니, 지역 실정 또는 상황에 맞게 수정・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은 비영리 법인과 공익법인으로 구분합니다.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법에 의한 공익법인을 제외한 개념으로 한정
- 공 익 법 인 : 공익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 이 책에 모든 법령은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사용합니다.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교육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령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위임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증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증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증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세규칙

〔예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상증법 제48조②-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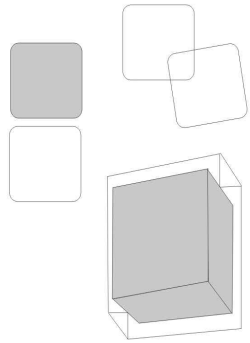

I

법인일반

1. 법인의 정의
2. 법인의 종류

I 법인 일반

1 법인의 정의

■ 법인(法人)이라 함은 자연인(自然人)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法人格)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社團法人) 또는 재산(財團法人)을 말하며, 법에 의하여 창출 및 의인화(擬人化)한 점에서 자연인(自然人)에 대비하여 이를 법인(法人)이라 부른다.

■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법인은 자연인이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며(민법 제31조 및 제33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된다. (민법 제94조)

■ 법인격(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을 가지려면, 자연인의 경우 생존(生存), 사단법인의 경우 구성원(構成員),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財産)을 그 필수적인 본질로 한다.

2 법인의 종류

가.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된다.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의 종류

분 류 기 준			설 명	
영리성 여부	근거법	성 격		
영리법인	상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회사)	– 모두 사단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목적 아닌 법인 (**실무상 「비영리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자체의 목적을 추구	
		공익목적이나 공익법 미적용 법인 (**실무상 「비영리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나 공익법이 적용 되지 않는 법인존재 이유는 공익법의 적용범위가 열거규정이기 때문	대부분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
	민법 및 공익법	공익법 적용법인 (**법률상, 실무상 「공익법인」**)	– 장학, 연구, 학술, 자선 – 공익법이 보완적으로 적용 되나 광의로는 「민법법인」에 속함	
	특수법인 (특별법)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허가 되는 법인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 의료법인(의료법) – 기타(각 근거법)	
		특별법으로 국가등이 직접 설립하는 법인 (좁은 의미의 「특수법인」)	–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한국은행법) 등 – 국가의 특별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설립	

■ 영리법인

- 근거 : 민법 제39조, 상법
-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등을 의미하여 소위 회사원이라 칭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영리법인은 100% 모두 사단법인체로 모두 상법상(商法上)의 회사(會社)인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해당되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 법인이 될 수 없다.

■ 비영리법인

- 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 기타 개별법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의 특징

1. 의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2.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3.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4.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5.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
6.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 상법법인

- 근거 : 상법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민법법인

- 근거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 이라고 칭한다.
- 법인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등(주무관청)이 정하는 바(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 공익법인

- 근거 : 공익법 제2조
-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인이 공익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아니며, 상증법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여 더 넓은 의미의 공익법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 광의로 보면 공익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 되는 공익법인 전체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 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익법 제1조)

■ 특수법인

- 근거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각종 개별법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을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등록받아 지원하는 제도
2. 등록관청 및 지원주체
   - 주무부처장관 :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단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 교육부 소관 단체의 등록이 교육청에 위임됨
   - 시도지사 : 당해 시도에만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당해 시도에서 지원)
3.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
   - 행정적 지원, 심사에 의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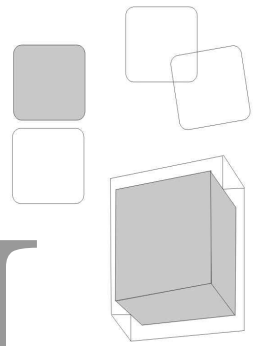

II

법인의 설립과 해산

1. 법인의 설립
2. 법인의 해산·청산

Ⅱ 법인의 설립과 해산

1 법인의 설립

가. 설립허가전 확인사항

학교의 설립·운영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사업영역이며, 기타 교육기관(시설)의 설립·운영 또는 교육활동은 비영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하기 어렵다. 또한 학술(學術)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업영역 확인 : 학술과 교육의 구분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학술(學術)」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教育)」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사업으로, 교육기관(시설)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설립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무관청 확인

- 민법과 공익법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 주무관청의 범위 : 각 중앙행정기관 등이 원칙이며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교육감) 등도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다.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업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주무관청의 판단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정부조직법·(행정각부)소속기관 직제·(행정각부)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무관청이 된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에서 검색

☞ 목적사업이 「교육」과 관련된다고 하여 반드시 교육부 소관인 것은 아님

•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이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 한다.

☞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에서 목적사업비 총액의 70%이상 집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 주무관청의 판단 ▣

주무관청의 판단에 있어 목적사업 중 **「학술」에 관한 것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개발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

예) 동양의학분야 학술·연구→보건복지부
예술진흥·체육정책·청소년정책, 종교의 학술·연구→문화체육관광부

나. 설립허가 기준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교육규칙 제4조①, 공익법 제4조①, 공익령 제5조①)

1) 목적사업

■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 설립취지,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로 확인 가능함.

2) 재원의 확보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 (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
-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

☞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전라북도교육청 출연재산 기준

■ 기본재산출연기준

구 분		법률외 허가 기준	비고
비영리법인	재단	○ 설립허가 기준액 : 기본재산 3억 이상	
	사단	○ 기준액 : 없음 ○ 운영재산 연간 1천만원 이상 확보 및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 실적 ※ 임원 또는 회원 개인 실적이 아닌 신청 예정 단체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 ○ 회원수 : 100명이상	
공익법인	재단	○ 설립허가 기준액 : 기본재산 3억 이상	
	사단	○ 설립허가 기준액 : 기본재산 1억 이상 ○ 회원수 : 100명이상	

☞ 기본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증법에 의함

-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이 가능하나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조치방안이 마련된 후에 허가함.
- 출연재산의 기준액은 그 수익으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순수익이 출연재산 기준액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상이 되어야 함

• 부동산 출연 시 확인사항

① 수익이 있는 부동산인지 여부

- 기본재산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세법상의 제재를 받게 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처분계획서를 제출받아 조건부 허가

②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담보금액을 제외한 평가액이 출연재산기준 이상이어야 함
- 법인의 기본재산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보전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 감독함

③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평가액이 출연재산기준 이상이어야 함

④ 임대순이익(수입-지출)이 정기예금 이자소득보다 높은지 여부

- 임대순이익이 출연재산 기준액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출연되어야 함
- 임대료가 주변시세 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 보통(운영)재산 출연

•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이외에 보통(운용)재산을 별도로 출연하여야 한다.

•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당해 연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6개월 이상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설립허가 취소사유(공익법 제16조 ①-7)**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기 본 재 산	보 통 재 산
•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사용 불가	•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을 말함 • 목적사업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 ☞ 공익법인은 보통재산,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이라고 함

다. 설립허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규칙 제3조, 공익령 제4조①)

1) 허가절차

민원인	신청서 접수
⇓	
지역 교육지원청 검토	검토기간: 14일 본적지 신원 조회(구청, 읍.면사무소) 경찰서 신원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 협의(수혜자를 한정한 경우) 타 주무관청 협의(타 부처 소관사업이 있는 경우)
⇓	
도교육청 허가	민원인에게 허가서 교부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립허가 통보 도교육청 홈페이지 설립 공고
⇓	
민원인	법인 설립등기(3주 이내) 세무서 법인신고(2개월 이내) 법인명의 재산이전(3개월 이내)

2) 구비서류 목록

법인별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교육규칙 별지1호	○	○	○	○	공통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4①-2	△	△	○	○	공통
3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교육규칙3- 1 공익령4①-1	○	○	○	○	공통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등을 이력서형식으로 기재)	교육규칙3- 5 공익령7①-2	○	○	○	○	공통
5	임원취임승낙서 (필요 시 겸직동의서)	교육규칙3- 5 공익령7①-4	○	○	○	○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사후 발견 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령7①-7	×	×	○	○	공익 법인
7	창립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의 별첨 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규칙3- 6 공익령4①-8	○	△	○	△	공통
8	정관 [정관준칙 준수,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이 기명날인]	교육규칙3- 2 공익령4①-3 민법40,민법43	○	○	○	○	공통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	△	○	○	공통
10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 인감증명서,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첨부	교육규칙3- 3 공익령4①-4	○	○	○	○	공통
11	기본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	○	○	○	공통
12	(보통·운영)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 에 해당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	○	○	○	공통
13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①-4	△	×	○	×	사단 법인
14	회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공익령4①-8	△	×	○	×	사단 법인
15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교육규칙 3-4	○	○	×	×	비영리 법인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개년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①-7	×	×	○	○	공익 법인
17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민법33, 36	○	○	○	○	공통
18	수혜자 한정 사유서 (해당사항 있을시)	공익령 6①②	○	○	○	○	공통

☞○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설립허가 검토 시 필요한 서류, × : 제출하지 않는 서류

3) 설립허가 신청서류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명 칭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 불가	◆교육부발행 「교육분야 법인현황」 간행물 참조
재산관리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도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출연 불가능	
	- 설립이후 2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목적사업비 편성 비율이 당해 연도 운용소득의 70%이상 편성	
	- 예금을 제외한 부동산등 기본재산의 수익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이상의 수익여부	◆비영리법인 제외
임 원	■ 이사 - 5~15의 범위 내에서 정함 - 특수관계자는 1/5 초과 불가 - 외국인 이사는 과반수 초과 불가	◆비영리법인 제외
	■ 감사 - 2인으로 정함 - 특수관계자는 감사로 취임 불가	
	■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겸직허가서 확인	
회원명부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수와 명부 확인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 가입 여부와 회비 납부 의사 확인)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취지 채택, 출연재산 내용,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 정관심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주요내용 의결 여부 확인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정 관	■ 제1조(목적)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에 규정된 사업(장학)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	◆정관예문에 따라 확인 ◆설립자(발기인)는 정관을 작성하고 반드시 기명·날인 (매장 간인처리)
	■ 제4조(사업) - 목적사업이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주된 사업이 문화·자선 등 타기관의 소관 업무는 제외) -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함 - 목적사업에 '기타', '등'의 용어 사용은 배제 - 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는 연동되어야 함 -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2항에 수익 사업명을 기재 ■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2항 - 제1조의 목적에 수혜대상을 정한 경우에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으로 수혜범위를 한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수혜범위 한정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함(비영리법인은 제외)	
	■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임원의 수는 반드시 정수로 하여야 함 - 정수 뒤에 '이내', '이하' 등의 용어 표기 불가	
	■ 제31조(정관의 변경), 제32조(해산) - 의결정족수가 이사정수의 2/3 이상인지 여부 (사단법인의 해산은 총회원 3/4 이상)	
	■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 여부	
	■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사 반수의 임기는 4년, 반수는 2년 - 감사 1명은 2년, 1명은 1년	

4) 비영리 법인의 유의사항

■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 여부 판단을 위해 적정한 회원 수와 회비를 확인해야 한다.

■ 목적사업 규모에 비하여 회원이 소규모이거나, 1인당 회비 징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회비가 아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수지예산서를 편성하는 등의 경우 합리성·타당성을 잣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공익 법인의 유의사항

■ 수혜자 범위 한정 합의 (공익령 제6조①②)

•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 그러나,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간 협의

• 목적사업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공익령 제5조②)

■ 특수관계자의 제한 (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령 제12조)

•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table>
<tr><td rowspan="4">출연자</td><td colspan="2">출연자가 자연인</td><td colspan="2">출연자</td></tr>
<tr><td colspan="2">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법인</td><td colspan="2">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포함</td></tr>
<tr><td colspan="2">출연자가 기타의 법인</td><td colspan="2">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td></tr>
<tr><td colspan="4">※ 이하에서 「출연자」는 위의 모든 자를 포함함
※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td></tr>
<tr><td rowspan="10">출연자 또는 이사의 친족</td><td rowspan="4">부계</td><td>6촌 이내의 부계혈족</td><td rowspan="10">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td></tr>
<tr><td>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td></tr>
<tr><td>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td></tr>
<tr><td>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td></tr>
<tr><td rowspan="2">모계</td><td>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td></tr>
<tr><td>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td></tr>
<tr><td rowspan="2">처족</td><td>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td></tr>
<tr><td>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td></tr>
<tr><td rowspan="2">입양</td><td>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td></tr>
<tr><td>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td></tr>
<tr><td rowspan="2">사용인</td><td colspan="4">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td></tr>
<tr><td colspan="4">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td></tr>
<tr><td rowspan="2">생계 의존</td><td colspan="4">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td></tr>
<tr><td colspan="4">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td></tr>
<tr><td>기타</td><td colspan="4">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td></tr>
</table>

■ 설립허가 조건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익법 제4조②, 공익령 제6조①)

–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 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사항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 수지예산서상 기본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70% 이상 사용할 것 (상증법 제48조 ②-3.4, 상증령 제38조⑤·⑥)

• 이사는 5~15의 범위 내에서 정수(定數)로 정하고, 감사는 2인으로 정할 것 (공익법 제5조①)

•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 (공익법 제5조⑥)

•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공익법 제5조④)

법인의 설립허가의 성격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라.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

- 공익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제9조)
- 비영리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규칙 제5조)

1) 법인 설립허가 이후 절차

도교육청 (허가사항 통보)	허가서 교부 및 전달(법인)
⇓	
법 인 (이행사항)	설립등기(관할등기소에 등기)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에 신고) 재산이전(출연재산 법인 명의로 이전)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제출)
⇓	
법인·지역 교육지원청 (운영·지도사항)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설립허가 취소 등 제재사항 임원 결원 방지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적기 수행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 예·결산보고 - 수익사업 : 정관변경 허가 및 사업별 승인 -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등

2) 법인 설립등기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①,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66조)

☞ 설립등기를 하여야만 법인이 성립된다. (민법 제33조)

■ 기간 :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①, 제53조)

☞ 기간 내에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민법 제97조)

■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 자산의 총액(기본재산만 해당), 출자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이사장만 대표권을 가진다는 취지 등)한 때에는 그 제한 (민법 제49조②)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60조)

■ 등기비용 : 등록세, 교육세, 기타 부대비용(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 기타)

3)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①)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해당)

등기소 등기 및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등기소 등기	세무서 신고
① 등기신청서 ② 법인설립 허가서 ③ 정관(재산목록 포함) ④ 이사 취임승낙서 ⑤ 주민등록등(초)본(이사) ⑥ 인감증명서(이사) ⑦ 법인인감신고서 ⑧ 공증받은 창립총회회의록 ⑨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⑩ 위임장(대리인)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 ② 법인 등기부등본 ③ 정관 ④ 법인설립 허가서 ⑤ 임대계약서

4) 재산이전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교육규칙 제5조, 공익령 제8조)

■ 대상 : 기본재산, 보통재산(운영재산)

☞ 출연한 보통재산 중 일부를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5)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기한

구 분	재산이전보고	등기보고	비고
비영리법인	허가 후 1개월 내	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육규칙 제5조
공익법인	허가 후 3개월 내	등기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익령 제8조, 제9조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
- 재산이전 보고서

☞ 재산이전 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를 첨부

6)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

■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증령 제41조①)

마. 장부 및 서류의 비치

■ 법인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근거
1	재산목록	10년 이상	민법 제55조
2	장부와 중요증빙서류	10년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 상증법 제51조, 상증령 제44조 소득세법 제160조
3	전표	5년	
4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3년	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5	사원(회원)명부(사단법인)	영구	민법 제55조
6	회의록	10년 이상	민법 제76조
7	설립허가서(정관포함), 정관변경 허가서(정관포함)	영구	
8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	영구	
9	기타 허가·승인·보고 문서	해당사업 종료 후 5년 이상	

☞ 재산목록 및 회의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 근거규정은 없으나 장부와 중요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10년은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상법 제33조는 전표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나, 상증법 제51조는 전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장부 및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증령 제44조가 일정한 경우에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장부로 인정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사원(회원)명부의 보존기간에 대한 직접 근거규정은 없으나 민법이 사원(회원)의 변경사항을 사원(회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원(회원)은 사단법인의 본질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정관과 설립허가는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은 근거이므로 설립허가서(정관포함) 및 정관변경허가서(정관포함)는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임원취임(연임) 승인 문서는 법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책임의 귀속을 판단할 자료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보존되어야 함

☞ 개별법 또는 다른 관청이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장부·서류의 비치의무를 정하거나 위의 기준이상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법인운영 중 허가·승인·신고·보고 사항

■ 공익법인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시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제18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며(정관변경 허가를 요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령 제16조①)
-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및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정관변경허가 선행)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 제4조③, 공익령 제11조)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42조②·제45조③·제46조, 공익령 제10조)
-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 및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공익법 제5조②⑦)
- **상근임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 제5조⑨)
-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2조②, 공익령 제19조)
-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공익법 제8조④, 공익령 제15조)
-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0조②)
-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신고 및 청산종결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86조·제94조, 교육규칙 제10조·제12조)

■ 비영리법인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42조②·제45조③·제46조, 교육규칙 제6조)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규칙 제7조)
-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67조-3)
-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신고,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신청 및 청산종결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80조②·제86조·제94조, 교육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

Q&A

-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후 이행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며,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 근거 : 민법 제33조, 제49조, 제53조
-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기기간 :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
-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 자산의 총액(기본재산만 해당), 출자방법,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사항(이사장을 말함)
- 등기비용 : 등록세, 교육세, 기타부대비용(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실비상당액)

■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근거 : 법인세법 제109조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 해당됨

등기소 등기 및 세무서 신고 구비서

등기소 등기	세무서 신고
① 등기신청서 ② 법인설립 허가서 ③ 정관 ④ 이사 취임승낙서 ⑤ 주민등록등본(이사) ⑥ 인감증명서(2통,이사) ⑦ 위임장(이사) ⑧ 법인인감신고서 ⑨ 공증 받은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정관 사본 ④ 법인설립 허가서 사본 ⑤ 임대계약서 사본

■ 재산이전

• 근거 : 공익령 제8조, 교육규칙 제5조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기본재산, 보통재산)을 법인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67쪽) 참고

변경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 (대법원 1967.02.21. 66다1347)

■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임.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대법원 1981.12.22. 80다2762)

■ 민법 제48조①은 재단법인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함.

-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비영리, 공익 법인 모두 포함)의 이사, 감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민법 제97조)
- 과태료 부과기관 :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Q&A

●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후 이행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근거 : 공익령 제8조, 제9조, 교육규칙 제5조

■ 이행결과 보고

• 보고기한

구 분	재산이전보고	등기보고
공익법인	허가 후 3월 내	등기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비영리법인	허가 후 1월 내	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

– 재산이전 보고서

☞ 법인명의로 이전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를 첨부함.

☞ 출연하기로 한 보통재산이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상증법 제50조의 2)

- 대상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 신고방법 : 전용계좌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2계좌 이상 가능)
- 위반 시 : 가산세 부과(미사용 금액 x 0.5%)

법인설립 등기 후에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감독청에서 형사 고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됨.

법인에서 출연재산의 이전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 이사장이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거나, 재산을 이전하지 않아 법인의 목적달성 등이 불가능 할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식 ①-1 : 법인설립허가신청서-비영리법인용 】

<table>
<tr><td colspan="5">법인설립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14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도로명주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4">법인</td><td>명 칭</td><td colspan="4"></td></tr>
<tr><td>소 재 지</td><td></td><td>법인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도로명주소)</td><td></td><td>대표자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td></tr>
<tr><td rowspan="2">구비서류</td><td colspan="3">신청인 제출서류</td><td colspan="2">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tr>
<tr><td colspan="3">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td><td>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 서식 ①-2 : 법인설립허가신청서-공익법인용】

<table>
<tr><td colspan="4">법인설립허가신청서</td><td>처리기간
14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4">법인</td><td>명 칭</td><td colspan="3"></td></tr>
<tr><td>소 재 지
(도로명 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able>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서식 ② - 설립취지서 】

설 립 취 지 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 ----------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단(재단)법인 ○○○○○을(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 서식 ③ - 발기인 인적사항 】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
			○ (현) ○ (전) ○ (전)	
			○ ○ ○	
			○ ○ ○	
			○ ○ ○	
			○ ○ ○	

작성자 : ○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④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대상자 :)	주 소 (우편번호)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 (현) ○ (전) ○ (전)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1. 등록기준지와 대상자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⑤ - 취임승낙서 】

취 임 승 낙 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본적) :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 서식 ⑤-1 - 겸직동의서 】

겸 직 동 의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겸 직 기 관 :
겸 직 기 간 :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상기 인을 귀 ○○장학재단의 이사(감사)로 겸직함을 동의합니다 .

20○○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주) 겸직허가서 징구 근거
1. 공 무 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한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2. 교　　원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의한 국공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3. 대학교원 :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직 허가
4. 사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5. 기　　타 : 개별법(농협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겸직금지 및 사전허가

【 서식 ⑥-1 -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서식 ⑥-2 -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20○○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예문 ⑦-1 - 사단법인 회의록 】

사단법인 ○○○○○학회

창립총회 회의록

1. 회의 연월일 : 20○○년　　월　　일 (12:00 ~ 16:00)
2. 회 의 장 소 :
3. 회 의 안 건 :

제1호 의안　의장선출
제2호 의안　설립취지 채택
제3호 의안　정관 심의
제4호 의안　출연내용
제5호 의안　이사장 선임
제6호 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제7호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8호 의안　사무소 설치
제9호 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해당 법인)

4. 회원총수 : 00명 ('회원 명부' 참고)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00명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00명
7. 회 의 내 용 : 별첨

회　의　록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안 의안 상정]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안 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를 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안 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 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안 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 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님 출연금 : 현금 000원 → 기본재산
▷○○○님 출연금 : 현금 000원 → 보통재산

[제5안 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임시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안 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임원후보 및 임기]

이사(00명) : ○○○, ○○○, ○○○, ○○○, 이상 00명 → 임기 4년
○○○, ○○○, ○○○, ○○○,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 : ○○○ → 임기 2년 ○○○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 박수 -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 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 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년 000원

[제7안 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안 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 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드리며 원안 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가 “전라북도 ○시 ○동 00-00 ” 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안 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 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회

의 장 :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석자 상호 인사 나누다.)

※ 의장은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발기인 00명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다.

20○○년 월 일

회원 대표 홍 길 동 (인)
회원 ○○○ (인)
회원 ○○○ (인)
회원 ○○○ (인)
회원 ○○○ (인)
회원 ○○○ (인)
회원 ○○○ (인)
회원 ○○○ (인)

【 예문 ⑦-2 - 재단법인 회의록 】

재단법인 ○○○○○창립 발기인 회의록

1. 일 시 : 20○○. . . (요일) 00:00
2. 장 소 :
3. 발기인수 : ○명
3. 출석발기인 : ○○○, ○○○, ○○○, ○○○, ○○○, ...(성명기재)
4. 결석발기인 : ○○○, ○○○, ○○○, ...(성명기재)
5. 안 건

제1호 의안 의장선출
제2호 의안 설립취지 채택
제3호 의안 정관 심의
제4호 의안 출연내용
제5호 의안 이사장 선임
제6호 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제7호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8호 의안 사무소 설치
제9호 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해당 없을 시 생략)

6. 회의내용 <별첨>

회 의 록

사회자 : - 발기인 00명중 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1안 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안 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금일 안건으로 0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안)를 낭독하다.)

의 장 :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를 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 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 장 :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안 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 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 ○○○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 ○○○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보통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님들께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안 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임원후보 및 임기]

이사(00명) : ○○○, ○○○, ○○○, ○○○, 이상 00명 → 임기 4년
○○○, ○○○, ○○○, ○○○,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 : ○○○ → 임기2년 ○○○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제7안 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 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가 “전라북도 ○시 ○동 000-00 ” 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해당법인)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 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20○○년　　월　　일

이사장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이　사 ○○○ (인)

※ 1. 각 장마다 간인을 찍을 것
2. 이사회는 출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할 것

【예문 ⑧-1 사단법인 정관 】

정　　관

사단법인 ○○○○○

※ 각 장마다 총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자의 간인을 할 것

사단법인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시 ○구 ○동 000번지의 0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
2. ·····
3. ·····

※ 사업은 공익 기타 비영리적인 것으로써 구체적, 개별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사업에 "기타(其他), 등(等)"의 용어 사용은 엄격히 배제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
2. ·····
3.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항과 제3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한정한 경우 : ○○○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1조에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에는 예외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 ·····
·····본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인

※ 5인이상 15인 이내의 정수로 할 것,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이 법인의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0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북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목적사업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단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요건으로 해당 법인에 한함)

※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20○○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 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제2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총회 시 전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4년
이 사			4년
이 사			2년
이 사			2년
이 사			2년
감 사			2년
감 사			1년

※ 최초 임원의 임기의 과반수는 1/2로 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별지목록 1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 1.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 별지목록 2 】

현재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년 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 예문 ⑧-2 재단법인 정관 】

정　　관

재단법인 ○○○○○

각 장마다 발기인들이 간인할 것

재단법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의 설립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 "(이하 "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시 ○동 000번지 0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
2. ·····
3. ·····

※ 사업은 공익 기타 비영리적인 것으로써 구체적, 개별적이며 실현 가능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사업에 "기타(其他), 등(等)" 의 용어 사용은 엄격히 배제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2.·····
3.·····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한정한 경우 : ○○○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1조에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에는 예외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의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이 법인의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이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인

※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정수로 할 것,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2. 감사 2인

②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한다.

제30조(서면 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4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라북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목적사업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요건으로 해당 법인에 한함)

※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20○○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 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 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 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4년
이 사			4년
이 사			2년
이 사			2년
이 사			2년
감 사			2년
감 사			1년

※ 최초 임원의 임기의 과반수는 1/2로 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별지목록 1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 1.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 별지목록 2 】

현재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년 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 서식 ⑨ 】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상근직원정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구조직표 및 상근직원 정수표 1부. 끝.

20○○년 월 일

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인)

전라북도교육감

【 서식 ⑨ -1 】 (사단법인용)

기구조직표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구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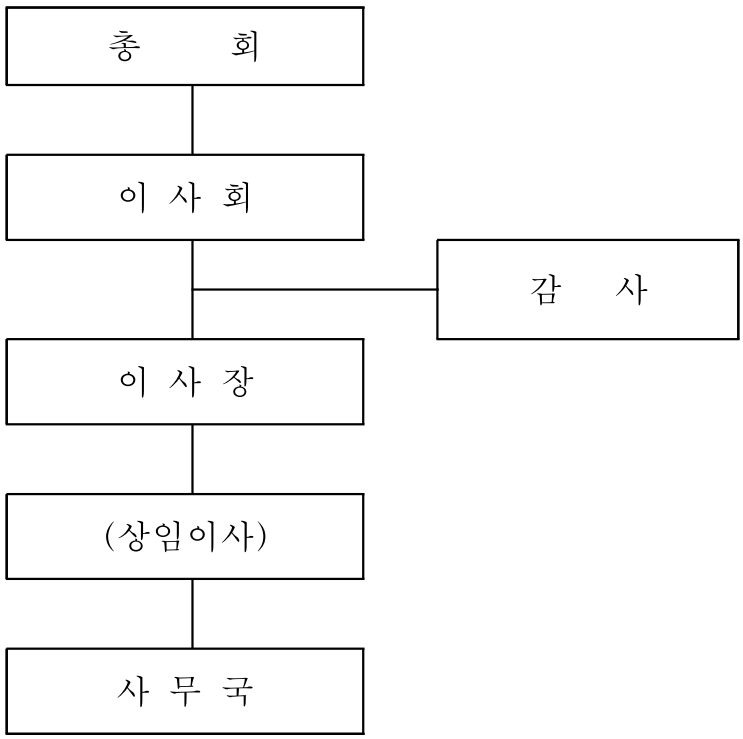

2. 상근직원 정수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 서식 ⑨ -2 】 (재단법인용)

기구조직표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구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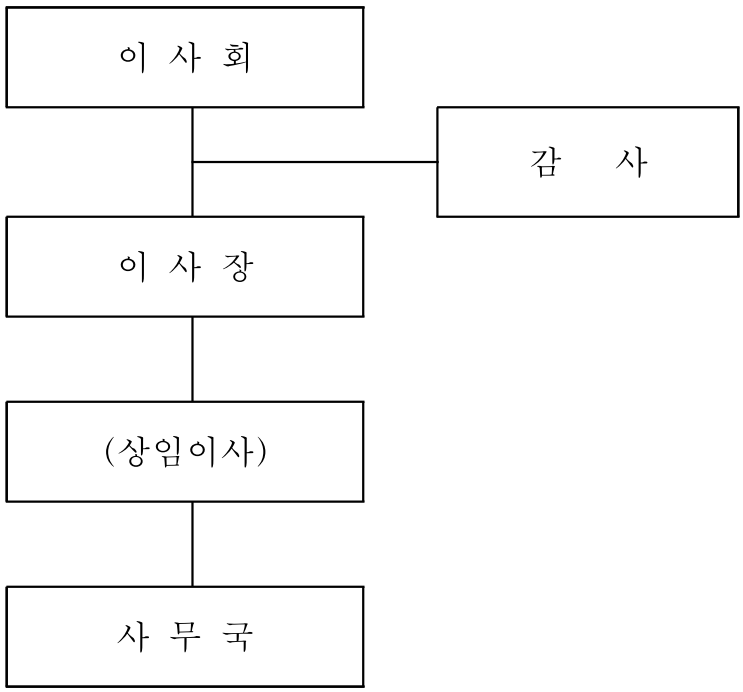

2. 상근직원 정수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 서식 ⑩ 재산의 출연증서】

재산의 출연증서

본인 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단(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출연(기부)합니다.

20○○년 월 일

성 명 : o o o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기부재산표시

소 재 지 또는 금융기관명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 기부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소재지를, 예금일 경우에는 금융기관명을 기재

(재단·사단)법인 설립자 대표 귀하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2. 예금잔액증명서(부동산 소유 증명서) 1부. 끝.

【 서식 ⑪ - 재산총괄표 】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설립년도수입액	취득원인	비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林野)	㎡				
	기타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⑪-1 - 기본재산목록 】

기 본 재 산 목 록

(20○○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량(평)	금액(가액)	비 고
현금	계좌		정기예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		
건물	㎡		
전(田)	㎡		
전(田)	㎡		
답(畓)	㎡		
답(畓)	㎡		
임야(林野)	㎡		
기타	㎡		
【부동산 소계】	㎡		
기타			
【합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⑫ - 보통(운영)재산목록 】

보통(운영)재산목록

(20○○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량(坪)	금액(가액)	비 고
현금			예치금
계		원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⑬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회원구분	인 원	연(월)회비	회 비 수 입			비고
			20○○년도	20○○년도	20○○년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 서식 ⑭ - 회원명부 】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50	0 0 0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⑮ - 사업수지예산서 】

(제1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년도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회 비			①경상비	인 건 비		
				운 영 비		
				재단설립비용 등		
	소 계			소 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1. 장학금지원		
④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수입			2. 학술연구지원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사업계획서등 별도 작성 필요			소 계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⑤전기 이월액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 기	
					당 기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합 계			합 계			

작성자 :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連繫)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익년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 서식 ⑯ - 사업수지예산서 】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회비		① 경상비	인 건 비 (세부내역필요)		
	임원특별회비			운 영 비 (세부내역필요)		
	소 계			소 계		
② 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서별로 작성		
③ 과실 소득						
④ 수 익 사 업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차기 이월액	목적 사업 준비금	전 기	
⑤ 전 기 이월액	이월금				당 기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합 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⑰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전라북도 ○시 ○구 ○○로

2. 소유자(전대자) : 홍 길 동

3. 사용면적 :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20○○.01.01 ~ 20○○.12.31. (○년간)

나. 사용조건 : 무상(또는 유상) 등

20○○년 월 일

소유자(전대자)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무상 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서식 ⑱ - 한정사유서 】

한정사유서

본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의 수혜범위를 ○○고 재학생 및 졸업생(대학생, 대학원생)으로 한정시킨 사유는 모교졸업생들이 ○○고등학교를 위해 자금을 조성해 왔고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불구하고 향학열기 가득한 우수자(재학생, 졸업생)를 선발 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마음 놓고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긍지와 사기를 높여주어 모교의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에 자랑스런 역군이 되도록 하기 위함임

20○○년 월 일

가칭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대표자 ○○○ (인)

【서식 ⑲ - 한정 합의 의뢰 공문】

전라북도교육청

수신자 ○○세무서장

(경유)

제 목 공익법인 수혜자범위 한정 합의 의뢰

1. 관련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가칭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혜자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니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대상 법인

법 인 명	주 소	설 립 자	비 고
재(사)단법인 ○○○장학회	전라북도도 ○○시 ○○동 ○○번지	○ ○ ○	

나. 수혜자 한정범위

한 정 내 용	한 정 사 유
○○시 거주 또는 재학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 설립자 ○○○는 ○○시 출신으로 장기간 ○○시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 하였으며, 2.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된 재산으로 지역사회에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부득이 수혜대상자를 한정하여 내실있는 장학지원 사업을 하고자 함.

붙임 1. 설립취지서 사본 1부.

2. 수혜자범위 한정사유서 1부.

3. 정관 사본(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포함) 1부. 끝.

【서식 ⑳ - 설립 허가 신청 공문】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전라북도교육감

(경유)

제 목 공익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송부

1. 관련: 접수번호 ○○호(20○○. 00. 00.)
2. 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주소)에 거주하는 설립대표자 ○○○로부터 가칭 '재단법인 ○○○'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 신청 현황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재산현황	임원	비고
			기본재산: 천원 보통재산: 천원	이사: 명 감사: 명	

붙임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허가 검토의견서 1부
3. 임원취업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 1부
4. 수혜자 한정 사유서 1부(수혜자 한정 시). 끝.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20 . . .) 접수 ( )

우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비공개

【서식 ㉑-1 - 설립허가 검토의견서】

○○법인 설립허가 검토의견서

1. 법인의 일반사항

(단위: 천원)

법인명 (가칭)	설립일 설립자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목적 사업	'○○~○○' 년도 사업계획	재산목록(기본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계
				"붙임 서류"				

2. 설립허가 신청 주요내용

o 설립목적:

o 목적사업:

o 출연재산 내역

출연자	재산 목록	수량 (주)	단위당 평가액(원)	평가가액 (원)	재산구분 (단위: 천원)		비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o 임원현황: 총 명(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임기

- 특수관계자: (특수관계내용:)

o 사업계획

(단위: 천원)

년도별	세 입	세 출	수지차액	충당방법	목적사업 수행비율
					%
					%
					%

3. 검토내용(예시)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고
동일명칭 사용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선 없음	없음	
임원결격사유	공익법 제5조 제6항의 사유 해당유무 (결격사유 조회 필)	해당없음	
설립근거 및 법인종류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정	
목적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구체적이고 공익목적에 부합, 실현가능성	부합, 실현가능성	
목적사업유상성(有償性)	개연성 없음	해당없음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 확보	기부금으로 재정적 기반 확보	적정	
사업계획의 합리성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은 70%초과	적정	
이사의 특수관계자 초과	특수관계자 20%이하	적정	
외국인 이사의 과반수 여부	이사 감사 총 7명 모두 대한국민 국민	해당없음	
수혜자의 한정여부	경상북도 관할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수혜자 한정 사유서 제출	
구비서류의 적정성	정관, 출연자확인서, 조직 및 정수표, 임원 구비서류, 사무실 확보증서 등	적정	

붙임 1. 임원취임예정자의 결격사유조회 결과서 1부
2. 출장복명서 사본(사진첨부) 1부

4. 검토의견(예시)

본 건 검토 결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허가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며,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0○○년 월 일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 ㉑-2 - 결격사유조회 결과】

임원취임예정자 결격사유조회 결과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확인기관명	문서번호	조회결과	비고
이사장	○○○	123456-7891011	○○시 ○○구 ○○동 123	○○구청장	민원여권과-1234 (2013.10.20.)	해당 없음	
이사							

20○○년 월 일

확인자 ○○교육지원청 ○○과 직) 성명)

【서식 ㉑-3 - 수혜자를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혜자 한정 사유서

1. 법인명:

2. 대표자:

3.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를 목적으로 한다.

4. 수혜자 한정사유 (예시)

우리 법인의 설립목적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이나,

한정된 재원의 한계와 출연자가 장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에 생긴 재산으로 지역사회에 장학 사업을 하는 것으로, 부득이 수혜대상자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자 수혜자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날인 또는 서명)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서식 ㉒ - 설립허가 검토 - 내부결재】

전라북도교육청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익법인(재단, 사단) 설립 허가 검토

1. 관련
 가.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0○○.00.00.)
 나. 교육지원과-○○(20○○.00.00.) 민원서류 보완 요구
 다.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00(20○○.00.00.) 보완서류 제출
2. (가칭)재단법인 ○○ 장학회(대표자 ○○○)의 공익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3. 공익법인 설립 허가기준 및 요건을 갖추었기에「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익법인 설립허가 검토서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법인 설립허가 공고(안) 1부.
 4. 공익법인 정관(안) 1부. 끝.

전라북도교육감

수신자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 . .)		접수
우 -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비공개

【서식 ㉓ - 설립 허가 통보 공문】

전라북도교육청

수신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 허가 통보

1. 관련: 행정지원과-0000(20○○.00.00)
2. 재단법인 ○○장학회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3. 법인설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설립허가조건을 이행토록 하시기 바라며, 민법 제49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법인의 등기사항과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3주간 내)에 등기 또는 이전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4. 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이 공익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인 다음의 설립허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립허가 조건

1) 법인이 다음 사항에 저촉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3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될 때
- 임원간의 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 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사전 승인 없이 처분한 때
- 사무소의 소재지를 무단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사전 허가없이 설치한 때

2) 임원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에 해당된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나. 유의사항

1) 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등기를 지체없이 이행토록 지도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2) 기본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 확보하도록 지도
3) 임원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지도
4) 목적사업비는 당해 법인 재산운영 소득 중 세금 및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의 70%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5) 설립등기후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바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서 1부(원본 별도 송부)
2. 정관 사본 1부(별도 송부). 끝.

전라북도교육감

수신자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 . .) 접수

우 -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비공개

【서식 ㉓-1 - 법인설립허가서 】

전라북도교육청 허가 제00-000호

법인설립허가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아래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1. 법 인 명: 재단법인 ○○장학재단
2. 소 재 지: 전라북도 ○○시 ○○동 ○○동 00-0
3. 대 표 자: ○○○(생년월일: 20○○년 01월 01일)
4. 설 립 일: 20○○년 01월 01일
5. 목 적 사 업: 1. 장학금의 지원
   2. 연구비 지원
6. 설립허가조건 별지 허가조건과 같음

20○○년 월 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에 의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전라북도교육감

허 가 조 건

법인명: 재단법인 ○○장학재단

1.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등에 의하여 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회원 회비의 적기 징수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한다.

3. 임원 취임 등에 대하여는 소재지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받는다.

4. 법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민법 제3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 률 제16조에 해당될 때

나. 임원간의 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다. 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사전승인 없이 처분한 때

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무단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사전허가 없이 설치한 때

【서식 ㉔ 설립허가 통보 공문 】

전라북도교육청

수신자 ○○세무서장

(경유)

제 목 공익법인 설립허가 통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장학회의 설립을 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1부. 끝.

전라북도교육감

수신자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 . .)		접수
우 -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비공개

【서식 ㉔-1 별지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기 본 사 항			통 보 내 역					
①법인명 (공익 사업명)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설립허가		시정명령·설립허가 취소		과세사유 해당	
			④ 연월일	⑤출연 재산	⑥ 연월일	⑦ 사유	⑧ 연월일	⑨ 사유

22226-78011일
'97.2.25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법인설립허가 등 통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위와 같으나

⇒ "국세청-1622(2015.08.10.)호"에 따라 국세청에서 다음 서식으로 통보해 주기를 요청하였음

기본사항					통보 유형	설립 허가일	출연 재산 여부	출연 재산 가액	주무관청 등					설립근거	
일련	법인명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주무관청	총괄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설립 근거법	설립 목적

(작성요령)

- 통보유형은 "1. 설립허가, 2. 지정기부금단체, 3. 기부금대상민간단체, 4. 시정명령, 5. 설립허가취소, 6. 증여세·가산세 과세 사유 해당"으로 기재
-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 등 총괄 관리부서 입력
- 담당부서는 당해 비영리법인 등의 실질적인 관리부서 입력
- 설립 근거법은 관련 법령을 모두 기재
- 매 통보시마다 기본사항과 설립허가일, 주무관청 등, 설립근거는 반드시 입력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

- 법인의 소멸은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자연인과 달리 "상속"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계(해산 → 청산)를 거쳐야 한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민법 제95조)

가. 법인의 해산

1) 해산의 개념

-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된다.

☞ 청산법인 :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인

2) 해산의 사유 (민법 제77조)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의 불능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파산
- 설립허가의 취소

☞ 설립허가 후 교육청의 지도·감독 및 위법·부당 운영에 대한 주요 제재 사항 참조

- 회원이 없게 된 때 (사단법인)
- 총회의 결의(사단법인) : 총 회원 4분의 3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의 동의 (민법 제78조)

3) 해산 허가 (정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

☞ 해산은 민법 제86조가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산허가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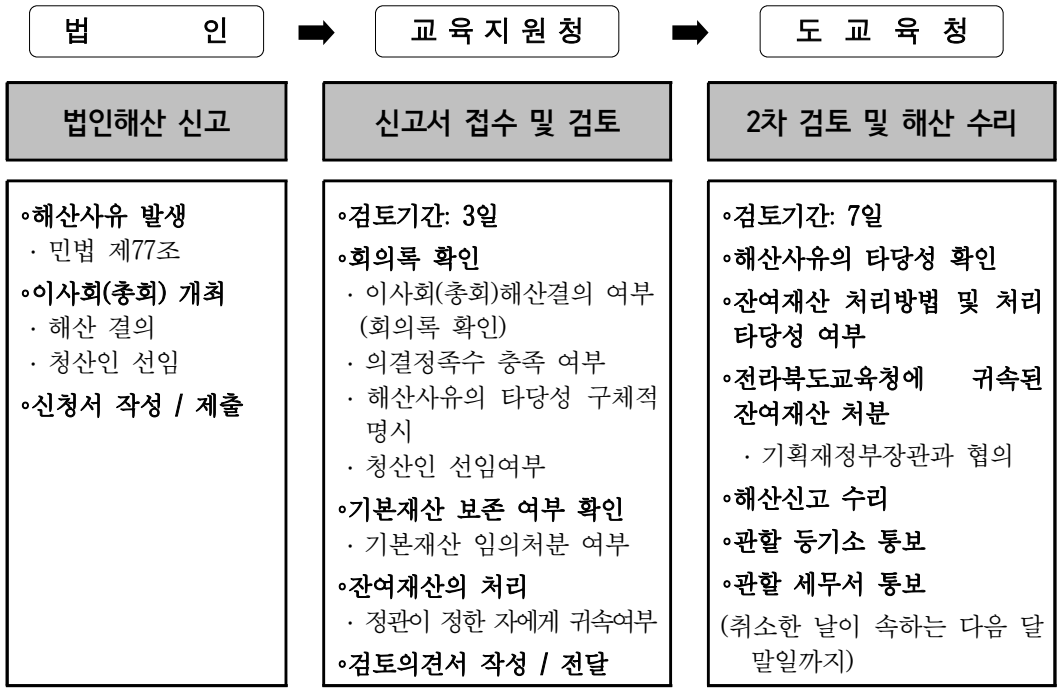

☞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사무 집행을 위한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하며,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보다 해산등기 신청이 앞서야 하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해산허가 신청서류

① 법인해산허가 신청서
② 해산사유서
③ 재산목록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를 첨부)
④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재산청산조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⑤ 정관
⑥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⑦ 법인등기부등본

4) 설립허가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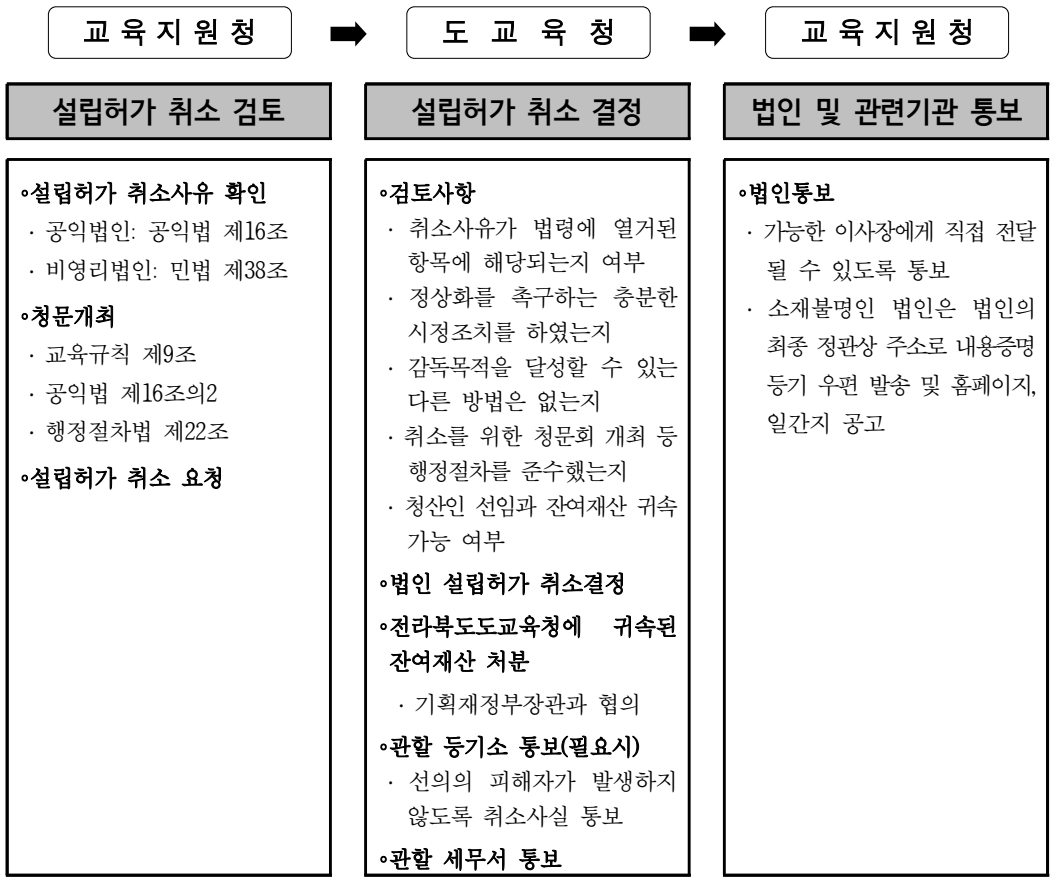

■ 설립허가의 취소

•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마. 공익법 또는 공익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청문의 실시

• 주무관청이 공익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6조의2)

■ 법인설립 허가취소(해산) 통보(관할 세무서)

• 주무관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증법 제48조⑦, 상증령 제41조③, 상증규칙 제25조③, 별지 제28호 서식)

설립허가취소 사실 등기소 통보 (대법원 질의응답 : 등기 제1879호, '92.08.31)

■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있어 유의할 점은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스스로 해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원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는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등기소에 취소사실을 통보하여 허가취소사항이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해산 등기 및 신고

■ 해산 등기 (민법 제85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

• 등기사항 :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 등기소 :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 해산 신고 (민법 제86조, 교육규칙 제10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 중에 청산인이 바뀐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를 변경 등기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취임 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

☞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14조)

• 신고서류 (교육규칙 제10조)

① 법인해산 신고서

② 해산사유서

③ 재산목록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를 첨부)

④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재산청산조서, 잔여재산처리에 관한 의견서)

⑤ 정관

⑥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⑦ 해산 등기 후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허가 신청 시 ②,③,④,⑤,⑥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생략

나. 법인의 청산

1) 청산의 개념

-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81조)
-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2) 청산의 절차

- 청산은 파산의 경우는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경우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며,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음)
- 청산인 선임 (민법 제82조, 제83조)

•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에 주무관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청산인의 직무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민법 제87조)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취임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를 최고(민법 제88조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90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89조)

■ 잔여재산의 귀속

• 비영리법인 (민법 제80조)
– 채무를 완제한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사단법인은 사원총회 결의 선행)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서류 (교육규칙 제11조) ①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② 처분사유서 ③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 최종적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공익법인 (공익법 제13조, 공익령 제25조)
–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한다.

– 청산인은 청산종결의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잔여재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민법 제94조)

•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청산종결신고 서류 (교육규칙 제12조, 공익령 제25조②)

① 청산종결 신고서

② 청산종결 등기 후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③ 잔여재산 목록 (공익법인, 잔여재산을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인도하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 해산사실의 제3자 대항요건 (대법원 1984.09.25. 84다카493)

■ 민법 제54조 ①, 제85조 ①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음.

청산종결의 시기 (대법원 1980.04.08. 79다2036)

■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 등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때는 무효라 할 것이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함.

Q&A

●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 해산을 하나요?

▸ 법인운영을 중단할 경우 법인은'해산(解散)'해야 합니다.
▸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그만두고 청산(잔무의 처리와 재산의 정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 : 민법 제77조

■ 공통된 해산사유

•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목적달성이 불능인 경우
☞목적달성 불능여부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정해져야 함.
• 법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한 경우
☞법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이사장은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함.
☞파산 신청을 게을리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민법 제97조)
• 감독청이 설립허가 취소를 한 경우

■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

• 회원이 없는 경우에 사단법인은 해산하여야 한다.
•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총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해 해산함.

Q&A

●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산 절차는 '자진 해산'과 '설립허가 취소에 의한 해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해산 절차

• 자진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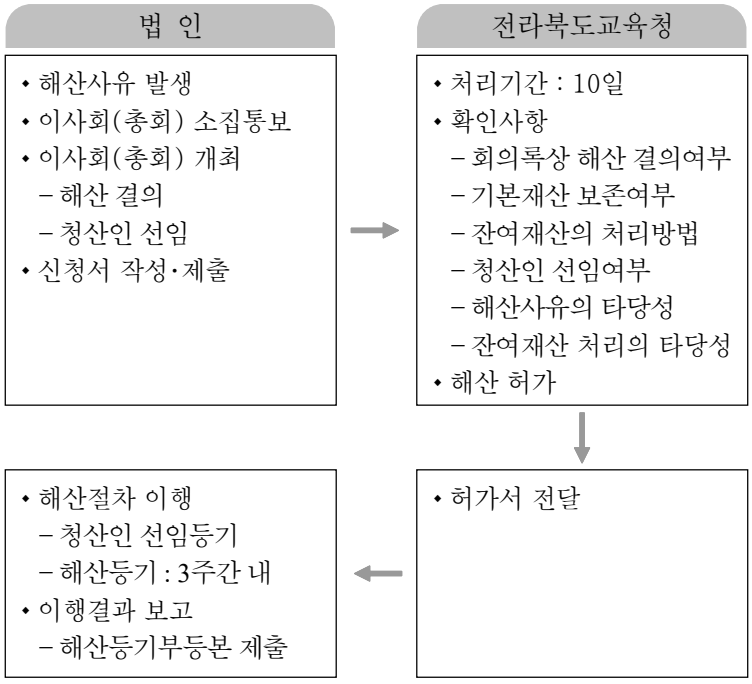

• 설립허가 취소에 의한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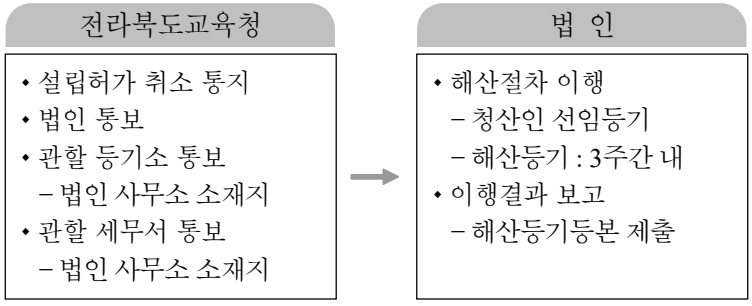

Q&A

● 해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거 : 민법 제86조, 교육규칙 제10조

■ 신청서류

① 해산허가 신청서
② 해산사유서
③ 재산목록
④ 재산 청산조서
⑤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⑥ 정관
⑦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⑧ 법인등기부등본 (해산 신고시 제출)

☞ 해산은 민법 제86조에 의거 신고사항이나 정관상 주무관청의 해산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서식 ① - 해산허가 신청서 】

<table>
<tr><td colspan="4">법인 해산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
10일</td></tr>
<tr><td rowspan="4">법
인</td><td>명 칭</td><td colspan="3"></td></tr>
<tr><td>소 재 지</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대표자 주소</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 colspan="5">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 허가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td></tr>
<tr><td colspan="4">※ 구비서류
1. 해산사유서
2. 재산목록
3. 재산청산조서
4.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5. 정관
6. 법인등기부 등본
7.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 서식 ② - 해산사유서 】

법인 해산 사유서

1. 모(母)기업인 (주)양산박이 2016년 12월에 최종 부도 처리되어 파산함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가 재산 가치를 완전 상실하여 잔여 기본재산 1억원으로는 당초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2. 2014년 이후부터는 모기업의 기부금과 보유주식의 배당금이 전혀 없어 법인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3. 기본재산 예금 1억원은 정관 제○조에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4. 청산인은 현 이사장인 홍길동 이사로 선임하여 법인을 해산하고자 의결하였기에 해산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작성방법 : 해산의 사유, 잔여재산의 처리, 청산인 선임 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20○○년 2월 1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서식 ③ - 재산목록 】

재 산 목 록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재산종류	종별	재산명	수 량	정관상 금액(원)	평가액(원)
기본재산	현금	국민은행 정기예금	1	100,000,000	100,000,000
기본재산	주식	(주)양산박	10만주	5,000,000,000	0
보통재산	현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1	10,000,000	10,000,000
			이하여백		
합계				**5,110,000,000**	**110,000,000**

【 서식 ④ - 재산청산조서 】

재 산 청 산 조 서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재 산 명	종 별	수 량	평가액 (원)	청 산 계 획
국민은행 정기예금	현금	1	100,000,000	잔여재산 귀속처인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
(주)양산박	주식	10만주	0	소각 처리
국민은행 보통예금	현금	1	10,000,000	청산비용에 사용후 잔액은 정관상의 잔여재산 귀속처인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
		이하여백		
합계			**110,000,000**	

【 서식 ⑤ -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1. 재단의 해산 의결 당시 재산평가액 총액은 금110,000,000원(재산목록, 재산청산조서 참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재산 총액 중 기본재산 현금 100,000,000원은 우리 재단의 정관 제○조에 규정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3. 기본재산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는 부도처리 되어 주식평가액(주식잔고증명서 참조)이 '0원'이 되었기에 청산인이 자체 소각처리하며,

4. 보통재산 현금 10,000,000원은 재단 청산비용에 사용하되, 청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 정관 제○조에 명시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작성방법 : 잔여재산의 평가 총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처리방법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20○○년 2월 1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서식 ⑥ - 해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 1. 10.	
이사정수	7 명	재적이사	7 명

1. 회의일자 : 20○○. ○. ○○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7명, 감사 2명

4. 결석임원 : 이사 0명, 감사 0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 1호 의안 : 법인 해산에 관한 건
- 제 2호 의안 : 청산인 선임에 관한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이사 정수 7명중 과반수인 7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년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법인 해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이사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을 설립한 (주)양산박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16년 12월에 최종 부도 처리되어 파산함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가 재산 가치를 완전 상실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는 모기업의 기부금과 보유주식의 배당금이 전혀 없어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사업도 3년 전부터는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재단운영자금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재산평가액 총액은 기본재산 예금 1억원과, (주)양산박 주식 10만주 ‘0’ 원, 보통재산 현금 1천만원으로 총1억1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며, 잔여재산 처리는 우리 재단의 정관 제○조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처리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 애석한 일입니다. 재단을 정상화 하고자 노력해보았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해산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개진 바랍니다.
- 갑이사 : 안타까운 일이나 잔여재산 중 기본재산 현금 1억원은 정관 규정대로 잔여재산 귀속처인 전라북도교육청에 인계하고, 주식은 부도나서 휴지나 마찬가지니 소각하면 되겠고, 해산 후 청산하는데 비용이 소요될 것이니 보통재산 1천만원은 청산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이사 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사장 :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대로 잔여재산 평가액 총액1억1천만원 중 기본재산 현금 1억원은 잔여재산 귀속처인 전라북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주)양산박 주식 10만주는 소각하며, 보통재산 현금 1천만원은 청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의 해산안은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사장 : 제2안 “청산인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청산인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 추심과 채무변제 등 청산업무를 담당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에서 특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 : 그럼, 어느 이사가 수고해주시겠습니까? 없으면, 법인사무를 담당해온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사전원 : 사무국장이 적임자입니다. 찬성합니다.
- 사무국장 : 이사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 이사장 : 그럼, 사무국장 홍두깨를 청산인에 선임하는 제2안 청산인 선임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사장 : 그동안 이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청산절차를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여러 이사님들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 폐회를 선포합니다.

20○○년 월 일

이사장 ○ ○ ○ (인)
출석이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감사 ○ ○ ○ (인)
감사 ○ ○ ○ (인)

☞ 작성방법

– 회의록은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리, 청산인 선임 등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이사장 및 출석이사,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며 각 장마다 간인한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공익법 제10조①-2)

Q&A

● 청산(淸算)은 무엇을 말하나요?

청산이란 해산에 들어간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하며, 청산은 청산인이 담당합니다.

■ 근거 : 민법 제81조~제84조, 제87조

■ 청산법인

- 청산법인은 본래의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 해산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해산 전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청산인

- 청산인은 이사에 갈음하여 사무집행과 대표권을 갖습니다.
-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 또는 총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청산인이 없을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에 주무관청은 해당되지 않음.

Q&A

● 청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청산절차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며,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입니다.

▸ 청산절차는 해산절차의 마지막 단계와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 근거 : 민법 제85조~제95조

■ 청산의 절차

① 해산등기

•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관할 등기소(주사무소, 분사무소)에 해산 등기를 한다.

• 해산등기 사항 : 해산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사항 등

• 해산등기 신청 서류

– 해산사유 및 해산일자

–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 공증된 총회나 이사회 회의록

• 청산인은 해산등기 후 해산등기부등본을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산사무 집행

• 해산 전부터 계속 중인 사무를 모두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채권신고의 최고(催告)를 공고 : 청산인 취임날로부터 2개월 내 3회 이상 실시

☞ 해산허가를 득하고 채권신고의 공고 후 최고기간의 종료시(2개월 이상)까지 채무의 변제를 금지함.

– 법인세 신고·납부 : 해산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등 신고·납부 : 해산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 잔여재산의 인도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함.

☞ 전라북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법인은 잔여재산 인도처가 전라북도교육청임.

☞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음.

③ 청산종결등기 및 신고

•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등기부등본을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출한다.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 산 연월일		
해산 사유	1. 해산사유: 2. 잔여재산: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① - 해산 신고 수리 검토서 】

공익법인 해산 신고 수리(受理) 검토서(예시)

1. 법인 일반현황

○ 법 인 명: **재단법인 (19 . . . 설립)**
○ 소 재 지:
○ 이 사 장:
○ 설립목적:
○ 자산총액:
○ 잔여재산:
- **현재의 기본재산:**
- **보통재산:**

2. 해산 신고 사유 및 경과

○ 신고건명: 법인 **해산** 신고
○ **해산사유**
1) 기본재산을 예치한 **금융기관 파산**으로 **기본재산 손실(기본재산 증여 등)**
- 현재의 잔여재산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운영 및 장학 사업 한계 도달
2) 기본재산 감소로 **정상적 법인 운영** 및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함**
3)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내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 및 앞으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산결의**
○ **청산인 선임**: 이사 (. . .)

3. 검토내용

○ 해산신고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음**

검토항목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결 과	보완사항
제출 서류의 적정성	법인해산 신고서	-법인 해산 신고 **기재사항**	**적 합**	없 음
	해산 사유서	-법인 해산 **사유의 타당성** **(법인의 정상적 운영 및 목적 달성 불가능: 민법 제77조)** -잔여재산 처분계획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청에 귀속)** -청산인 선임 여부: ○○선임	**적 합**	없 음
	재산 목록 / 보존여부	-기본재산: **-기본재산 보존 여부** **、현재의 기본재산:** -예금: -채권 잔액: **、보통재산:** -잔액증명:	**적 합**	없음
	재산청산 조서	-기본재산: 전북교육청에 귀속 -보통재산: 청산비용 집행 후 잔여 재산 전북교육청에 귀속	**적 합**	없 음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 처리의 타당성 검토 (정관 34조에 따라 전북교육청에 귀속) 、귀속 예정금액:	**적 합**	없 음
	정관	-법인의 정관 검토 (이사, 의결정족수, 잔여재산의 귀속 등)	**적 합**	없 음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검토 (명칭, 사무소, 이사, 해산조건, 자산총액 등)	**적 합**	없 음

이사회 회의록	의결 정족수 충족	**-이사회** ㆍ(정관) 이사 6명 , 감사 2명 ㆍ(재적) 이사 6명 , 감사 2명 **-재적이사 6명**(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이사 **6명**(과반수 이상) **찬성** **-법인의 해산(이사 정수의 2/3찬성 필요)** 정수 6명 중 **6명(전원) 찬성**	**적 합**	없 음
	법인해산 / 청산인 선임건 의결	-이사회 회의록 제1호 의안 **법인 해산의 건** 심의ㆍ의결 -이사회 회의록 제2호 의안 **청산인 선임의 건** 심의ㆍ의결 -회의일시: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적 합**	없 음
	참석자 기명날인 여부	-이사 6명 기명날인 -감사 2명 기명날인	**적 합**	없 음
재산처분 협의여부		-잔여재산 귀속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처분협의 필요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대부 시)**	**협의**	없 음

❍ 임원 임기 현황

직위	성명	임 기	비 고
이사장		20 . . .~ 20 . . .	20 . . . 등기 (상근직원: 없음)
이사			
이사			
감사			임기만료
감사			임기만료

❍ 목적사업 및 법인 운영 현황

- 목적사업 수행현황(최근 5년간) (금액단위: 천원, 인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장학사업					
인 원					

- 정관 변경 내역: (목적 또는 수익사업) 없음
- 예·결산서 제출 및 검토 현황(지적사항 없음)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 산 서	2011.04.27	2012.02.27	2012.12.07	×	×
결 산 서	2012.02.27	2013.03.29	2014.04.04	×	×

- 주무관청 행정지도 및 법인의 이행여부

·(20 . .) 재산관리 부적정 및 기본재산 안정성 확보

·(20 . .) 기본재산 손실발생 및 자진해산 추진

3. 검토결과

❍ **해산신고 수리여부: 수리(受理)**

❍ 재단법인 ○○장학회 해산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제출 서류의 구비와 기재사항이 적합하고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잔여재산 처리 및 재산청산 조서 등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법인 해산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잔여재산 처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정관 제34조)

- 귀속 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증여**
- 잔여재산 현황

❍ 향후계획: **청산**(해산등기-청산사무 집행-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서식 ② - 해산 신고서 송부 공문】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 전라북도교육감

(경유)

제목 공익 재단(사단)법인 해산 신고서 송부

민법 제77조 및 제85조에 따라 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의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어 송부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 해산신고서 1부
2. 해산 사유서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1부
5. 해산당시의 정관 1부
6. 이사회 회의록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부
9. 재산청산조서 1부
10. 잔액증명서 각 1부. 끝.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신자

주무관	○○팀장	○○과장	○○교육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 . .) 접수

우 -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비공개

【서식 ③-1 - 법인 해산신고 수리서】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1111(20 . . .)

법인 해산신고 수리서

1. 법 인 명: 재단법인 ○○장학회
2. 소 재 지: 전라북도 ○○시 ○○로 32
3. 대 표 자
   ○ 성 명:
   ○ 생 연 월 일:
   ○ 주 소:
4. 유 의 사 항: 뒷면에 기재

「민법」 제77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의 해산신고를 수리합니다.

20○○년 월 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아

전라북도교육감

【 서식 ③-2 - 유의사항 】

유 의 사 항

1. 해산등기 및 신고: 청산인은 3주간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완료하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출 ⇒ 관련근거:「민법」제85조 및 86조

2. 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 ⇒「민법」제88조

   ※ 청산인은 위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함 (민법 제90조)

3. 잔여재산의 귀속: 청산종결 후 잔여 재산은 빠른 시일 내에 전라북도교육청에 귀속 ⇒「민법」제80조, 정관 제○○조

4.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와 잔여재산 목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제출 ⇒「민법」제94조,「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2조

5. 문서 이관: 해산 관련 모든 업무 처리 후 법인 관련 문서는 교육청으로 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끝.

【서식 ④ - 해산 통보 안내 공문】

전라북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익법인(재단, 사단) ○○장학회 해산 통보(안내)

1. 관련근거: ○○장학회 해산신고 및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1111(20 . . .)
2. 재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의 법인 해산신고에 대하여 「민법」 제77조 및 제85조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해산신고를 수리하였기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해산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법인 해산 등기 및 청산사무 집행이 관계법령(유의사항 참고)을 준수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그 결과를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5.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우리 교육청에 귀속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잔여재산이 원활이 인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 해산신고 수리서 사본 1부. 끝.

전라북도교육감

수신자 ○○장학회 이사장,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세무서장, ○○등기소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 . .)		접수
우 -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비공개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10>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라 북 도 교 육 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⑤ - 잔여 귀속재산 처분 협의 공문】

전라북도교육청

수신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공익법인(재단, 사단) 잔여 귀속재산 처분에 따른 협의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익법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이 우리 교육청에 귀속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을 유사 목적의 공익법인에 증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산(증여할) 공익법인 현황

법인유형	법인명	대표자	주소재지	설립허가일	해산일
공익법인 (장학사업)	재단법인 ○○장학회	○○○	전북 ○○○ 34	1983.10.17	2016.2.16

나. 잔여재산 귀속될 주체: 전라북도교육청 (해산 법인 정관 제34조)

다. 귀속 잔여재산 총액: 금111,999,000원

라. 귀속 재산 처분(안): 유사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증여

마. 증여 받을 공익법인 현황

법인유형	법인명	대표자	주소재지	설립허가일	목적사업
공익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	전북 익산시 선화로	2006.11.08	장학사업

끝.

전라북도교육감

수신자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 . .) 접수

우 -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비공개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0>

청 산 종 결 신 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⑥ - 해산법인 잔여재산 인도 및 귀속 안내 공문】

전라북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산법인 잔여재산 인도 및 귀속 안내

1. 관련근거
   가. 전라북도○○교육지원청 행정과-1111(20 . . .)
   나. 행정과-1111(20 . . .) 공익법인 잔여재산 귀속 및 처분계획(안)
   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20 . . .) 공익법인 해산에 따른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회신
2. 청산인 ○○○(구, 재단법인 ○○장학회)의 청산사무 종결로 관계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 우리교육청으로 귀속되는 바, ○○**교육지원청**에서는 잔여재산이 다음과 같이 지체 없이 인도될 수 있도록 청산인께 안내 하시기 바라며,
   가. 귀속될 공익법인: (재)○○**장학재단**
   나. 귀속 잔여재산 총액: 금111,111,000원
3.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공익법인은** 재산관리 및 장학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라북도교육감

수신자 ○○장학회 이사장,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청산인 ○○○)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행정과- (. . .)		접수
우-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비공개

【 서식⑦ – 허가증 재교부(갱신) 신청 및 진달 】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

수신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공익법인(재단, 사단) 설립허가증 갱신(재교부) 신청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법인은 ----------
   사유로 20 . . . 교부된 법인설립 **허가증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기에 **[사유로 20 . . . 교부된 법인설립 허가증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분실(멸실, 훼손, 기타사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갱신(재교부를) 을 신청합니다.

- 갱신 신청 내용 -

법인명칭	설립일	대표자	갱신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재단법인 ○○법인	20 . . .	○○○				

(- 재교부 신청 내용 -)

가. 법인현황

법인명칭	설립일	설립자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목적사업
재단법인 ○○법인	2 . . .	○○○	○○○	허가 제20 -00호	전라북도 ○○시 ○○로	장학사업

나. 분실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함)

붙임　갱신(재교부) 관련 증빙서류 등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관할 교육지원청은 갱신 또는 재교부 신청서 송부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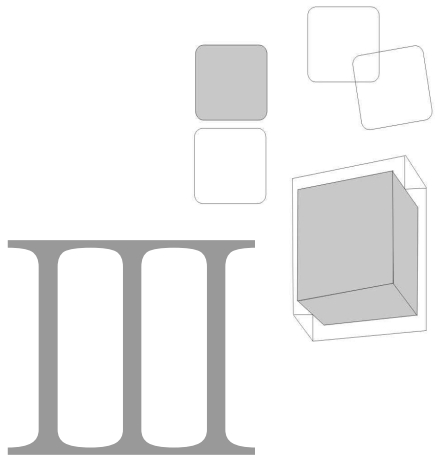

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 재산관리
2. 사업관리
3. 정관관리
4. 임원관리
5. 회계관리

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 재산관리

가. 일반원칙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8조의2)
- 성실공익법인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익법 제11조④, 공익령 제18조의3③, 상증법 제16조②)
-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1조⑤, 공익령 제20조)
- 재산의 관리에는 매도, 교환, 양도, 임대, 기부, 담보 등의 처분과 매수, 신축, 기부채납 및 기채 등을 포함한다. (문교부 사회1072-62, '83.2.10)

1) 재산의 구분 (공익법 제11조①, 공익령 제16조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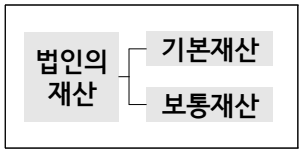

- 기본재산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공익령 제16조①항2호)

  -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배당금, 임대수입 등을 말하며, 이사회 의결로 목적사업과 운영비로 사용함.

☞ 감독청은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공익령 제16조③)

☞ 보통재산과다 여부는 임대보증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감가상각비 등 모든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통재산이 기본재산의 30% 초과로 판단한다.

보통재산의 유형

■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
- 주식의 배당금
-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수입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전입된 이익금
- 무형자산(영업권·특허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금

■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당해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
-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 기타 기본재산이 아닌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2) 기본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1조②)

☞ 기본재산변동 정관변경 지침(문교부 사회1070-693. '75.9.1)

– 법인의 정관 별지목록에 기재된 각 기본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관의 별지목록은 정관내용의 일부이므로 별지목록상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처리하도록 예규 통첩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 재산의 평가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공익령 제24조)

☞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각종 허가 시 기본재산의 보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한다.

☞ 현금(예금)의 경우에 잔액증명서와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단인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 유상취득

■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이 용도에 적합한지, 취득 시 제한사항(토지거래허가지역, 농지)이 있는지 검토
- 매매계약 전에 관련 공부(公簿)를 발급받아 소유권, 면적, 이용 제한 등 검토

■ 취득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구 분	검토사항	검토방법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재산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인가	등기부등본(갑구), 매도인 신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제한물권 설정 여부	당해재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부등본(을구)
지적공부 등의 등재 사실 여부	재산의 소재지, 면적, 수량 등은 정확한가	건축물 대장, 토지(임야)대장, 선박, 중기, 입목 등의 등기사항
점유사실 여부	당해 재산을 권원이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산의 점유실태 확인 등

※ 특히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권 수여 범위 내에서 하는 대리 행위인지 등 신중을 기하여 계약 체결

나. 기본재산의 허가사항

■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성실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④, 공익령 제17조①,제18조의3
■ 유형 : 매도, 교환, 증여, 임대
- 매도 및 교환

☞ 예시 : 현금 ⇔ 주식·부동산·채권 등, 주식·부동산·채권 등 ⇔ 주식·부동산 등

- 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대

☞ 임대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기본재산 처분이전에 정관변경(수익사업 추가)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처분 이후(또는 동시에)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익사업 승인편 참조

■ 처리과정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 서류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 처분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 보고 ➡ 정관변경 절차이행(기본재산 목록 변경)

■ 신청서류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공문
• 처분사유서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내역서
• 취득예정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기타 기본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부속서류(감정평가서, 지가 확인서, 상품 설명서, 신용평가자료 등 처분기준 참조)

■ 유의사항

• 처분 허가 전 필수 검토사항 확인
– 기본재산의 관리현황
– 직전 허가사항이나 제출서류 이행여부
– 임원의 임기만료 여부
– 전년도 목적사업 수행 실적
–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제출여부 및 내용

☞ 모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통장사본(원본 제시요구)를 징구하고 담당공무원 원본대조필 할 것

• 대체재산이 없는 재산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서와 향후 재산보전 확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 회의록에 처분의 사유와 내용,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손실보전 확약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매년 결산서 제출 시 임대보증금 관리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을 계상한다.

☞ 단, 부족 시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통재산에서 처리 가능하다.

• 이행결과 보고 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처분이후 정관변경(별지 기본재산 목록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행결과 자산총액 변동 시 변경등기를 마친 후 등기부등본 첨부

■ 처분기준

[유가증권 매입]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시행기준</th><th>필요서류</th></tr>
<tr><td colspan="2">주 식</td><td colspan="2">불허가</td></tr>
<tr><td rowspan="5">채권 등</td><td>국·공채
중금채</td><td>가능</td><td>• 기본서류
• 상품설명서</td></tr>
<tr><td rowspan="2">회사채
금융채</td><td>• 장기사채 : BBB-이상, 공시이율 이상</td><td rowspan="2">• 기본서류
• 신용평가등급서 2개
(회사채의 신용평가서가 없을 시 유사채권의 신용평가서로 갈음 가능)
• 상품설명서
• 모의투자내역서</td></tr>
<tr><td>• 단기사채 : A3-이상, 공시이율 이상</td></tr>
<tr><td rowspan="3">파생형
상품</td><td>• ELS(주가연계증권) : 원금 보장되는 저위험군 허가, BBB-이상&공시이율 이상</td><td rowspan="3">• 기본서류
• 신용평가등급서 2개
(회사채의 신용평가서가 없을시 유사채권의 신용평가서로 갈음 가능)
• 상품설명서
• 모의투자내역서</td></tr>
<tr><td>•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원금 보장되는 저위험군 허가, BBB-이상&공시이율 이상</td></tr>
<tr><td>• 하이브리드 채권(신종자본증권) : 회사채 기준 (BBB-이상) 허가</td></tr>
<tr><td>보험상품</td><td>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 상품
: <u>A-이상(보험금지급능력등급),</u>
(원금 보장, 매월 또는 분기별 이자수익 상품)
실질 이율이 공시이율 이상</td><td>• 기본서류
• 약관
•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산한 실질이율을 표시한 계약서
• 상품설계서
• 신용평가등급서 2개
• 임원의 보험업무 협조 확약서(공증)</td></tr>
</table>

※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채권 등 매입 시(국·공채, 중금채는 제외) 구체적인 손실보전 확약 방안을 명시. 단, 회의록에 손실보전에 대한 확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손실보전 확약서 제출 필요

※ 보험상품 허가 조건 : 계약자·보험수익자 법인 명시, 가입 시 피보험자 이사장 또는 임원, 중도해지금지

※ 주식혼합형 파생형 상품, 펀드, 신탁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불허함

[부동산 매입]

구 분	시행기준	필요서류
상 가	**실거래가 이하,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 기본서류 • 감정평가서 1개 • 지가확인서 •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수익률분석표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실거래가 *이하,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 기본서류 • 감정평가서 1개 또는 지가확인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수익률분석표
토지	**실거래가 이하,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 무수익 토지(임야, 산지 등) 불가, 농지법상 농지 소유 불가	• 기본서류 • 감정평가서 1개 • 지가확인서 •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수익률분석표
부동산 리모델링 증축	**• 법인의 재산운용상태 분석** · 현재 임대수익률 < 예상임대수익률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등) 사업 원칙적 불가** · 예외적 허용 : 재산운용 상태 분석(운용소득 70프로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사업 안전성 확보	• 기본서류 • 리모델링 및 증축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증빙자료 •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수익률분석표

※ 감정평가서를 2개→1개로 완화하고 발급이 용이한 지가확인서 제출(단, 아파트 등은 한 개만 선택 제출)
※ 공익령 제17조①에 따라 건물(공동주택, 상가 등)의 경우 지가확인서를 주택가격확인서 등으로의 대체는 관계부처 질의 회신 후 시행
※ 확인 사항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보증금 확보,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여부 확인
※ * 공동주택 매입은 지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동일 평수 1년 평균 실거래가의 ±10%를 기준가액으로 봄(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없을 시에는 국민은행부동산 시세표 참고)

[매각]

구 분		시행기준	필요서류
주식	상장 주식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상+ 정관상 취득가액 이상**	• 기본서류 • 평가액산출내역서 • 주식보유증명서
	비상장 주식	**상증법 제54조 및 제56조 상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의 감정평가액 이상**	• 기본서류 • 평가보고서 • 주식보유증명서
채권		**취득가액 이상**	• 기본서류 • 평가보고서 • 주식보유증명서
부동산	상 가	**감정평가액 이상 + 취득가액 이상**	• 기본서류 • 감정평가서 1개 • 지가확인서 •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수익률분석표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취득가액 이상+실거래가 이상**	• 기본서류 • 감정평가서 1개 또는 지가확인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토지	**감정평가액 이상 + 취득가액 이상**	• 기본서류 • 지가확인서 • 제세공과금 등 비용내역서

※ 감정평가서를 2개→1개로 완화하고 발급이 용이한 지가확인서 제출(단, 아파트 등은 한 개만 선택 제출)

※ 공익령 제17조①에 따라 건물(공동주택, 상가 등)의 경우 지가확인서를 주택가격확인서 등으로의 대체는 관계부처 질의 회신 후 시행

※ 확인 사항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보증금 확보, 임대수익이 공시이율 이상 여부 확인

※ * 공동주택 매각은 지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동일 평수 1년 평균 실거래가 ±10%를 기준가액으로 봄(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없을 시에는 국민은행부동산 시세표 참고)

기본재산의 처분 신고(성실공익법인)

- 대상 : 상증법 제16조②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④, 공익령 제18조의3
- 유형 : 기본재산의 20%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 처리과정(매도 등을 한 날부터 3주 이내)

매도 ➡ 기본재산 처분 신고 ➡ 신고 수리

매도 ➡ 정관변경 절차 이행

채권

-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이 일반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중소기업금융채권, 선·후순위채), 회사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기본재산의 담보(장기차입) 허가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③·제18조
- 담보의 유형
  - 단·장기 차입에 따른 담보

☞ 장기차입에 따른 담보는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토록 함.

  - 임대인의 전세권 확보를 위한 담보 등
- 장기차입 대상 : (기본재산총액 – 부채총액) × 5/100 이상의 금액(공익령 제18조①)
- 처리과정 :

허가신청 및 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보고

- 신청서류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신청 공문

-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 담보(장기차입) 내역서
  - 담보(장기차입)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장기차입금)
  - 담보권자(장기차입처)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기타 담보(장기차입)에 필요한 부속서류

■ 유의사항

- 처분 허가 전 필수 검토사항 확인
- 임대인의 요구에 따른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인 경우 임대계약서, 임대보증금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후 해당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인이 기본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 회의록에 담보(장기차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어디서 얼마를 어떠한 명목으로 빌려 이를 어느 용도에 충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가

- 상환 방법을 증명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환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허가한다.
- 이행결과 보고 시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매년 결산서 제출 시 상환내역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등 허가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④

■ 유형

- 부동산의 용도변경

☞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강제결정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정관변경(목록변경)으로 갈음한다.

■ 처리과정 :

허가신청 및 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보고

■ 신청서류

-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 공문
- 용도변경 등 사유서
- 용도변경 등 내역서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기타 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부속서류

4)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 근거 : 공익령 제16조①-2

■ 처리과정 :

승인신청 ➡ 승인 ➡ 집행(이행) ➡ 결산보고

■ 신청서류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 공문
- 사유서
- 기부증서

☞ 기부자가 다수일 때는 성명, 기부금액을 표로 정리하여 대표자 3인 이상 서명 받아 제출, 기부영수증 X

- 기부금 사용계획서
- 재산의 보유증명서(예탁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유의사항

-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합리성·타당성·객관성을 띤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승인한다.
- 환금성이 낮은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예외승인을 할 수 없다.
- 기부금의 10%이내에서 직접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승인 이후 결산서 제출 시 기부금사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1. 재산의 구분 (교육규칙 제3조-3)

- 기본재산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운영재산 (공익법인의 보통재산과 같음)
  - 회원의 회비나 기부금 등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2. 기본재산 처분

-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이 없으므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사항이 없다.
-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도 정관상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 허가만 신청하면 된다. (교육규칙 제6조)
- 정관변경 허가 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준하여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5)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3, 공익령 제18조의2
- 편입가능 금액 : 기본재산의 10% 범위 내
- 유형 : 신청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 동안의 수익의 30%이상 감소로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

☞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3년 경과해야 함

- 허가기준
  -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 동안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연평균 금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 동안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연평균 금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 동안 회비수입의 연평균 금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4가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 처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통재산에 편입

☞ 설립 허가 당시 기준금액 이하로 기본재산 감소 시 불허함. 단,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하고 자진 해산할 계획이 있는 경우 허가 가능

■ 처리과정 :

편입 허가신청 ➡ 처분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 보고 ➡ 정관변경 절차이행(기본재산 목록 변경)

■ 신청서류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서
-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보통재산편입 이후 2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금액은 100분의 10범위 이내에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신청하되,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통재산편입 이후 2사업연도 분의 수지예산서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 편입사유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신고(성실공익법인)

- 대상 : 상증법 제16조②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④, 공익령 제18조의2
- 유형 : 기본재산의 10%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직전 편입으로부터 최소 3년 경과)
- 처리과정

매도 ➡ 기본재산 편입 신고 ➡ 신고 수리

매도 ➡ 정관변경 절차 이행

Q&A

● 공익법인의 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①, 공익령 제16조①, ②

■ 재산의 구분

기 본 재 산	보 통 재 산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배당금, 임대수입 등을 말함. ◆ 이사회 의결로 목적사업과 운영비로 사용함.

실태조사지적사례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관리 소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없이 같은 계좌로 관리하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다가 기본재산을 손실함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결산잉여금 관리 소홀(보통재산 과다 보유)**

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결산상 잉여금을 수년간 적립하여 보통재산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었음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 목적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함. (공익법 제12조③)

■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관리 소홀**

수익사업회계(부동산 임대)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경리·관리하지 않음

☞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Q&A

-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재산의 관리에는 매도, 교환, 양도, 임대, 기부, 담보 등의 처분과 매수, 신축, 기부채납 및 기채 등을 포함합니다.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제19조①

■ 유형

① 매도 및 교환

- 현금 ⇔ 주식·부동산·채권 등, 주식·부동산·채권 등 ⇔ 주식·부동산 등 재산의 변동을 말한다.

☞ 허가 제외 사항 : 원금이 회수되는 채권 등의 경우 기간 만기로 현금으로 전환되었을 때 정관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됨.

② 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임대

- 부동산의 임대를 말하며 정관변경(수익사업 추가)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지적사례

■ **기본재산 임의 처분(기본재산 손실)**

주식연동형 펀드에 가입하면서 처분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만기 시 원금을 손실시킴

☞ 원금손실형 상품은 처분허가가 불가하고, 손실액에 대한 보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

■ **정관 개정 소홀(기본재산 별지목록 변경)**

기본재산인 주식이 회사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총금액의 변동 없이 수량과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함에도 변경 신청 하지 않음

☞ 총금액의 변동 없이 수량과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도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총금액이 변동될 경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보상금 처리

■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 수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부동산 처리

■ 부동산이 노후하여 임대가 어려울 경우
-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통재산이나 불가피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현금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함.
- 리모델링 비용은 기본재산 부동산의 금액으로 증액시킴.
- 리모델링 전·후 임대사업 수익률 분석표 제출하여야 함.

법인 사무실 매입

■ 현금으로 법인 사무실을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
- 이자소득의 감소로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사무실 매입은 타당하지 않음

비주식 유상감자, 분할·합병

■ 주식의 유상감자로 취득한 차익금은 기본재산에 편입
- 필요서류 : 기본서류, 유상감자 내역증명서류(주주총회록, 법원판결문 등), 제세공과금 내역서, 주식보유증명서

■ 주식의 분할 · 합병은 정관변경 허가 사항
- 필요서류 : 기본서류, 분할 · 합병 내역증명서류(주주총회록, 법원판결문 등), 제세공과금 내역서, 주식보유증명서

기본재산 구성 기준

■ 기본재산이 30억 이상인 법인은 단일 종별(채권, 부동산 등)이 기본재산의 80% 이하를 보유토록 권장(정기예금 제외)

Q&A

-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기본재산 처분 후 기본재산 목록 또는 총액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허가 신청 및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①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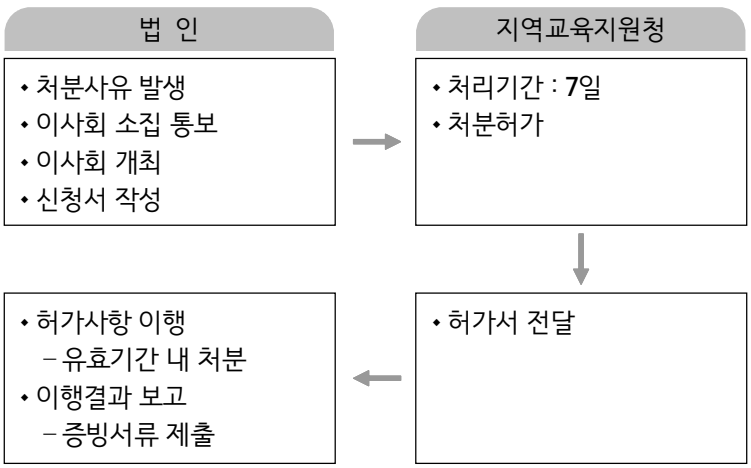

■ 기본재산 처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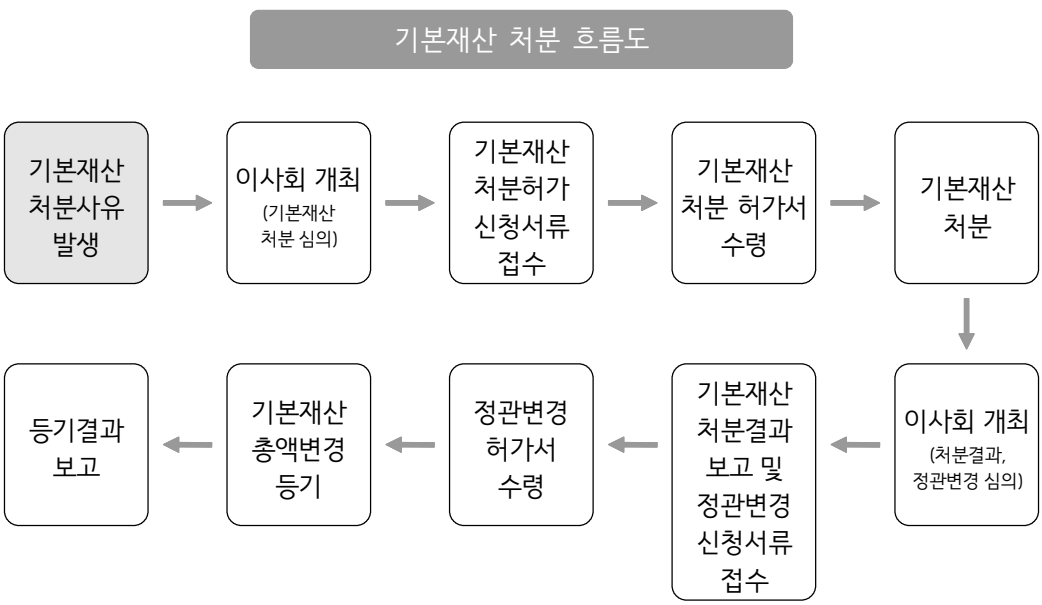

<기본재산 목록 및 총액이 모두 변경된 경우>

☞ 기본재산 총액의 변동 없이 목록만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허가서 수령으로 종료됨.

☞ 기본재산 목록 및 총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로 종료됨.

실태조사지적사례

■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 미이행**

처분허가를 받은 후 정관변경을 하지 않음

☞ 기본재산 처분 허가 후 정관변경 허가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 내용대로 처분하였는지 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함

기본재산 처분(부동산 교환)

■ 법인의 토지(임야)와 이사장의 토지(농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농지 취득은 불가능함. (농지법 제6조①)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 미이행(채권)

■ A채권의 매입 허가를 받았으나 B채권을 매입한 경우

- 다른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 허가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수량, 금액 등 허가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채권은 매매 시기가 짧으므로 채권을 보유할 계획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처분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후 유효기간 내 처분이 불가능할 시

-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허가 기간 종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부동산 매각의 경우 잔금수령까지 기간과 정관변경 신청기간까지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처분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

(20○○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

(20○○년　　월　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Q&A

●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할 때 처분대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류가 다릅니다.

■ 근 거 : 공익령 제17조①

■ 신청서류 : 처분재산

①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공문
② 처분사유서
③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내역서
④ 이사회 회의록
⑤ 취득예정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
⑥ 기타 기본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부속서류

☞ 임대는 대부분 수익사업 승인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수익사업 승인 시 신청서류를 참조

부동산 처분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세공과금 등 비용 계산내역서 등
- 매입인 경우 수익률분석표, 임대보증금 확보 관련자료 추가
- 수용된 관계기관의 공문 등 수용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주식 및 채권의 처분 관련 서류

- 주식은 상장주식일 경우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계산 서류, 주식보유증명서 비상장주식일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 주식보유증명서
- 채권은 매입시 2개 이상 신용정보기관의 신용평가자료

비채권 등 취득금액과 평가 금액(잔고증명서)가 다른 경우

- 기본재산은 취득금액으로 관리되어야 함.

【 서식 ①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처분사유서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1부.
3. 취득예정재산 소유권 증명서류 1부.
4. 손실보전 화약서 1부.(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 전환 경우)
5. 이사회 회의록 1부.
6. 기타 기본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부속서류. 끝.
※ 감정평가서, 지가 확인서, 상품 설명서, 신용평가자료 등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21.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서식 ①-1 -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①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때〕

본 법인의 기본재산인 전라북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000㎡는 무수익 부동산으로 이를 120,000천원에 매각하고 제세공과금(10,000천원)을 제외한 110,000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②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때〕

본 법인은 기본재산 현금 3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17년 18,000천원, 2018년 10,000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최근 금리의 하락(1.25%)이 장기화 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서식 ①-2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내역서 】

〔①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때〕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단위 : 원)

기본재산 구분			④ 처분전 기본재산 ('20년1월1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 금액】	기본재산 처분허가(변동) 내역 【(수량) 금액】			⑧ 처 분 후 기본재산 예 정 액 【(수량)금액】
① 구분	② 종목	③ 종별 또는 소재지		⑤ 처분예정재산 (減)	취득예정재산(增) ⑥ 감정평가 (공시지가)	취득예정재산(增) ⑦ 취득예정 (제세공과금)	
동산	현금	예금	100,000,000			110,000,000 (10,000,000)	210,000,000
동산	소 계		100,000,000			110,000,000	210,000,000
부동산	임야	전라북도 ○○군○○면 ○○리○○번지	(3,000㎡) 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0㎡) 0
부동산	소 계		(3,000㎡) 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0㎡) 0
합 계			**10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110,000,000**	**210,000,000**

〔②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때〕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단위 : 원)

기본재산 구분			④ 처분전 기본재산 ('20년1월1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 금액】	기본재산 처분허가(변동) 내역 【(수량) 금액】			⑧ 처 분 후 기본재산 예 정 액 【(수량)금액】
① 구분	② 종목	③ 종별 또는 소재지		⑤ 처분예정재산 (減)	취득예정재산(增) ⑥ 감정평가 (공시지가)	취득예정재산(增) ⑦ 취득예정 (제세공과금)	
동산	현금	예금	300,000,000	300,000,000			0
동산	채권	○○				300,000,000	300,000,000
동산	소 계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부동산	임야	전라북도 ○○군○○면 ○○리○○번지	(3,000㎡) 9,687,350				(3,000㎡) 9,687,350
부동산	소 계		(3,000㎡) 9,687,350				(3,000㎡) 9,687,350
합 계			**309,687,350**	**300,000,000**		**300,000,000**	**309,687,350**

작성방법

① 구분 : 동산-부동산
② 종목 : 현금-주식-채권(동산), 전-답-대지-임야-잡종지-건물(부동산)
③ 종별 또는 소재지
 ~ 동산인 경우 정기예금-주식명(보통주, 우선주 구분)-채권명
 ~ 부동산인 경우 소재지 번지까지 구분하여 작성
④ 처분 전 기본재산 : 처분허가 신청 시 정관의 재산내역과 반드시 일치
⑤ 처분예정재산 : 수량과 금액 구분
⑥ 감정평가(공시지가)
 ~ 감정평가서와 공시지가확인서 금액 작성
 ~ 주식인 경우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매각금액의 판단자료임.
 ~ 주식이나 채권 매각 시 처분예정금액을 작성
⑦ 취득예정(제세공과금)
 ~ 매각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구분하여 실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금액 작성
 ~ 제세공과금에 대한 산출내역서 첨부해야 함.
⑧ 처분 후 기본재산 예정액 = ④처분 전 기본재산 - ⑤처분예정재산 + ⑦취득예정

【 서식 ①-3 - 손실보전확약서 】

손실보전 확약서

이사(장) ○○○은 재단의 기본재산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 상품에 투자한 후 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서식 ①-4 - 기본재산 처분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 00. 00.	
이사정수	7 명	재적이사	7 명

1. 회의일자 : 20○○. 00. 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 1호 의안 : 기본재산 처분 계획(안)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이사정수 7명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18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기본재산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우리 법인은 기본재산으로 현금 1억원과 부동산으로 전라북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0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임야로 수익이 전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종합부동산세가 확대되면서 해마다 10,000천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1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0천원으로 대학생 5명 1,000천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학등록금의 인상으로 2016년에는 장학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매수인이 없어 그동안 매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수자가 나타나 매각하였으면 합니다. 매각예정금액은 120,000천원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면 110,000천원 정도가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금이 210,000천원이 되면 연 6%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12,600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6명에게 2,100천원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갑 이사 : 그동안 해마다 금리의 하락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교육청으로부터 무수익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마침 적당한 가격에 매수인이 나타나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무국장, 그럼 언제 매각이 가능한가요?
- 사무국장 : 일단 매수인의 매수의사가 확실하다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가 후 매매계약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부동산 매각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이사전원 : 없습니다.
- 이사장 : 그럼, 부동산 매각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 이사장 : 제1안 기본재산 처분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출석이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작성방법

- 회의록은 기본재산 처분사유, 처분대상, 처분방법, **손실보전 확약방안**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출석이사, 감사전원이 기명날인하며 각 장마다 간인한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공익법 제10조①-2)

【 서식 ②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알림 공문】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단(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알림] 공익법인(재단,사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알림

1. 관련: ○○○법인-000(20○○.00.00)호
2. 귀 법인이 신청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3. 재산처분이 완료된 후 재산변동에 따른 정관변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처분의 경우 아래 조항을 추가하여 알림

4.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내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1부. 끝.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20 . . .) 접수 ( )

우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비공개

【 서식 ②-1 -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

교육지원과-　　(20○○.00.00.)

기본재산처분허가서

재(사)단법인 ○○○○장학재단
이　사　장　○　○　○

재(사)단법인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년　　월　　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아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1. 처분재산 허가사항

재산명	지목	소 재 지	지적(수량)	평 가 액(원)	비고
부동산	임야	전라북도 ○○군 ○○면	㎡		
주 식		○○주식회사	○○주		

2. 허가조건

가. 처분재산은 감정평가법인(주식은 증권거래소를 통한 처분액)의 평가액 이상으로 한다.
나. 처분 허가일로부터 ◯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허가를 취소한다.
다. 처분 사항에 대하여 처분 후 14일 이내에 처분결과를 보고한다.

3. 처분대금 사용조건

가. 재산처분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사용
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처분대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본재산에 편입, 정관변경 이행 보고

【 서식 ③ -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른 이행결과 보고 공문】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

1. 관련: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00(20○○.00.00.)
2. 본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른 이행 결과
   - 처분 사항:
   - 처분 허가일:
   - 처분일:
   - 처분내용:

붙임 소유권 이전 증명서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21.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Q&A

●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재산을 담보하거나 대출 금액이 장기차입에 해당되면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③·제18조

■ 담보의 유형

① 단·장기차입에 따른 담보

- 금융권에서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 단기차입과 장기차입은 대출기간이 아니라 대출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그 구분에 따라 처리절차가 달라집니다.

☞ 회계상의 단·장기차입과 다름.

장 기 차 입	단 기 차 입
•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의 부채총액) × 5/100이상인 경우 •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부분 담보와 같이 이루어짐.	• 장기차입에 해당하지 않은 금액인 경우 •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담보 없이 이루어지기도 함. • 당해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함. (1년 이내 상환)

② 임차인의 전세권 확보를 위한 담보 등

- 임차인의 요구에 따른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말합니다.
- 임대금액이 크거나 임차기관(은행, 전자대리점 등)의 내부지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절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절차와 같음.

실태조사지적사례

■ **기본재산 임의 처분 (장기차입)**

장기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음

☞ 장기차입인 경우 반드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 담보와 같이 이루어짐.

■ **기본재산 임의 처분 허가 (단기차입)**

단기차입을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하고 2~3년에 거쳐 상환하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함

☞ 단기차입 시 반드시 명확한 상환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단기차입인 경우에도 지역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단기차입한 경우 담보에 대한 허가는 받아야 함.

관할 등기소

■ 관할 등기소란 등기할 권리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①)

Q&A

● 담보나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담보나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유서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③, 제18조

■ 신청서류

①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신청 공문
②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③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④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⑤ 이사회 회의록
⑥ 기타 담보(장기차입)에 필요한 부속서류

장기 차입 관련 서류

-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 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야 함.
-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장기차입금), 담보권자(장기차입처), 차입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각각 관련 자료와 장기차입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상환계획서 : 상환기간동안 연도별 상환금액과 재원을 작성하고 상환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이사회 회의록 : 담보(장기차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서식 ④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장기차입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1부.
2.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1부.
3. 상환계획서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기타 부속서류. 끝.
※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담보권자, 임대계약서 등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21.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서식 ④-1 -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① 담보와 장기차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법인은 기본재산인 전라북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000㎡는 무수익 부동산으로 취득 후 10여년 동안 매각하고자 했으나 매수인이 없어 방치되어 있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전주와 거리가 멀지 않아 창고를 지어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지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동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창고 건축 및 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② 장기차입만 이루어지는 경우〕

본 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의 예금이자로 최근 3년 평균 4천만원 정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금리의 하락으로 향후 목적사업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최저 15억원)을 매입하여 연간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결정하였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모기업인 (주)홍길동에서 1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으나 부족분 5억원은 홍길동 이사장의 소유 부동산인 담보로 불가피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하되 차입금은 법인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④-2 -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 담보 내역서

담보할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단위:천원)	담보권자	비고
소재지	수량			
전북 ○○군 ○○면 ○○○번지	1,000㎡	100,000	○○○은행	

▣ 차입금 사용명세서

(단위 : 천원)

차입금액	차입금 사용 계획			비고
	일자	내용	금액	
100,000	2016.01.10	창고설계	10,000	
	2016.07.01	창고건축	85,000	
	2017.01.01	부대비용	5,000	
	계		100,000	

※ 장기차입 해당 여부

장기차입금 총액(100,000천원) > 장기차입기준액(39,600천원)으로 장기차입 해당함.

(단위 : 천원)

기본재산총액 ①	부채총액 ②	장기차입 기준액 {(①-②)×5/100}	장기차입금		
			총액	기존 장기차입액	신규 장기차입액
800,000	8,000	39,600	100,000	0	100,000

【 서식 ④-3 - 상환계획서 】

상 환 계 획 서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단위 : 천원)

차입금액	상 환 계 획			비고
	일자	상환재원	금액	
100,000	2017.01	2016 결산잉여금	20,000	
	2018.01	2017 결산잉여금	30,000	
	2019.01	2018 결산잉여금	50,000	
	계		100,000	

【 서식 ④-5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 00. 00.	
이사정수	7 명	재적이사	7 명

1. 회의일자 : 20○○. 00. 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 1호 의안 : 기본재산 담보 및 장기차입 계획(안)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이사정수 7명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장기차입 및 담보제공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이사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인 전라북도 ○○군 ○○면 ○○번지 소재 임야 1,000㎡는 무수익 부동산으로 취득 후 10년 동안 매각하고자 했으나 매수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활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주와 거리가 멀지 않아 창고를 지어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지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금1억원을 4년간 대출이자 연 3% 조건으로 대출받아 창고건축 및 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상수익은 연간 5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대출이자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연간 순수익은 약 4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익금으로 1년 거치 3년 상환(20○○년 2천만원, 20○○년 3천만원, 20○○년 5천만원)하면 되고, 이후 수익금은 장학사업에 전액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 이사장 : 안건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 갑이사 : 담보제공이나 차입에 대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나요?
– 사무국장 : 장기차입에 해당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총액이 8억원이고, 부채총액이 8백만원이므로 우리 법인의 장기차입 기준액은 3,960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원의 차입은 장기차입에 해당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동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원하므로 담보제공에 대한 것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갑이사 : 4년간 차입금 상환만 하면 장학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 사무국장 : 현재도 8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후에는 수익금 전액을 장학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에 차입으로 인한 장학사업의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을이사 : 그렇다면 차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사전원 : 네, 좋은 방안입니다. 찬성합니다.
– 이사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사전원 : 의견 없습니다.
– 이사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제1안 장기차입 및 담보제공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사장 : 이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의결사항을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여러 이사님들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하생략
☞다른 이사회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⑤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 알림 공문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단(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알림]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 알림

1. 관련: ○○○법인-000(20 .00.00)호
2. 귀 법인이 신청한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붙임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에 따라 차입금 조기 상환 및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재산처분이 완료된 후 재산변동에 따른 정관변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보(장기차입) 허가서 1부. 끝.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20 . . .) 접수 ( )

우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비공개

【 서식 ⑤-1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서 】

교육지원과-　　(20◯◯.00.00.)

담보제공(장기차입)허가서

재단(사단)법인 ◯◯◯장학재단
이　사　장　◯　◯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의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년　　월　　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아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ㅁ 담보제공 허가사항

재산명	소 재 지	지목	지적 (수량)	피담보 채권액	담보 기간	담보 권자	담보조건
부동산	전라북도 ◯◯군 ◯◯면	임야	㎡	원			

※ 담보조건: 담보제공 신청서의 담보조건 및 사용조건 등을 붙여 허가
※ 담보 없이 장기 차입할 때에는 차입금액, 기간, 상환조건 등을 붙여 허가

Q&A

● 기본재산인 현금을 법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으로 보며 반드시 교육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④

■ 용도변경의 유형

① 부동산의 용도변경

- 건축물 및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의 용도변경은 교육청의 허가 이후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결정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재산목록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됨.

② 현금 ⇔ 법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 이자소득이 줄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절차 및 서류

- 기본재산 처분허가 내용 참조.

실태조사지적사례

■ **기본재산 임의 처분(토지 지목 변경)**

기본재산인 토지의 지목이 행정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강제적으로'전·답'에서'도로'로 바뀌었으나 정관변경 허가를 받지 않음

☞ 부동산의 용도가 바뀌는 즉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용도뿐만 아니라 면적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우선 받아야 함.

■ **기본재산 임의 처분(임차보증금 사용)**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함

☞ 임차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보관 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해당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돌려주지 못하여 임차인이 기본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함

Q&A

● 기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합니다.
▸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공익령 제16조①-2

■ 유의사항

① 기부목적과 내용 확인

• 기부를 받을 때에는 기부목적과 법인의 목적 및 사업과 일치하는지 우선 판단하여야 한다.
• 수혜자를 한정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 정관의 수혜자 한정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무수익 재산 확인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인 경우 이로 인해 목적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특히, 무수익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납부로 목적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합리성·타당성·객관성을 띤 사유” 를 제시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다.
• 채권(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기부한 경우 처분계획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 승인을 받은 후 결산서 제출 시 기부금사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Q&A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사용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근거 : 공익령 제16조①-2

■ 신청서류

①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 공문

② 사유서

③ 기부증서(기부자가 다수일 때는 성명, 기부금액을 표로 정리하여 대표자 3인이 상 서명 받아 제출)

④ 기부금 사용계획서

⑤ 재산권리증명서(예탁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⑥ 이사회 회의록

실태조사지적사례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주)○○○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서식 ⑥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재단법인○○○○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부금 사용 사유서 1부.
2. 기부증서(승낙서) 1부.
3. 기부금 사용계획서 1부.
4. 재산권리증명서(예탁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서식 ⑥-1 - 사유서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사유서

홍길동 이사장이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6억원을 기부하여 온 바, 6억원 중 기본재산으로 5억원을 편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기본재산의 이자소득이 줄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20○○년도 상반기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⑥-2 - 기부증서 】

기 부 증 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에 무상 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20○○년 월 일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기부재산의 표시

재 산 명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예금 (농협 ....)	현금	1계좌	300,000,000	기본재산
부동산 (○구 ○○동 ○가 ○번지)	건물	1,000㎡	200,000,000	기본재산
예금 (국민은행...)	현금	1계좌	100,000,000	보통재산
합 계			**600,000,000**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예탁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등기부등본 등)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 서식 ⑥-3 - 기부금 사용계획서 】

기부금 사용계획서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사용내역	지급시기	지급액	내 역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장학금	2018년 3월	60,000,000원	- 대상 : 고등학교 및 대학생 70명, 6000만원 * 고등학생 : 50만원 X 20명 = 1000만원 * 대학생 : 100만원 X 50명 = 5000만원
학술연구비	2018년 5월	40,000,000원	- 연구주제 : OOO에 관한 연구 * 지급대상 : △△△교수 외 3인 * 지급액 : 1000만원 X 4명 = 4000만원
합 계		**100,000,000원**	

【 서식 ⑥-4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 00. 00.	
이사정수	7 명	재적이사	7 명

1. 회의일자 : 20○○. 00. 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정관변경 (재산목록) 허가 신청(안)
- 제 2호 의안 :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안)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이사정수 7명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18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정관변경(재산목록) 허가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20○○년 11월 1일자로 홍길동 이사장님이 현금 4억원과 건물 2억원(감정평가) 총 6억원을 법인에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으로 기부하셨습니다. 마침 금리가 하락하여 내년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터라 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기부로 당분간 목적사업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현금 4억원을 모두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3억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1억원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안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3억원과 건물 2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정관의 재산목록도 붙임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사장 : 예금이자가 적어져 장학생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줄여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기부를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정관변경 허가 신청(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전원 : 없습니다.
- 이사장 : 그럼 정관변경 허가 신청(안)에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 이사장 : 제1안 “정관변경 허가 신청(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이사장 : 제2안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길동 이사장이 출연한 현금 4억원 중에서 1억원은 보통재산인 통장에 입금하여 20○○년도 목적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유인물과 같이 장학금으로 6천만원, 연구비로 4천만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 사용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갑 이사 :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우리법인에 기부를 해주신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등록금 및 물가상승으로 장학금 수혜학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 기부금을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면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부자의 의사도 저소득학생의 장학금과 어려운 여건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분에게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안을 통과 시켜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했으면 합니다.
- 이사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이사전원 : 없습니다.
- 이사장 : 그럼,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안에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 이사장 : 제2안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하생략

☞다른 이사회회의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⑦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알림 공문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단(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알림]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알림

1. 관련: ○○○법인-000(20○○.00.00)호
2. 귀 법인이 신청한 기부금 사용 승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사용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금액: 금 원(금00원)
   나. 승인금액: 금 원(금000원)
   다. 사용목적: 장학금 지급(또는 연구비 지원 등)
3. 승인된 기부금은 반드시 목적사업인 ○○○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당해 연도 사업결산서 제출 시 사용 실적을 따로 붙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서 1부. 끝.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20 . . .) 접수 ( )

우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비공개

【 서식 ⑦-1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서 】

교육지원과-　　(20◯◯.00.00.)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서

재단(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 ◯ ◯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의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20◯◯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아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 승인사항: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 신청금액: 금　　원
○ 승인금액: 금　　원
○ 사용목적: 장학금 지급
○ 이행사항
- 승인된 기부금은 반드시 위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당해 연도 사업결산 보고 시 기부금 사용 실적을 따로 붙여 제출하시기 바람

Q&A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 편입 승인 시 필요한 서류는?

  편입 사유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사용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근거 : 공익법 제11조③-3, 공익령 제18조의2

■ 신청서류

①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승인 신청 공문

②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승인 신청서

③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 편입사유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④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⑤ 보통재산편입 이후 2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금액은 100분의 10범위 이내에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신청하되,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보통재산편입 이후 2사업연도 분의 수지예산서

⑦ 이사회 회의록

⑧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서식 ⑧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1부.
3.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보통재산 편입 이후 2사업연도 분) 1부.
4. 수지예산서(보통재산 편입 이후 2사업연도 분)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서식 ⑧-1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단위 : 원)

재 산 명 세 서					
기 본 재 산 구 분			편입전 기본재산 ('00년0월0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금액】	편입예정재산	편입 후 기본재산 예정액 【(수량)금액】
구분	종목	종별 또는 소재지			
동산	현금	예금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채권				
	동산 소계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부동산	임야(林野)		3,000㎡(9,687,350)		3,000㎡(9,687,350)
	기 타				
	부동산 소계		3,000㎡(9,687,350)		3,000㎡(9,687,350)
총 계			209,687,350	100,000,000	109,687,350

【서식 ⑧-2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기본재산 현금 15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17년 OOO천원, 2018년 OOO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동안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연평균금 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30%이상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를 반드시 기재(30%이상 감소 소명자료 등 첨부)

※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서식 ⑧-3 -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 분)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1) 시행시기 :

(2) 장　　소 :

(3)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1) 인건비 :

(2) 운영비 :

(3) 기　타 :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⑧-4 - 세부사업계획서 】

세부사업계획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단위 : 천원)

일시(기간)	장 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 업 내 용

【 서식 ⑧-5 - 수지예산서 】

수지예산서

(보통재산 편입 이후 2사업연도 분)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회계연도 : 20○○년도

(단위 : 천원)

<table>
<tr><th colspan="3">수 입</th><th colspan="3">지 출</th></tr>
<tr><th colspan="2">구 분</th><th>금 액</th><th colspan="2">구 분</th><th>금 액</th></tr>
<tr><td rowspan="3">①회비</td><td>회비</td><td></td><td rowspan="3">①
경상비</td><td></td><td></td></tr>
<tr><td>임원
특별회비</td><td></td><td></td><td></td></tr>
<tr><td>소계</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②출연금</td><td>기본재산</td><td></td><td colspan="2">②법인세</td><td></td></tr>
<tr><td>보통재산</td><td></td><td rowspan="5">③목적
사업비</td><td></td><td></td></tr>
<tr><td>소계</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③과실소득</td><td rowspan="2"></td><td></td><td></td></tr>
<tr><td></td><td></td></tr>
<tr><td rowspan="3">④수익
사업</td><td></td><td></td><td></td><td>소계</td><td></td></tr>
<tr><td></td><td></td><td colspan="2" rowspan="3">④기본재산 편입액</td><td rowspan="3"></td></tr>
<tr><td></td><td></td></tr>
<tr><td>소계</td><td></td></tr>
<tr><td rowspan="2">⑤전기
이월액</td><td>이월금</td><td></td><td colspan="2" rowspan="3">⑤차기이월액</td><td></td></tr>
<tr><td>소계</td><td></td><td></td></tr>
<tr><td colspan="2">⑥법인세 환급액</td><td></td><td></td></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 colspan="2">합 계</td><td></td></tr>
</table>

【 서식 ⑧-6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 00. 00.	
이사정수	7 명	재적이사	7 명

1. 회의일자 : 20○○. 00. 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 1호 의안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계획(안)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이사정수 7명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년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계획(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현금 1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 현금 15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17년 ○○○천원, 2018년 ○○○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 ○○○이사 : 최근 금리의 하락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하 내용 설명 및 의결 진행]

・・・

- 이사장: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에 대해 더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 이사전원 : 없습니다.
– 이사장 : 그럼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 찬성합니다.
– 이사장 : 제1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편입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출석이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작성방법

– 회의록은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사유, 편입 금액 등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이사장 및 출석이사,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며 각 장마다 간인한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 (공익법 제10조①-2)

【서식 ⑨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기간 경과 소명서】

편입 기간 경과 소명서

1. 직전 편입 일시 :

2. 직전 편입 액수 :

3. 직전 편입 사유

※ 구비서류 : 직전 편입허가서 및 편입신고서 1부

20○○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⑩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승인 알림 공문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단(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알림] 기본재산 처분(보통재산으로 편입) 승인 알림

1. 관련: ○○○법인-000(20○○00.00)호
2. 귀 법인이 신청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 편입 승인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니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3. 재산처분이 완료된 후 재산변동에 따른 정관변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처분의 경우 아래 조항을 추가하여 알림

4.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내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1부. 끝.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20 . . .) 접수 ( )

우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비공개

2 사업관리

법인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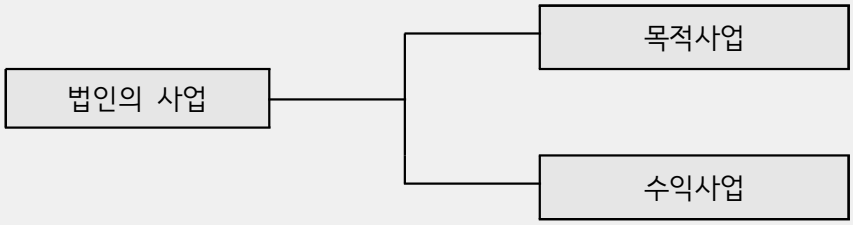

가. 목적사업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원, 학술진흥사업 및 시설운영 지원사업, 그리고 시상사업(학문과 장학유공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익법 제2조, 공익령 제2조①)

1) 목적사업의 운영

- 법인이 정관에 정하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공익령 제6조)
- 사업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여야 하고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익령 제3조 및 제5조)

2)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 의무

-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목적사업을 정당하게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증법에서 다음과 같은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에 사용 (상증법 제48조②)
  -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 상당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 (상증법 제48조②-3, 5, 상증령 제38조⑤, 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기준 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가 미사용 금액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10%)가 부과됨

☞직접공익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 급여(8천만원 이하), 공익목적 사업용 재산취득 금액, 회의경비, 사무실 임대료, 이사회 회의경비, 상장용지 구입 경비, 임원 등기비용, 최초 비품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15-상속증여-0463; 2015.05.06. 참조)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48조②-4, 5, 상증령 제38조④)

■ 대표적인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은 "장학금 등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3) 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사유 승인

■ 근거 : 상증법 제48조②, 상증령 제38조③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주무장관이 부득이한 지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면제된다.

■ 유형 : 무수익 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않고 수익용으로도 운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류

- 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사유 신청 공문
-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미달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부속서류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나.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익법 제4조③)

1) 수익사업의 운영

■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와 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만 인정한다.

☞ 예시 :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 (사단의 경우)출판업・민간자격증사업

☞ 골프장 조성, 학원 운영과 같이 영리법인처럼 적극적인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영리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3조③ 및 동법 시행령 제2조① 참조

☞ 예시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령 제2조① 1~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있어야 한다.

2) 수익사업(변경) 승인

■ 근거 : 공익법 제4조③, 공익령 제11조

■ 신청서류

- 수익사업(변경) 승인신청 공문
- 사업계획서
- 수지예산서(향후 3년간, 수익사업명세서 포함)
- 사업에 종사할 상근임직원 명부 및 인건비 내역서(해당법인에 한함)
- 행정관청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이를 받았거나 또는 이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수익사업개시 신고(법인세법 제110조)

: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 등록(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①)

: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유의사항

- 수익사업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임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시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 수익사업 승인 시 기존 직원 이외에 추가로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도 신청되어야 한다.

☞ 기본재산 처분 허가(임대), 수익사업 승인,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동시 신청 가능

-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후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익사업회계의 이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매년 결산서 제출 시 수익사업회계의 전입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공익법 제4조 ③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의 목적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4751)

■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질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873, 2006.07.11 대 서울특별시교육청)

■ [질의]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공익법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③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할 것임.

비영리 법인의 경우

■ 목적사업

- 법인의 사업은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 특히 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게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수익사업) 처분 허가 기준

■ 수익사업

- 법인의 재산 상태 분석
- 현재 공시이율 < 예상 임대수익률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등)사업 원칙적 불가
- 재산 운용상태 분석(임대수입 70% 이상을 목적사업회계로 전출)

Q&A

● 교육청 감독을 받는 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사업이 있습니다.

■ 근거 : 공익법 제2조, 공익령 제2조①

■ 유형

① 장학사업

- 장학지원 : 장학금(학자금) 지급, 저소득층 학생 교육복지사업 지원, 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학생 및 교직원 해외연수 지원 등
- 시설지원 : 교육기관 지원, 교육연구시설 지원, 학생기숙사 지원 등

② 학술진흥사업

- 연구지원 : 연구비 지급, 연구기관 운영 지원 등
- 시설지원 : 학술연구기관 설치·운영, 연구시설 지원 등

③ 시상사업

- 장학 또는 학술진흥과 관련된 사업 유공자에 대한 시상만 해당됨.

■ 유의사항

☞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사 취임 취소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목적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야 인정됩니다.
- 사업내용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기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업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정관으로 규정하는 사업에 '~ 등', '기타 필요한 사업' 과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사용은 배제됨.

- '교육(敎育)' 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분야가 아니므로 목적사업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수행할 사업으로, 「초·중등교육법」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서 수행할 사항임.

연구지원 모집 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
- 연구과제, 연구기간, 지원규모
- 자격
-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선정기준
- 결과물의 규격 또는 조건(구체적 ex. 원고지 OO매 이상)
- 연구비 지급 시기
- 연구결과의 권리 귀속
- 벌칙규정

부처별 목적사업 유형

- 보건복지부 : 자선 및 복지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체육, 관광 관련
- 교육부 : 장학 및 학술진흥 관련

☞ '학술'은 학문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기에 교육부 소관 학문 분야를 의미함

실태조사지적사례

■ **정관 외 사업 수행**

재단법인 □□재단에서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음반 보급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실시함.

☞ 공익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사업만 수행할 수 있음.

☞ 정관에 목적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함.

☞ 교육부 소관 사무에 한정하여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기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가할 수 있음. 추가 사업에 대한 추가 출연 등 재원 확보 방안 및 기존 목적사업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Q&A

●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목적사업 수행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수혜자 한정 금지와 같은 유의사항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 근거 : 공익령 제6조①·②, 상증법 제48조②, 상증령 제38조⑧

■ 유의사항 등

① 수혜자 한정 금지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② 목적사업 수행의 공정성 : 장학생 선발 및 연구비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은 이사회에서 마련한 세부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③ 목적사업의 무상성 :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의무 이행

-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 출연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기준 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10%)가 부과됨.

실태조사지적사례

■ **임의적 수혜자 한정**

재단법인 □□재단은 정관에 수혜자 한정 조항이 없는 법인임에도 장학금 수혜자를 임원의 자녀, 특정 기업체 사원 자녀로 한정함.

☞ 공익법인은 수혜자를 한정할 수 없음이 원칙임.

■ **장학생 임의 선발**

재단법인 □□재단은 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장학생 추천 요강에 장학생 선정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인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대상선정 및 지급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Q&A

●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정관에 수익사업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이란 정관에 구체적인 수익사업명을 명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②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재산으로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하고자 할 경우 : 건물 매입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고 이행결과 보고 후 정관변경과 기본재산 처분(임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본재산 처분 허가(임대), 수익사업 승인,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동시 신청 가능

③ 수익사업 승인 신청

- 정관변경과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을 경우 주무관청에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 승인받은 수익사업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수익사업 변경신청을 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변경승인 신청 대상 : 임대 부동산의 변동(부동산의 증감)

☞ 변경승인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임대료 증감, 승인된 인원수 범위 내의 상근임직원 변동, 임대 기간의 변동, 임차인의 변동

④ 수익사업 개시 신고 및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법인세법 제110조)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한 :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법인령 제154조①)

실태조사지적사례

■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재단법인 □□재단에서는 기본재산인 '갑'건물만 임대사업 승인을 받고 운영하던 중 '을'건물을 승인받지 않고 추가로 임대하다 적발됨.

☞ 수익사업은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익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재단법인 □□재단에서는 법인에서 모(母)대학 교수진이 참여한 영어능력검정사업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유상으로 시행하다가 적발됨.

☞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유상인 사업은 타당성이 없을 경우 허가되지 않음.

■ 목적사업용 건물을 예식장 임대 및 예식장 내 부대시설 이용권리 등을 임대하여 감독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사취임승인취소 및 형벌을 받음.

☞ 승인받지 않은 수익사업의 중단 등 시정지시를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음.

-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승인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익법 제19조①)
-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익법 제19조②)

Q&A

● 수익사업 수행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 근거 : 공익법 제12조, 공익령 제14조·제23조

■ 유의사항

①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 수익사업에 종사할 직원도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당초 승인받은 목적사업에 종사할 상근임직원 정수 1명(사무국장1)인 법인이 수익사업에 종사할 상근직원이 4명(사무원1, 기계장1, 경비2) 더 필요할 경우 상근임직원 수를 5명으로 신청(사무국장 1, 직원 4)

② 회계 구분 관리

•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예금이자 수입만 있는 법인도 회계 구분을 하여야 함.

③ 이익금의 목적사업 사용

• 수익사업회계 이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의 주된 목적이 목적사업 재원 마련임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필요 경비는 최소화하고 이익금은 최대한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도록 함.

④ 보증금의 별도 관리

•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

⑤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활동 억제

•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운용수준의 제한적인 수익활동으로 한정합니다.

☞ 골프장 조성, 학원설립·운영과 같이 영리법인처럼 적극적인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영리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 임대사업의 경우도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에 해로운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 등에게는 임대를 억제하여 공익법인의 품위를 유지토록 합니다.

Q&A

- 수익사업 승인 신청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수익사업의 목적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타당성 있는 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근거 : 공익령 제11조

■ 신청서류

① 수익사업(변경) 승인신청 공문

② 사업계획서

③ 수지예산서(수익사업명세서 포함)

④ 사업에 종사할 상근임직원 명부 및 인건비 내역서 : 해당법인에 한함

☞ 상황에 따라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과 병행 가능

⑤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⑥ 행정관청의 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이를 받았거나 또는 이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① - 수익사업 승인 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처분(임대)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익사업명세서 1부.
3. 수지예산서(향후 3년간, 수익사업명세서 포함) 1부.
4. 대차대조표 1부.
5. 사업에 종사할 임직원 명부 및 인건비 내역서 1부.
6. 이사회(총회) 회의록 1부. 끝.

※ 자격증 발급, 출판사업 등 관련법에 의거 별도의 허가(등록, 신고 등)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서식 ①-1 - 수익사업 계획서 】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부동산 임대업

○ 사업취지

본 재단법인의 정관 제○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000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함.

2. 사업대상 재산

○ 소재지

전라북도 ○○시 ○○○로 ○○빌딩

지상 0층 지하 0층

○ 수익사업 재산 명세서

○ 임대수익금, 수지예산서

1년간 임대료 수입금 예상액	378,048,000원
임대보증금 이자수익(연1.5%)	33,500,000원
관리비 수입금 예상액	165,384,000원
합 계	576,932,000원

연간 경비 예상액 : 368,614,813원

예상 순수 수익금 : 208,317,187원

산출근거 : 추정 손익계산서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사업에 종사할 별도의 인원 없음 또는 상근직원 00명

20○○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①-2 - 수익사업 명세서 】

수익사업 명세서

층별	임차인	임대면적		대장상 면적 (㎡)	보증금	임대료 (월임대료)	관리비 (월단가)	비고
		평수	㎡					
지하 1층	○○식당 이○○	101	333.88	505	30,000,000	32,400,000 (2,700,000)	7,272,000 (606,000)	
1층	○○○	138	456.20	441	80,000,000	53,520,000 (4,460,000)	11,592,000 (966,000)	
2층	○○INC	188	621.49	329	170,000,000	32,040,000 (2,670,000)	36,096,000 (3,008,000)	
3층	○○(주) 박 ○○	134	442.97	334	100,000,000	49,680,000 (4,140,000)	14,472,000 (1,206,000)	
4층 401	○○코리아	80	264.46	347	60,000,000	36,000,000 (3,000,000)	18,240,000 (1,520,000)	
4층 402	○○무역	79	261.15		35,000,000	44,880,000 (3,740,000)	18,960,000 (1,580,000)	
5층 501호	○○정보	60	198.34	334	45,000,000	28,080,000 (2,340,000)	12,240,000 (1,020,000)	
5층 502	○○엠택	92	304.13		70,000,000	40,608,000 (3,384,000)	18,768,000 (1,564,000)	
6층 601호	○○(주)	56	185.12	299	25,000,000	30,960,000 (2,580,000)	11,424,000 (952,000)	
6층 602	○○무역	80	264.46		50,000,000	29,880,000 (2,490,000)	16,320,000 (1,360,000)	
7층	재단사무실			100				
계				2,689	665,000,000	① 378,048,000	② 165,384,000	

※ 관리비 : 평당 단가 × 평수 × 12월

【 서식 ①-3 - 수지 예산서 】

수지 예산서

1) 수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임대료	364,287,000	366,284,000	385,400,000
관리비 수입	159,364,000	160,219,600	161,630,580
보증금 이자 (연1.5%)	33,500,000	33,400,000	33,500,000
:			
수입금 계①	557,151,000	559,903,600	580,530,580

2) 지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인건비(5명)	94,368,000	97,200,000	97,000,000
재산세 등 공과금	20,403,000	20,500,000	20,800,000
기타경비	253,843,813	255,804,200	258,204,200
:			
:			
지출금 계②	368,614,813	373,504,200	376,004,200

3) 재단전입금(목적사업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전입액 ③=①-②	188,536,187	186,399,400	204,526,380

【 서식 ①-4 - 부속 명세서 】

인건비 명세서

○○○재단

(단위 : 원)

연 도	금 액	산출내역	비고
2017	83,928,000	사무국장 2,500,000원×12개월 = 30,000,000 사무국 직원(4명) 1,123,500원×12개월×4명 = 53,928,000	
2018	86,445,600	사무국장 2,575,000원×12개월 = 30,900,000 사무국 직원(4명) 1,157,200원×12개월×4명 = 55,545,600	
2019	86,445,600		

세금과 공과 명세서

○○○재단

(단위 : 원)

연 도	금 액	산출내역	비고
2017	20,403,000	재산세 9,450,000 종합토지세 3,763,170 교통유발금 3,333,180 환경개선부담금 1,211,260 기타 2,645,390	
2018	20,500,000		
2019	20,800,000		

기타 경비 명세서

○○○재단

(단위 : 원)

과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식대외	
통신비		전화요금 00원×12월= 우편요금 00원×12월=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전력비		전기요금 00원×12월=	
감가상각비			
수선비		난방펌프수리, 승강기 수리, 보일러공사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전기안전관리, 전자경비료 등	
홍보비		웹호스팅비용외	
관리비		청소용역비외 00원*12월=	
:			
계			

※ 추정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순서대로 작성

【 서식 ①-5 - 사업에 종사할 상근임직원 명부 】

수익사업 상근 임직원 명부

• 건물 규모 : 지상 5층 건물

번호	직위(직책)	인원	업 무 내 용	월 인건비	비고
1	관리인	1명	o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	500,000원	
2	사무직	1명	o 일반 사무	650,000원	
계		2명		1,150,000원	

【 서식 ①-6 - 수익사업 승인 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 . .	
이사정수	7 명	재적이사	7 명

1. 회의일자 : 20○○. . .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6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 이사 1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 1호 의안 : 수익사업 승인 신청의 건
- 제 2호 의안 :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의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이사 정수 7명 중 과반수인 6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년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수익사업 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우리 재단의 기본재산은 예금 10억원과 최근에 기증받은 임대 가능한 ○○빌딩(연면적 5,000㎡ 지하3층 지상7층)이 있습니다. 연간 예금이자수입 4,000만원으로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고, 사무국장도 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빌딩을 수익사업에 운영할 경우 연간 2억 8백만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이사장 : 장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 이사 : 이사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막아 수익금이 가능한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사전원 : 갑 이사 의견에 이의 없이 찬동하다.
- 이사장 : 제1안 수익사업 승인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이사장 : 제2안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의 건(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현재 우리 재단에서 승인받은 상근임직원 정수는 사무국장 1명뿐입니다. 수익사업 실시에 따라 추가로 직원 4명(사무직 1명, 기계장 1명, 건물경비원 2명)을 채용하여 건물유지, 보수 및 장학회 일반 사무를 전임하고자 상근직원 정수 승인을 유급 5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약 월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을 이사 : 성실한 직원을 채용하여 건물유지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업무도 늘어난 만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급화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확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사전원 :을 이사 의견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이사장 : 제2안 상근직원 정수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이사장 : 사무국장은 오늘 가결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의 제○회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하생략

☞다른 이사회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② - 수익사업 승인 공문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자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경유)

제목 수익사업 승인

1. 관련: ○○○법인-000(20○○.00.00)호
2. 귀 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승인된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우리 청에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익사업 승인서 1부. 끝.

※ 수익사업은 법인 정관 제4조제2항에 수익사업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없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정관변경을 이행하고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20 . . .)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비공개		

【 서식 ②-1 - 수익사업 승인서 】

수 익 사 업 승 인 서

교육지원과-0000(20○○.00.00.)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 귀하

재(사)단법인 ○○○○장학회의 수익사업 승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20○○년 월 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아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1. 승인사항

가. 사 업 명: 부동산 임대사업
나. 사업목적: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
다. 임대물건: ○○시 ○○구 ○○로 ○○○(토지: 1,845.5㎡, 건물: 588.4㎡)

2. 승인조건

가. 다른 법령에 의거 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또는 신고나 등록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필하여야 한다.
나.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승인을 취소한다.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다.
라. 임대물건 등 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행사항

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후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익사업회계의 이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관관리

가. 법인의 정관

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며 법률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40조, 제43조)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 공익법 제3조, 공익령 제3조①)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기타 비영리(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 작성(검토) 시 유의사항

- 정관의 내용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법률에서 정한 감독청의 허가, 승인 등의 사항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다.
- 목적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애매모호한 문구(“기타...” , “...등”)나 영리추구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
- 타 법령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정관의 변경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변경 요건

<table>
<tr><td>사단
법인</td><td>• 민법 제42조
• 총회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
• 주무관청의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는 목적의 변경도 가능하나(통설),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벗어난 목적 변경은 불가함</td></tr>
<tr><td rowspan="2">재단
법인</td><td>• 민법 제45조, 제46조
•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 단,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칭이나 소재지의 변경이 가능하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이나 기타 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다.</td></tr>
<tr><td>● 제한적 정관변경 유형
<table>
<tr><td rowspan="2">명칭과
소재지 변경</td><td>명칭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td></tr>
<tr><td>명칭 변경은 설립자의 변경 의사 표시가 있거나, 설립 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td></tr>
<tr><td rowspan="2">목적 및 기타
규정 변경</td><td>목적 변경은 설립자의 의사 표시가 있거나, 당초 설립목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제한.</td></tr>
<tr><td>사업변경은 재단 설립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며,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을 추가 출연하여야 함.(공익령 제6조 제2항)</td></tr>
</table></td></tr>
</table>

가) 기본재산 증자(감자)에 따른 정관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6">기부에 따른 증자</td><td>현금</td><td colspan="2">허가</td><td></td></tr>
<tr><td>상장주식</td><td colspan="2">기부받은 시점 전·후 각 2개월 동안 평균종가액, 3개년 배당실적</td><td></td></tr>
<tr><td rowspan="2">비상장 주식</td><td>배당수익 有</td><td>허가 : 상증법 제54조 및 제56조 외부회계법인 또는 세무전문가의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td><td rowspan="2"></td></tr>
<tr><td>배당수익 無</td><td>·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시 배당계획이 포함된 회의록 제출
· 3년 이내 주식처분계획서 제출 후 타당성 검토 후 허가 *</td></tr>
<tr><td>부동산</td><td colspan="2">기부 당시 시가로 증자, 근저당권 설정 없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확보</td><td></td></tr>
<tr><td rowspan="2">채권</td><td colspan="2">장기사채 : BBB-이상, 공시이율 이상</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단기사채 : A3-이상, 공시이율 이상</td></tr>
<tr><td>보험, 펀드, 기타상품</td><td colspan="2">타당성 검토 후 허가 **</td><td></td></tr>
<tr><td>유상감자</td><td colspan="3">유상감자 처분허가에 따른 정관변경</td><td></td></tr>
<tr><td>무상감자</td><td colspan="3">· 무상감자의 경우 : 원칙적 불허가
· 예외적 허가 : 법원판결 등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고 불가피한 상황</td><td></td></tr>
<tr><td>분할·합병</td><td colspan="3">·허가</td><td></td></tr>
</table>

구 분	내용	비고
필요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 신·구 대비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신 정관 • 정관변경 원인 사실의 증명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 등 ▶ 기본재산 변경 시 - 처분 및 취득 재산목록(증자 포함) -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 - 기부승낙서 - 기부자 인감증명서(부동산 경우) - 재산평가 증빙서류 ▹ 주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또는 감정평가서 1개 ▹ 채권-시가 - 연간발생수익조서 - 기타 부속서류 등 •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출연된 재산을 3년 이내 직접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부과(상증법 제48조 제2항)
※ ** 이사회 회의록에 구체적인 손실보전 확약 방안을 명시할 경우 제한적 허용
✔ 기본재산의 목록과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을 해야 함
✔ 기본재산 목록은 변경되었으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등기하지 않음

나) 목적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구 분	내용
허가 기준	❍ 목적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재산을 추가 출연하여야 함 ❍ 타부처 목적사업 추가 · 목적사업 우수 수행 실적 + **해당 부처 기본재산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 금액 이상의 출연** · **추가 출연재산이 기존 기본재산의 30%이하(**타 주무관청의 목적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 ·주무관청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 여부를 판단하여 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
필요 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 신·구 대비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신 정관 • 재원확보방안(추가 출연 등) • 목적사업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서 •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수익사업 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구 분	내용
허가기준	• 재단 - 부동산임대업 • 사단 - **출판업, 민간자격증사업 등 허가***
필요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 신·구 대비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신 정관 • 향후 3개년간 손익계산서,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 수익사업명세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명세서 •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학술 및 사단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허가

라) 임원 관련 정관변경

구 분	내용
임원정수	이사 : 5~15인, 감사 : 2인을 권장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가감 가능
필요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 신·구 대비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신 정관 •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당연직 이사장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연직 이사장은 허가하지 않음이 원칙 (법무부 법령질의회신 결과(2015.11.5.))

마) 사무소 소재지 변경

구 분	내용
허가기준	❍ 원칙 - 소재지는 번지까지 정확히 표현하되, □□빌딩 △△호는 기재 생략 - 정관상 최소 행정구역('서울특별시)으로 기재토록 권장 ❍ 간소화: 정관상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신청 생략 ※ 사무실 이전 후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로 사무소 소재지 보고 (승인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후 7일 이내 등기 완료 보고)
필요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 신·구 대비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신 정관 • 정관변경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소유권 입증서류 ☞ 법인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는 생략한다. ☞ 원 임대자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법인에게 재임대한 경우 상기 3가지 서류 모두 첨부 •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바) 기타 정관변경 신청(ex. 법령조문변경 등)

구 분	내용
필요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 신·구 대비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신 정관 • 정관변경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정관변경의 효력

■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조②, 제54조)

Q&A

●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변경은 법률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서 변경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거 : 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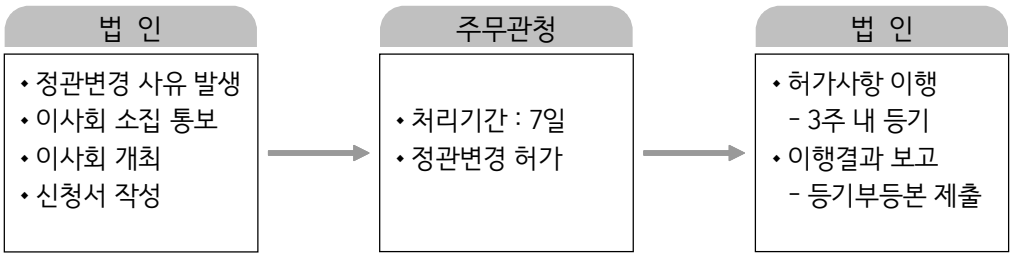

■ 처리기관 :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

① 제1조 내지 제3조(목적, 명칭, 소재지)의 변경:
관할 교육지원청 → 전라북도교육청

② 제5조 이하의 변경 : 관할 교육지원청

정관변경 허가 시 유의사항

1. 정관변경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2. 이사 수는 반드시 정수로 정한다. "5~15명", "13명 이하" 등으로 정할 수 없다.
3. 관할 교육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서 이관 시 법인의 일반현황과 사업실적 등 필요한 사항과 예·결산 서류를 첨부하여 이관토록 한다.
   ☞ 직전 미이행된 사항과 재산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완료된 후 이관토록 한다.
4. 소재지 변경 허가 전에 현지 실태조사나 건물소유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법인의 사무실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민원 사례

■ 정관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허가신청서류가 반려되었음.
☞ 일반적인 의결사항과 달리 정관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정관 중 "정관의 변경"이라는 조항에 정관변경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사 정수 2/3이상의 찬성"으로 되어있음.
☞ 이사 정수가 10명인 경우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변경이 가능함.
☞ 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가 분할되어 면적과 지번이 변동되는 경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실태조사지적사례

■ **정관 개정 소홀(행정처분사항), Ⅳ.공익법인 지도·감독 참고)**

재단법인 □□재단에서는 20××년~20××년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예금을 채권으로 처분하였으나 20××년 ×월 ×일 현재까지 정관 변경을 하지 않음

☞ 재산 처분 후 즉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변경을 하여야 함

【 서식 ① -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증자재산목록 1부
4. 명의이전된 증빙서(통장사본 잔고증명 등)
☞ 부동산의 경우 정관변경 허가 후에 명의 이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
5. 기부승낙서(기부에 의한 정관변경일 경우) 1부
6. 기부자 인감증명서(부동산일 경우) 1부
7. 재산평가 증빙서류 1부
8. 연간발생수익조서 1부
9. 이사회 회의록 1부
10. 신정관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 . .)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0 담당자 이메일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①-1 -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 변경 사유서

① 기부금 편입에 따른 기본재산 증자

본 재단(사단)법인의 기부금 금000,000원(기부자 : ooo)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② 기존사업을 더 확대하는 사업변경인 경우

현행 정관에서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부터 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③ 설립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명칭 변경의 경우

본 재단(사단)은 설립자 홍길동의 이름을 따서 재단명칭을 '홍길동 장학재단'으로 붙였으나, 설립자의 호와 이름이 함께 들어 있는 재단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재단 설립자의 사후라도 설립취지 및 장학이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자 재단명칭 **'활빈 홍길동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④ 소재지 변경인 경우

가. 지번→지번: 본 재단(사단)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oo구 ooo로 ooo에서 ooo시 ooo구 ooo로 ooo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나. 지번→최소행정구역: 본 재단(사단) 법인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로 변경함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재(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①-2 - 정관 신·구 대비표】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현 행 (구)	개 정 (신)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보조와 시설공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보조와 시설공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이라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활빈 홍길동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시 ○○○로 ○○○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시 ○○○로 ○○○에 둔다. 나.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에 둔다.

【서식 ①-3 - 증자재산 목록】

증 자 재 산 목 록

법인명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재 산 명	종 별	수 량	취득원인	전권리자	등기년월일 및 번호	평가액
현금	현금		기부금	000		000원
			보통재산 편입			000원
			토지매각			000원
부동산	토지	00㎡	기부	000		000원
	건물	00㎡	기부	000		000원
주식	주식	00주	기부	000		000원

【서식 ①-4 - 이사회 회의록 예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9. 12. 10.	
이사정수	7 명	재적이사	7 명

1. 회의일자 : 20○○. 01. 01.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에 관한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이사정수 7명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16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정관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

20 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작성방법

- 회의록은 안건의 주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장), 감사 2명이 기명날인하며 각 장마다 간인한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한다.(공익법 제10조 ①-2)

【 서식 ② –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재원확보방안(추가 출연 등) 1부
4. 목적사업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서 각 1부
5.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6. 신정관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 . .)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63)0000-0000 전송 (063)0000-0000 담당자 이메일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③ - 정관변경(수익사업)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수익사업 변경(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익사업 변경(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 대비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향후 3년, 수익사업명세서 포함) 1부
5. 신정관 1부
6.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 .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0 담당자 이메일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③-1 - 수익사업 계획서 】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 부동산 임대업

○ 사업취지

본 재단법인의 정관 제○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함.

2. 사업대상 재산

○ 소재지

전라북도 ○○시 ○○○로 ○○○ ○○빌딩

지상 0층 지하 0층

○ 수익사업 재산 명세서

○ 임대수익금, 수지예산서

1년간 임대료 수입금 예상액	378,048,000원
임대보증금 이자수익(연1.5%)	33,500,000원
관리비 수입금 예상액	165,384,000원
합 계	576,932,000원

연간 경비 예상액 : 368,614,813원

예상 순수 수익금 : 208,317,187원

산출근거 : 추정 손익계산서(별도첨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사업에 종사할 별도의 인원 없음 또는 상근직원 00명

○○○○년 ○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③-2 - 수익사업 명세서 】

수익사업 명세서

층별	임차인	임대면적		대장상 면적(㎡)	보증금	임대료 (월임대료)	관리비 (월단가)	비고
		평수	㎡					
지하 1층	○○식당 이○○	101	333.88	505	30,000,000	32,400,000 (2,700,000)	7,272,000 (606,000)	
1층	○○○	138	456.20	441	80,000,000	53,520,000 (4,460,000)	11,592,000 (966,000)	
2층	○○INC	188	621.49	329	170,000,000	32,040,000 (2,670,000)	36,096,000 (3,008,000)	
3층	○○(주) 박 ○○	134	442.97	334	100,000,000	49,680,000 (4,140,000)	14,472,000 (1,206,000)	
4층 401	○○코리아	80	264.46	347	60,000,000	36,000,000 (3,000,000)	18,240,000 (1,520,000)	
4층 402	○○무역	79	261.15		35,000,000	44,880,000 (3,740,000)	18,960,000 (1,580,000)	
5층 501호	○○정보기술	60	198.34	334	45,000,000	28,080,000 (2,340,000)	12,240,000 (1,020,000)	
5층 502	○○엠택	92	304.13		70,000,000	40,608,000 (3,384,000)	18,768,000 (1,564,000)	
6층 601호	○○(주)	56	185.12	299	25,000,000	30,960,000 (2,580,000)	11,424,000 (952,000)	
6층 602	○○무역	80	264.46		50,000,000	29,880,000 (2,490,000)	16,320,000 (1,360,000)	
7층	재단사무실			100				
계				2,689	665,000,000	① 378,048,000	② 165,384,000	

※ 관리비 : 평당 단가 × 평수 × 12월

【 서식 ③-3 - 수지 예산서 】

수지 예산서

1) 수입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수입 임대료	364,287,000	366,284,000	385,400,000
관리비 수입	159,364,000	160,219,600	161,630,580
보증금 이자(연1.5%)	33,500,000	33,400,000	33,500,000
:			
수입금 계①	557,151,000	559,903,600	580,530,580

2) 지출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인건비(5명)	94,368,000	97,200,000	97,000,000
재산세 등 공과금	20,403,000	20,500,000	20,800,000
기타경비	253,843,813	255,804,200	258,204,200
:			
:			
지출금 계②	368,614,813	373,504,200	376,004,200

3) 재단전입금(목적사업비)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사업비 전입액 ③=①-②	188,536,187	186,399,400	204,526,380

【 서식 ③-4 - 사업에 종사할 상근임직원 명부 】

수익사업 상근 임직원 명부

•건물 규모 : 지상 5층 건물

번호	직위(직책)	인원	업 무 내 용	월 인건비	비고
1	관리인	1명	o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	500,000원	
2	사무직	1명	o 일반 사무	650,000원	
계		2명		1,150,000원	

【 서식 ④ – 정관변경(임원정수)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임원정수 증(감)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임원정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 대비표 1부
3. 신정관 1부
4.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 .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담당자 이메일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⑤ - 정관변경(소재지)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 대비표 1부
3. 신정관 1부
4.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끝.
5. 정관변경 원인사실의 증명서류 및 기타부속서류
(ex.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사용승낙서, 소유권입증서류 등)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 .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담당자 이메일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⑤-1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전라북도 ○시 ○구 ○○로

2. 소유자(전대자) : 홍 길 동

3. 사용면적 :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20○○.01.01 ~ 20○○.12.31. (○년간)

나. 사용조건 : 무상(또는 유상) 등

20○○년 월 일

소유자(전대자) : (인)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무상 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4 임원관리

가. 법인의 임원

공익법인의 임원은 출연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고 당해 법인의 설립 취지에 따라 계획된 공익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임원은 공익사업의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공익법 제5조)

1) 임원의 제한규정 (공익법 제5조, 공익령 제12조)

- 임원의 취임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임원의 정수 : 5~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이사 수는 반드시 정수(定數)로 정한다. "9~12명", "13명 이하" 등으로 정할 수 없다.

☞ 임원 수가 많을 경우 이사회 개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원의 임기 :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은 가능하다.

☞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여 임원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

- 국적의 제한 :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특수관계자 :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고, 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 중 특수관계자가 되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때에는 2월 이내에 1/5 이내로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 결원의 보충 : 2월 이내에 보충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단,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정관상 임기로 권장

- 임원취임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익법 제14조②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기관)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민법 제58조, 제59조)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조)

■ 이사의 대표권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민법 제59조①)

■ 이사의 대표권 제한

-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60조)

-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제한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대표권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민법 제59조①)

■ 이사의 업무집행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민법 제58조①)

■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61조)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65조)

3) 감사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만 있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민법 제67조, 공익법 제10조)

■ 감사의 직무(민법 제67조, 공익법 제10조)

-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 이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 요구
- 이사회에 출석 발언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내용을 검토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업무 및 재산상 황에 대한 의견진술
- 업무 및 재산 상황의 감사결과 불법,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 전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요구
-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 범위 이외의 행위 등을 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법원에 직무집행 유지(留止) 청구

☞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익법 제19조②-4)

■ 주무관청의 감사추천(공익법 제5조⑧, 공익령 제13조)

- 주무관청은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추천사유

–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시 감사추천 의사를 법인에 통지한 경우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

- 감사 추천 기준

– 법률과 회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추천방법

– 공익법인의 후보자 선정 추천 또는 직권추천 가능

4)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예 : 당사자의 취·해임 결의 시, 법인과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시)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공익법 제7조)

■ 이사장 (공익법 제6조)

-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 소집 (공익법 제8조, 제10조①-5)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공익법인을 감사한 결과 불법·부당한 점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자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의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이사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소집통지

☞ 단,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 (공익법 제8조④)

- 신청 사유가 발생한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신청 사유 : 이사회의 소집권자(이사장)가 궐위된 때 또는 소집권자(이사장)의 이사회 소집 기피로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때

☞ 이 경우 정관에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공익법 제9조)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결의 불가**
-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임시이사의 선임 (민법 제63조)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에 주무관청이나 감독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임시이사는 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이다.

☞ 정식이사가 임명되면 임시이사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 총회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68조)
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민법 제69조, 제70조)

■ 총회의 의의

-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폐지할 수 없음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함(민법 제68조)

■ 총회의 개회

- 통상(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소집 (민법 제69조)
- 임시총회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 회원의 1/5 이상이 소집 요구한 때 (민법 제70조)

☞ 단, 총 회원의 1/5 이상이라는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 총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모든 총회 구성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그 증거자료를 법인에 보관(이메일, 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등)

■ 총회의 결의

-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72조)

- 총회의 의결정족수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 (민법 제75조)
- 회원의 결의권 :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 행사 가능 (민법 제73조②)

☞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 제73조③)

나. 임원관리의 승인사항

1) 임원의 취임 승인

■ 근거 : 공익법 제5조②, 공익령 제7조

■ 처리과정

승인신청 및 승인 ➡ 등기 ➡ 이행결과 보고

☞ 감사는 승인 후 등기 절차 불요

■ 신청서류

- 임원취임승인신청 공문
- 임원 신·구 대비표
- 이력서
-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예정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둘중 하나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결격사유 조회를 위함)
- 인감증명서
- 해임과 관련된 증빙서류

☞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첨부

☞ 사임서는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만 첨부(임기만료로 인한 해임은 제출하지 않음)

☞ 당해 임원이 사망 또는 당연직일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임원의 성명, 임기, 선·해임의 이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표시

☞ 단, 정관에 당연직 임원으로 규정된 자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인사발령 서류 사본을 첨부 (당연직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필요시 겸직동의서(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수포함))
- 기타 주무관청이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이사의 임기는 감독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며, 소급하여 승인할 수 없다.

- 당연직 임원이라 하더라도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임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해임된 이사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예시 : 2017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당연직 임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작성하는 것은 공익법 규정에 맞지 않음.

☞ 이사의 소속기관에 겸직동의서 요청 시 겸직 기간을 '취임승인일로부터 ○년'으로 신청하도록 함.

- 신원조사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결격사유조회로 갈음한다.
- 결격사유조회는 2013.7.1.이후 ①결격사유조회(근거: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와 ②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근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로 구분됨

☞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및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이나 공익령 제7조에 의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생략 가능하다.

2) 임원의 연임 승인

■ 근거 : 공익령 제7조

■ 처리과정 :

승인신청 및 승인 ➡ 등기 ➡ 이행결과 보고

☞ 감사는 승인 후 절차 불요

■ 신청서류

- 임원연임 승인신청서
- 임원 신·구 대비표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필요시 겸직동의서(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교수포함))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임원 연임의 이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명시)
- 기타 주무관청이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임원 연임 시 이력서와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는 첨부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임기만료 전에 차기 임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 임원의 임기에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연임 임원 취임 대상자 모두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3)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 근거 : 공익법 제14조②

■ 처리과정

승인취소 사유발생 ➡ 청문 ➡ 취임승인 취소 ➡ 취소사항 이행

☞ 취소사항 이행 : 후임이사 선임 및 등기

■ 유의사항

• 주무관청은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에 따라 결원된 이사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 이사회 소집승인

■ 근거 : 공익법 제8조④, 공익령 제15조

■ 처리과정 :

승인신청 및 승인 ➡ 이사회 개최 ➡ 결과보고

■ 신청서류

•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사회 개회 예정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서류

• 기타 주무관청이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상근임직원의 정수승인

■ 근거 : 공익법 제5조⑨, 공익령 제14조

■ 처리과정

승인신청 ➡ 승인 ➡ 직원채용

■ 신청서류

- 상근직원 정수승인신청 공문
- 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표
-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 인건비 지급규정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기타 주무관청이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상근임직원의 정수승인은 목적사업비 집행 가능 여부, 법인 재산 상황을 감안하여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을 검토하여 승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결산서 검토 시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여부, 인건비 집행 내역, 목적사업 수행실적을 확인하여 과다한 인건비 지급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상근임직원의 인건비는 운용소득의 20%이내 범위여야 하며, 1인당 8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

– 다음의 법인이 임원·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 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법인세법 제29조①-4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①-8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법인

임원취임 등기 시 구비서류(등기소에 확인 바람)

① 등기신청서
② 감독청의 취임승인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④ 인사발령 입증 서류(당연직 이사의 경우)
⑤ 인감증명서(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⑥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Q&A

-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취임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임원취임 승인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 공문, 임원 신·구 대비표, 이력서(신임), 취임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결격사유 조회), 인감증명서, 겸직동의서(해당자), 이사회 회의록 입니다. 다만, 연임일 경우에는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A

- 임원 중 한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익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임원은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하지만 사임 후 결원이 된 임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2개월 내에 보충 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Q&A

- 법인 임원취임의 적절한 신청 시기는?

  공익법 제5조에 의거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임원 취임 시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민원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임원의 임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원취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A

- 임원취임 등기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등기신청서 ②감독청의 취임승인서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④인사발령 입증 서류(당연직 이사의 경우) ⑤인감증명서 ⑥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만 있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Q&A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 이사의 취임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이사로 취임할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 외국인 신원조회를 의뢰(국내 거주 시)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번역된 대사관의 증명서 등), 당사자의 국적지에서 증명하는 범죄사실증명서(번역·공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A

- 공익법인의 이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요?

  공익법 제9조③에"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이사나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 결의도 불가합니다.

임원 취·해임 승인 신청 안내

※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확인하여 **임기 시작 한달 전에 승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 취임(연임) 관련 서류 -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해주세요.

연번	구비서류	설명	신임	연임	서식
1	임원 취임 승인 공문		○	○	서식①
2	임원 신·구 대비표		○	○	서식②
3	임원 이력서		○	X	
4	임원 취임 승낙서		○	○	서식③
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서식⑤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제출	○	X	서식④ 서식⑤
6	가족관계증명서	결격사유 조회용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 필요	○	X	
7	인감증명서	회의록 기명날인 확인 시 필요	○	○	
8	겸직허가서(해당자만)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교수, 교사 포함) 2. 당연직, 신임, 연임 포함	·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사립학교법 55조(복무)	○	○	
9	인사발령서류(해당자만)	정관에 당연직 임원으로 규정된 자	○	○	
10	재단 : 이사회회의록 사단 : 이사회회의록 및 총회회의록	임원의 취·해임 사유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기재	○	○	
11	사임서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제출함. 임기만료로 인한 사임은 제출하지 않음.	○	○	서식⑥

※ 주의사항 안내

1. 임원 개인별로 특수관계자이면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제출, **둘 중 하나만 제출함.**
2.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제출하지 않음.
3. 주민등록번호로 결격사유를 조회하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에 별표(*) 처리하지 말 것.**
4.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법인 직인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할 것.

【 서식 ① - 임원취임 승인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임원취임(연임)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본 법인의 임원 취임(연임)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원 신·구 대비표 1부.
2. 임원 이력서 1부.
3. 임원의 취임(연임) 승낙서 1부.
4.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1부.
5. 임원 가족관계 증명서 1부.
6. 임원 인감증명서 1부.
7. 겸직 동의서(해당자만) 1부.
8. 이사회(총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10.10.)접수 ( )
우00000 전라북도 ○○시 ○○로
전화(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서식 ② - 임원 신·구 대비표 】

임원 신·구 대비표

법인명 : ○○○재단

구			신			
직 위	성명	임 기	직 위	성명	임 기	비 고
이사장	진OO	2012.03.15.~2016.03.14.	이사장	진OO	2016.03.15.~2020.03.14.	연임
이 사	박OO	2012.03.15.~2016.03.14.	이 사	박OO	2016.03.15.~2020.03.14.	연임
이 사	나OO	2014.09.05.~2018.08.29.	이 사	정OO	2016.03.15.~2018.08.29.	전임자 잔임기간
이 사	조OO	2012.09.11.~2016.08.29.	이 사	조OO	2012.09.11.~2016.08.29.	
이 사	윤OO	2012.09.11.~2016.08.29.	이 사	윤OO	2012.09.11.~2016.08.29.	
감 사	조OO	2014.03.15.~2016.03.14.	감 사	진OO	2016.03.15.~2018.03.14.	신임
감 사	강OO	2016.03.15.~2018.03.14.	감 사	강OO	2016.03.15.~2018.03.14.	

※ 작성시 참고 사항

◉ 임기만료 전 취임신청의 경우

- 임기란은 20○○년 월 부터 20○○년 월 까지로 기재

◉ 임기만료 후 취임신청의 경우

- 임기란은 이사는 '취임승인일로부터 4년', 감사는 '취임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기재

◉ 임원 임기 만료일을 사전에 확인하여 임기 시작 한달 전에 승인 신청할 것

◉ (구)에 현재 교육청에서 승인된 임원 전부를 기재하고 (신)에 승인 후 임원 전부를 기재

【 서식 ③ - 취임승낙서 】

취 임 승 낙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은 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이사장 ○○○ 귀하

【 서식 ④ -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table>
<tr><td rowspan="4">출연자</td><td colspan="2">출연자가 자연인</td><td colspan="2">출연자</td></tr>
<tr><td colspan="2">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법인</td><td colspan="2">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포함</td></tr>
<tr><td colspan="2">출연자가 기타의 법인</td><td colspan="2">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td></tr>
<tr><td colspan="4">※ 이하에서 「출연자」는 위의 모든자를 포함함
※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td></tr>
<tr><td rowspan="11">출연자 또는 이사의 친족</td><td rowspan="4">부계</td><td>6촌 이내의 부계혈족</td><td rowspan="11">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td></tr>
<tr><td>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td></tr>
<tr><td>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td></tr>
<tr><td>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td></tr>
<tr><td rowspan="2">모계</td><td>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td></tr>
<tr><td>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td></tr>
<tr><td rowspan="2">처족</td><td>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td></tr>
<tr><td>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td></tr>
<tr><td rowspan="2">입양</td><td>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td></tr>
<tr><td>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td></tr>
<tr><td>사용인</td><td colspan="3">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td></tr>
<tr><td></td><td colspan="3">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td></tr>
<tr><td>생계의존</td><td colspan="3">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td></tr>
<tr><td></td><td colspan="3">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td></tr>
<tr><td>기타</td><td colspan="3">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td></tr>
</table>

20○○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⑤ - 특수관계내용설명서 】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20○○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⑥ - 사임서 】

사 임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은 ○○○○○○○○ 사유로 인하여 이사(감사)의 직을 면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이사(감사)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이사장 ○○○ 귀하

【 서식 ⑦ - 이사회 소집 승인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사회 소집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 20○○년 0월 00일
2. 이사회 장소 : (주)00 16층 회의실
3. 심의안건
   가. 궐위된 이사장 보선(20○○. 00. 00. 잔여임기 만료)

붙임 1.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1부.
2. 사유서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 .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 서식 ⑧ - 공익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

홍길동재단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1. 이사회 일시 : 20○○년 0월 00일(금) 14:00
2. 이사회 장소 : (주)00 16층 회의실
3. 이사회 심의 안건 : 신임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사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 ○○○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⑨ - 사유서 】

사 유 서

이사회 소집권자인 재단 이사장 000님이 202○년 0월 0일 지병으로 별세하심에 따라 재단 정관 제30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이사회소집 찬동결의서와 함께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 ○○○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⑩ - 이사회소집 찬동결의서 】

이사회소집 찬동결의서

이사회 소집권자인 000재단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지병으로 20○○년 ○월 ○일 별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아래 임원들의 찬동으로 요구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의 개회 예정일시 : 20○○년 ○월 ○일
- 장소 : (주)○○○ 16층 회의실
- 안건 :

20○○년 월 일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5 회계관리

가. 회계의 기초

1) 법인의 회계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익법 제12조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공익령 제22조, 공익령 제23조①)

가) 회계의 구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거두어들이는 수치를 예측하고 사업의 적정한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전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계

■ 목적사업회계

- 기타의 수익과 비용
- 주로 수익사업회계로부터 기부(전입)된 가용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규모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

■ 공통손익금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공통손익금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
- 법인세법 제113조①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①)
- 법인세법 제113조①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⑥)

①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②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포함)는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목적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나) 서류의 관리

■ 회계장부와 통장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회계의 종류와 중요성

공익법인과 관련된 회계의 종류를 구분해 본다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적으로 회계라 하면 재무회계를 기본적으로 말한다. 관리회계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보통 예산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회계는 재무회계를 바탕으로 하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을 가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 회계의 종류

재 무 회 계	관 리 회 계	세 무 회 계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등	• 예산 편성 • 예산대장 관리	• 법인세신고서 • 소득세원천이행신고 • 출연재산제명세서 제출

■ 회계의 중요성

회계의 기능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는 당해 법인의 임원이다. 법인의 재산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또한 주무관청에서는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산(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업실적 보고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무당국에서는 수익사업에 발생된 이익(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의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계자료를 보고 받기를 원할 것이다.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 공익법인 회계와 영리법인 회계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에서는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결과 얻은 과실금(이자수익, 배당금,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법인세법과 공익법에서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수령한 과실금이 법인세법 제3조에 해당되면 수익사업으로 경리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에 따른 비용은 수익사업으로 경리한다. 이와는 달리 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수익과 비용)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구분 경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경리는 비영리(공익)법인만이 갖는 비영리법인회계의 특징인 것이다. 법인세법에서 구분경리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집행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분경리의 노하우

공익법인에서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수행상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에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수익사업으로 구분 경리하는 열거주의를 적용한다. 거꾸로 설명하면 열거되지 않은 수익은 비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수익사업 회계의 범위(법인세법 제3조)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2. 이자·할인액 및 이익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
3.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의 처분 수입
6.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구분경리 사례

1. 공통자산과 부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 (서이 46012-10295, 03.2.10)

2. 구분이 명확한 공통손익
   수익사업과 목적사업별로 그 발생 원천이 분명한 익금과 손금 그 원천별로 각 사업에 귀속,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포함)는 근로의 제공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목적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는 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처리

3.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4.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매출액)으로 안분
   •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 금액으로 안분
     ☞겸직 직원의 급여는 건물사용면적에 따라 안분 가능
     (국심 96중4116,97.5.1)

4)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 부기(장부기록)라는 것은 모든 법인의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계산, 기록, 정리하여 그 결과를 명백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부기의 종류로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 단식부기

•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고 현금의 수입 지출 및 타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를 기록하는 단순한 계산방식이다.
• 예를 들면, 현금출납부, 가계부 등을 들 수 있다.

■ 복식부기

•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의 금액으로 분류하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원인과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복식부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다.

나. 재무보고

1) 재무보고의 이해 관계자

회계의 기능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 관계자라 하면 법인의 임원, 주무관청, 세무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임원

• 공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임원은 결산을 승인하는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상태, 경영성과 등에 대해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

•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정관과 법률에 따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무관청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세무서

•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로 삼기 때문에 세무 신고 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2) 예산과 결산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2조②, 공익령 제19조)

가) 사업계획 및 예산

■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총괄표

– 사업계획 총괄표는 전년도의 예산서와 현년도(사업계획년도)의 예산서의 사업내용을 비교하는 총괄표이다.

– 총괄표를 작성하는 기본 자료는 공익법인의 전년도 예산서와 현년도(사업계획년도) 예산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공익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산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 예산은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70/100 이상을 직접 목적사업비에 편성한다.(상증령 제38조⑤)
  ☞ 상증령 개정으로 2022사업연도부터는 80/100 이상 지출
-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는 직접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하여 편성한다.
-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공익법 제12조③)
- 예산은 전년도 결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편성한다.

나) 사업실적 및 결산

■ 법인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실적 총괄표

– 사업실적 총괄표는 1년간의 사업 결산을 완료하고 그 실적을 총괄하는 표라고 할 수 있다.

– 총괄표를 작성하는 기본 자료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 사업실적(관련 증빙서 사본 첨부) 및 수지결산서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감사의 자체감사 보고서
- 기부금 사용내역서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총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상증법 제50조, 상증령 제43조)

-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관련 서류(잔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재산의 증감사유 기재서류
-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최종 명부

■ 결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결산자료는 재무제표규칙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하고 결산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산실적대비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추가할 수 있다.
-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한다.
- 사업실적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단법인의 경우 연구결과물이나 세미나 등 관련 자료 첨부하여 제출한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 회계의 구분

* 민법상 회계 구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정관상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 예산 및 결산

* 근거 : 교육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예·결산서류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류 공시의무(상증법 제50조의 3)

자산총액 5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4.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제목	관련법령	내용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령 제41조	• 결산에 관한 서류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국세청 홈텍스)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증법 제51조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 10년간 보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상증법 제50조	•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 대상 : 총자산가액 5억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제50조 제3항	• 외부감사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대상 :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상증법 제50조의2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상증법 제50조의3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의2, 소득세법 제160조의3	•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국세청(www.nts.go.kr)→성실신고지원→공익법인→「세무안내책자」 참고

【 서식 ① - 사업실적 및 결산서 서식 】

재단법인 ○○장학재단

수신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20○○년도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련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붙임 1. 20○○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부
2. 재산 현황 및 보유증명서(원본) 각 1부
4. 임원 현황 1부
5. 재무상태표 1부
6. 손익계산서 1부
7. 목적사업비 지급명세서 1부
9. 기부금 사용내역서(해당법인) 1부
10.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부
14. 20○○년도 공익법인 사업 현황 1부
15.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외부회계감사서 1부
18. 회원 명부(사단법인) 1부. 끝.

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인)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201○.10.10.)접수 ( )
우00000 전라북도 00시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063)000-0000 전송 (063)000-0000 담당자 이메일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실적총괄표의 의미와 작성요령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 인 명 : 재단(사단)법인 (印) (설립일 : 년 월 일)

2. 목적사업 : 1) 2) 3)

3. 수익사업 : 1) 2)

4. 일반현황

설립자	홍길동	사무소				전 화		
대표자	홍길동	소재지				팩 스		
회원 총수	명	임원 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 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 명 무급 : 명 직원 유급 : 명 무급 : 명	
기본재산 (단위 : 원)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계	보통재산 (단위 : 원)		

5. 수입·지출현황(총괄)

수입				지출			
구 분		수입액(원)		구 분		지출액(원)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① 회 비				경상비	①인건비		
기부수입 (출연금)	②재산증자기부				②운영비		
	③목적사업기부				소 계		
	소 계			③ 퇴직적립금			
고유목적 사업준비 금전입금	④수익사업 전입금			목적 사업비	※ 정관상 목적사업별로 기재 요망		
	⑤과실소득				④ 장학금		
기타수입	⑥특별이익				⑤ 기타목적사업		
	⑦기 타				소 계		
	소 계			⑥ 기본재산 편입액			
전 기 이월액	⑧목적사업 지급준비금			⑦ 기타지출			
				차 기 이월액	⑧목적사업 준비금		
	⑨이월잉여금				⑨이월잉여금		
	⑩기 타				⑩기 타		
	소 계				소 계		
합 계				합 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수입 100 = 지출 100)

※ 법인세환급액(원), 법인세(원)

가. 수익사업소득 대비 수입·지출현황

수입				지출			
구분		수입액(원)		구분		지출액(원)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회비				경상비	인건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금	수익사업전입금				퇴직적립금		
					과실소득		
	과실소득				소계		
기타수입	이자수입			목적사업비			
	특별수입						
					소계		
				기본재산 편입액			
전기이월액	목적사업지급준비금			차기이월액	목적사업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기타				기타		
	소계				소계		
합계				합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수입 100 = 지출 100)
※ 목적사업 집행에 직접 쓰인 인건비와 운영비는 목적사업비에, 그 외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경상비에 계상
※ 기부금 수입·지출이 없는 법인은 수입·지출현황(총괄)과 동일하므로 생략

나. 기부금 사용 현황

수입				지출			
구분		수입액(원)		구분		지출액(원)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출연금	목적사업 기부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재산증자 기부			차기이월액	목적사업지급준비금		
	기타 기부				이월잉여금		
					기타		
					소계		
합계				합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기부금 수입·지출이 없는 법인은 생략

❋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요령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은 현년도와 전년도 결산서(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정관상 소재지를 기재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를 기재
- 임원현원 :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직원 정수 : 감독청의 정수 승인을 받은 상근직원수 기재
- 기본재산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정관상의 금액을 기재
- 보통재산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총액을 기재

2. 수입현황

① **회비**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 수입액 기재

- 기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나 기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②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받은 기부금액 기재

③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 지원 조건으로 기부받은 경우 기본재산 편입이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금액 기재

☞ 기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④ **수익사업 전입금** : 과실소득 외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 기재

⑤ **과실소득** : 자산 운용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 ①~⑤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⑥ **특별이익** : 보통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비유동자산(고정자산)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매각한 대금 기재

⑦ **기타**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 ①~⑥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전기이월액** : 목적·수익 전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비 사용 가능 금액을 다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⑧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비지급준비금의 미사용액으로 전기에서 이월 받은 금액 기재

⑨ **이월잉여금** : 전기 이월액 중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잉여금 금액 기재
⑩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지출현황

- 경상비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기재
  ① **인건비**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기재하되, 미승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② **운영비** : 사업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공과금, 등기비용 등)
  ③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 대한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기재
-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된 금액만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④ **장학금** : 정관상 목적사업 중 장학금 지급액만 기재
  ⑤ **기타목적사업** : 정관상 장학금 이외에 기타사업을 기재하되,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한 경비,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구입 금액도 포함하여 기재, 사업을 항목별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별지로 기재
  ⑥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사유(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⑦ **기타지출** : ①~⑥항 이외에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차기이월금 : 목적·수익 전체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중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다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⑧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설정된 고유목적사업비지급준비금 미사용 잔액으로 차기 이월하는 금액 기재
  ⑨ **이월잉여금** :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⑩ **기타** : 차기로 이월하여 상환할 금액 등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

4. 기 타

- 기부금이 없는 법인 : 수입·지출현황(총괄)만 작성
- 기부금이 있는 법인 : 수입·지출현황(총괄)과 가. 수익사업소득 대비 수입·지출현황 및 나. 기부금 사용현황을 모두 작성
-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전입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

❋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예시

2018년도 사업실적총괄표

1. 법 인 명 : 홍길동장학재단 (설립일 : 2000년 6월 21일)
2. 목적사업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비 지원
3. 수익사업 :
4. 일반현황

설립자	홍길동	소재지		00시 00구 00로 00		전화	062-000-0000
대표자	홍길동					팩스	062-000-0000
회원총수	0 명	임원현황	정수	이사 10명, 감사 2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명, 무급 1명 직원 유급 1명, 무급 1명 (승인일 2000.6.21)	
			현원	이사 10명, 감사 2명			

기본재산	현 금	주 식	채 권	부동산	계	보통재산	467,195
(단위 : 천원)	1,500,000				1,500,000	(단위 : 천원)	

5. 수입·지출현황

수 입 (단위 : 원)				지 출 (단위 : 원)			
구 분		수입액		구 분		지출액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①회 비				경상비	①인건비	4,650,000	4,730,000
기부수입	②재산증자기부	21,800,000	27,940,000		②운영비	9,940,990	6,092,170
	③목적사업기부	4,800,000	6,994,229		소계	14,590,990	10,822,170
	소 계	26,600,000	34,934,229	③퇴직적립금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 입 금	④수익사업전입금	-	-	④법인세		-	-
	⑤과실소득	102,680,646	104,580,620	목적사업비	⑤장학금	81,000,000	68,600,000
기타수입	⑥특별이익	-	-		⑥기타목적사업	545,000	509,000
	⑦기타	-	-		소 계	81,000,000	69,109,000
	소 계	-	-	⑦기본재산편입액		21,800,000	27,940,000
전 기 이 월 액	⑧목적사업지급준비금	83,112,603	51,468,924	⑧기타지출		-	-
	⑨이월잉여금	-	-	차 기 이월액	⑨목적사업지급준비금	94,457,259	83,112,603
	⑩기 타	-	-		⑩이월잉여금	-	-
	소 계	83,112,603	51,468,924		⑪기 타	-	-
⑪법인세환급금					소 계	94,457,259	83,112,603
합 계		212,393,249	190,983,773	합 계		212,393,249	190,983,280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맞아야 함

※ 보통재산 : 금 467,194,959원

[고유목적준사업준비금(금94,457,259원), 재산증자기부적립금(372,737,700원)]

재 산 현 황

법 인 명:

Ⅰ. 기본재산

○ 총 괄

구 분	예 금	주 식	채권	보험	부동산	합 계
금액(원)						

○ 세부목록

구 분	종 별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정기예금		"(금융기관명)계좌번호 등" 기재
	소 계		
주 식			
	소 계		
채 권			
	소 계		
부 동 산	토 지		
	건 물		
	소 계		
합 계			

※ 증빙서류: 기본재산 증빙서류 (발급기준: 사업연도말)
예금(정기예금 포함)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 채권증명서, 보험 등)

Ⅱ. 보통재산

○ 총 괄

구 분	예 금	주 식	채 권	부동산	합 계
금액(원)					

○ 세부목록

구 분	종 별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정기예금		"(금융기관명)계좌번호"기재
	소 계		
주 식			
	소 계		
채 권			
	소 계		
부 동 산	토 지		
	건 물		
	소 계		
합 계			

※ 붙 임: 기본재산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발급기준: 사업연도말)
예금(정기예금 포함)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 채권증명서, 보험 등)

재무상태표

당기 20○○년 01월 0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년 01월 0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홍길동장학재단(종합)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비 고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967,194,959		1,934,050,303	
(1)당 좌 자 산		1,967,194,959		1,934,050,303	
1. 현금 및 보통예금	60,278,979		64,442,033		
2. 정기예·적금	1,892,557,700		1,855,000,000		
3. 선 납 세 금	14,358,280		14,608,270		
(2)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1,872,737,700		1,850,937,700	
(1) 투 자 자 산		1,872,737,700	0	1,850,937,700	
1. 수익사업출자금※	1,872,737,700		1,850,937,700		
(2) 유 형 자 산	0		0		
(3) 무 형 자 산	0		0		
(4)기 타 유 동 자 산	0		0		
자 산 총 계		1,967,194,959		1,934,050,303	
(부 채)					
Ⅰ. 유 동 부 채		0		0	
1. 외 상 매 입 금	0		0		
2. 부 가 세 예 수 금	0		0		
3. 미 지 급 법 인 세	0		0		
Ⅱ. 비 유 동 부 채		94,457,259		83,112,603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94,457,259		83,112,603		
부 채 총 계		94,457,259		83,112,603	
(자 본)					
Ⅰ. 자 본 금		3,745,475,400		3,701,875,400	
1. 기 본 재 산	1,500,000,000		1,500,000,000		
2. 장학금기금출연금	372,737,700		350,937,700		
3. 목적출자자본금※	1,872,737,700		1,850,937,700		
Ⅱ. 이 익 잉 여 금		0		0	
1. 이 익 잉 여 금 (당 기 순 이 익) 당기: 0원 전기: 0원	0		0		
자 본 총 계		1,872,737,700		1,850,937,700	
부채와 자본총계		1,967,194,959		1,934,050,303	

※ 목적사업 자산부문 수익사업출자금과 수익사업 자본부문 목적출자자본금은 목적· 수익 사업 간상호 비망계정으로 재단 전체적으로 중복되므로 합계에서는 제외한다.

손익계산서

당기 20○○년 01월 0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년 01월 0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법인명 : 홍길동장학재단(종합) (단위 : 원)

과 목	당 기		전 기		비 고
	금 액		금 액		
Ⅰ. 매출액(수입)		0		0	
Ⅱ. 매출원가		0		0	
Ⅲ. 매출총이익		0		0	
Ⅲ.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4,590,990		10,882,170	
1. 인 건 비	4,650,000		4,730,000		
2. 통신 및 공과금	293,510		363,480		
3. 행사비	3,368,500		1,659,990		
4. 회의비	3,105,320		1,441,900		
5. 사무용품비	3,173,660		2,626,800		
Ⅳ. 영업손실		14,590,990		10,822,170	
Ⅴ. 영업외 수익		198,816,636		184,511,790	
1. 이자수입	102,680,646		104,580,620		
2. 기부금수입	4,800,000		6,994,229		
3. 목적사업준비금수입	91,335,990		72,936,941		
Ⅵ. 영업외 비용		184,225,646		173,689,620	
1. 장 학 금	81,000,000		68,600,000		
2. 장학지도사업비	545,000		509,00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금	102,680,646		104,580,620		
Ⅶ. 법인세차감전순이익		0	173,689,620	0	
Ⅷ. 법인세		0		0	
Ⅸ. 당기순이익		0		0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2018.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5호, 2017. 12. 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 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⑤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⑥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⑦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⑧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②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순자산'이란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공익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⑥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3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에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제14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5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된다.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제17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8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0조(기본순자산)

①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②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보통순자산)

①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한다.
②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제22조(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 성과
2.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② 운영성과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①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②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사업수익
나. 사업비용
다. 사업이익(손실)
라. 사업외수익
마. 사업외비용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아.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운영이익(손실)

제25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한다.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④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제27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4.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⑥ 기타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한다.

제29조(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한다.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으로 인식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2조(법인세비용)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한다.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②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③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공익목적사업비용이나 기타사업비용 중 관련이 되는 것)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③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한다.

④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⑥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 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 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 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한다.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어떤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주석

제40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이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기재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43조(주석기재방법)

주석기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3.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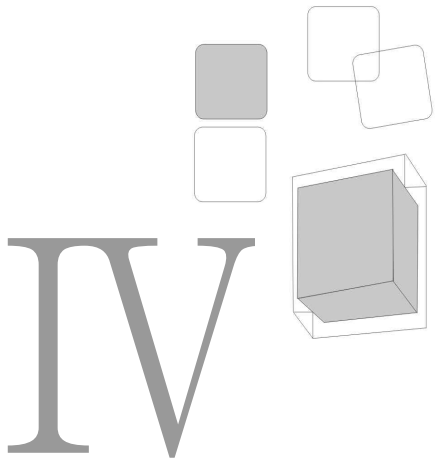

Ⅳ

법인 지도·감독

1. 행정처분 기준
2. 민원사무처리 기준
3. 관련 법령

Ⅳ 공익법인 지도·감독

설립허가 후 교육청의 지도·감독 및 위법·부당 운영에 대한 주요 제재 사항

-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법인 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37조, 교육규칙 제8조, 공익법 제14조① 및 제17조, 공익령 제27조)

1 행정처분 기준

가. 목적

-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도감독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의 형평성 제고 및 신뢰성을 확보
- 행정처분의 기준 고시로 법인업무의 위법 부당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인들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법인운영에 도움

나. 처분기준

1) 처분의 일반기준

- 행정상·재정상·신분상 구분 및 병과(竝課) 처분이 가능하다.
-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이사취임승인 취소는 본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법인의 시정 노력이 없을 경우에 적용한다.
-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실수로 인한 법령위반 사례는 경고나 주의 처분하여 법인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 처분기준이 ‘고발’ 인 경우로서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에는 고발 전에 시정지시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에 앞서 시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기본재산 임의처분의 처분기준은 ‘경고’ 의 경우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하며, 보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
- 본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심히 중대한 경우와 이전의 처분을 감안하여 가중 처분이 가능하다.
- 본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감 처분이 가능하다.
- 본 행정처분 기준 외에도 민법, 공익법 등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 법령에 따라 적의 처분한다.

2) 지적사항별 처분기준

분 야	지적사항	행정상 처분 기준			비고
		고의	중과실	경과실	
정관 및 규정 관리	1. 정관 변경사항 개정 소홀	경고	경고	주의	재정상 신분상 처분 포함
	2. 장학금 지급 등 제규정 제정 및 운영 소홀	경고	주의	주의	
	3. 정관변경 등기 보고 소홀	경고	경고	주의	
목적사업 관리	1. 목적사업이외의 사업수행	경고	경고	경고	상동
	2. 목적사업 수행실적 부진	경고	경고	주의	
	3. 목적사업의 무상성 및 수혜자 한정 금지 위반	경고	경고	주의	
	4.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 제출	고발	경고	주의	
수익사업 관리	1. 미승인 수익사업 영위	고발	고발	경고	상동
	2. 수익사업 변경 승인 소홀	고발	고발	경고	
	3. 수익 사업 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정지 명령 불이행	고발	고발	경고	
	4. 수익의 목적사업 이외 사용	고발	고발	경고	
재산관리	1. 기본재산 처분(무단 임의처분 포함)				재정상 신분상 처분 포함
	1-1. 기본재산의 50%이상 손실	고발	고발	고발	
	1-2. 기본재산의 50%미만 손실하고 손실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고발	고발	경고	

분 야	지적사항	행정상 처분 기준			비고
		고의	중과실	경과실	
	1-3. 기본재산의 50%미만 손실하고 손실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고발	경고	경고	
	1-4. 기본재산의 손실없는 임의 처분	고발	경고	경고	
	1-5. 기본재산 담보(장기 차입) 허가조건 미이행	고발	고발	경고	
	2. 결산상 잉여금 기본재산 미전입 또는 익년도 목적사업 미사용	고발	고발	경고	
	3. 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 소홀	경고	경고	주의	
기부금관리	1. 미승인 기부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경고	경고	주의	상동
	2. 기부금 사용 부적정	경고	경고	주의	
임원관리	1. 임원관리 및 이사회 운영 소홀	경고	경고	주의	상동
상근임직원 관리	1. 정수승인 소홀	경고	경고	주의	상동
	2. 상근직원 보수 및 퇴직적립금 등 소홀	경고	경고	주의	
사무소 운영	1. 사무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경고	경고	주의	상동
회계관리	1.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 관리 소홀	경고	경고	주의	상동
	2. 회계장부 등 증빙자료 관리 소홀	경고	경고	주의	
	3. 결산서 허위작성 보고	고발	고발	경고	
	4. 수입금 누락 및 비용 과다 계상	경고	경고	주의	
	5. 이사에 대한 부당한 보수 등 지급	경고	경고	주의	
	6. 기타 회계처리 부적정	경고	경고	주의	
법인운영 및 기타	1. 감사 및 검사 등의 기피 또는 거부	고발	고발	고발	상동
	2. 회의록 허위작성	고발	고발	경고	
	3. 회의록 미비치	경고	경고	주의	
	4. 사원명부 및 재산목록 비치 관리 소홀	경고	경고	주의	

다. 시행일 : 본 공익법인 행정처분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지도 · 점검 사례

분 야	위반·부당 사항	조 치 사 항	근거
법인사무실	◦ 위치 임의 변경	- 정관변경 승인신청 ⇒ 변경허가 ⇒ 변경등기 ⇒ 결과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민법 제42조 제45조
임원 취임	◦ 임원 임기 부적정 ◦ 특수관계자 과다 ◦ 결원 미보충 ◦임원취임결격자 임용 ◦ 이사취임 승인 취소 미실시	- 이사 : 5인이상 15인 이하로 하되 4년 초과 불가(단, 연임가능) - 감사 : 2인, 2년 초과 불가(단, 연임가능) - 임원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취임 승인 -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감사 취임 불가 - 결원 발생 시 2월 이내 보충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 원칙적으로 소급승인 불가(임기만료 1개월 전에 차기 임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 임원의 임기에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지도·감독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을 비롯한 소관업무 관련공무원이 임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운영(교육과학기술부 권고사항) -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사취임 승인 취소	공익법 제5조 제14조 공익령 제7조 제12조 제26조
상근임직원	◦ 임의 임용 및 보수 임의 지급	- 임의 지급한 보수는 환수토록 엄격한 조치 (상금임직원 승인신청 서류) · 상근임직원 정수승인신청서 · 법인기구도표 ·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 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공익법 제5조⑨ 공익령 제14조

부 문 별	위법·부당사례	조 치 사 항	관련규정
회계 및 예·결산	◦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 미구분	–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되, 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어느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사업의 수지 상황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공익법 제12조① 공익령 제22조①② 제23조①②③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예산 및 결산서 미제출	– 예산서 :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2022년분은 2021.11.30.한 제출)	
	◦ 예산 및 결산내역 부실	– 결산서 :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2022년분은 2013.2.말일까지 제출)	공익법 제12조②
	◦ 고유목적사업비 70%미만 편성 및 집행 (2022년부터 80%)	–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 ·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70% 이상을 직접 목적사업비에 편성 (2022년부터 80%) ·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는 직접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하여 편성 · 명목예산 편성 금지 ·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 목적(지정)기부금은 감독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 사용 – 결산시 주의 사항 · 결산자료는 재무제표규칙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수지)계산서로 하고 결산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산실적대비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추가 가능	공익령 제19조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④ 법인세법 제29조

부 문 별	위법·부당사례	조 치 사 항	관련규정
회계 및 예·결산	◦ 과목별 예산액 초과 집행	·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차년도로 이월하여 반드시 차기 이사회 시 추가경정예산서의 수입항목에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 · 잉여금처리계획서는 반드시 작성 - 세출예산집행은 당해과목 예산액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부족한 경우 반드시 추경 후 집행	
	◦ 운용소득의 사용 기준액 산출 부적정	-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액 산출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고육목적사업준비금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처분평가로 발생한 소득) -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70%(2022년부터 80%)	상증세령 제38조④
	◦ 수입금 및 예비비 추경없이 직접 사용	- 수입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예비비는 직접 사용하지 말고, 해당과목으로 추경 조치한 후 집행	
	◦ 목적사업비외 부당 집행	- 공익부문이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분야에는 법인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예·결산서 접수 후 미검토 방치	- 예·결산서 검토 후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해 법인에 시정 지시	
	◦ 지출증빙서 작성하지 않고 간이세금 계산서만으로 약식 지출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증빙서 작성 결재 후 집행토록 지도 - 각종 대금 계좌 입금 유도하여 투명성 제고	공익령 제16조①-2
	◦ 목적외 운영비로 과다집행	- 우선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지도 (운영경비 최소화 유도)	
	◦ 이월금 및 불용액 과다 발생	-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극대화 도모	
	◦ 기부금 임의 집행	- 승인신청 ⇒ 사용승인⇒ 집행(이행) ⇒ 연도말 결산	

부 문 별	위법·부당사례	조 치 사 항	관련규정
제 장부	◦ 장부 작성 및 비치의무 미이행 ◦ 문서관리 소홀	-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 후 10년간 비치(면제 대상은 제외) - 중요문서는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	상증세법 제51조 상증세령 제44조
기 본 재 산 및 보통재산 관리	◦ 기본재산 임의 처분(전환), 용도변경 등 재산관리 소홀 ◦ 기본재산 임의 증자 ◦ 수익용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미이행 ◦ 보통재산 과다보유 ◦ 기본재산 증자 의지 부족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혼합 관리	- 대체재산이 없는 재산의 감축은 일체 불허 - 재산관리의 안전성 확보(주식투자 등 위험성을 내포한 부문에 투자하기 위한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손실발생을 대비 손실액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연대책임이행각서 징구 후 승인) - 증자한 경우에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기본재산변동이 있을 경우 감독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출연재산 매각한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종료일로부터 당해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이상, 2년 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과다 보유한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조치(기본재산의 30% 이상) - 법인이 각별한 관심 및 의지를 갖고 기본재산을 증자토록 지도 - 별도 관리토록 지도	공익법 제11조 제17조 제19조 공익령 제16조 제24조 제17조 ③④ 상증세령 제38조⑥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운영 및 회의록 작성 소홀	-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대체 불가 - 약식으로 기술하지 말고 자세히 기록 - 이사의 서명 날인	공익법 제9조
법인정관	◦ 당연직 이사의 임기 부적정 (4년초과사례)	- 정관상 당연직 이사라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기에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한 후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민법 제40조
기타	◦ 이사 및 감사 임무 미숙지	- 이사 및 감사의 직무 및 이사회의 기능에 대하여 해당자에게 숙지토록 홍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해당자에게 숙지)	민법 제40조 제58조.제61조 제65조,제67조 공익법제5조⑧ 제10조,제19조 공익령 제13조

【 서식 ① - 공익법인 주의·경고 처분 서식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경유)
제목 20○○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처분 알림

1. 근거 : 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3항
2. 귀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사무관리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적당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조치결과(계획)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명: ○○장학회
   나. 점검일: 20○○년 월 일
   다. 처분사항: 주의 2건
   라. 지적사항: 임원관리소홀, 기부금관리소홀
   마. 조치결과(계획) 제출: 20○○년 월 일
   바. 제출양식

법인명	지적내용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

   사. 문의사항: 전라북도□□교육지원청 ◇◇◇ 주무관(☎063-***-****)

붙임 1. 20○○년도 ○○장학회 지도점검 결과 1부.
2. 공익법인 주의문 1부. 끝.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20 .00.00.) 접수 ( )
우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비공개

【 서식 ①-1 - 주의문 서식 】

주 의 문

소 속 : ○○장학회
직 급 : 이 사 장
성 명 :

귀하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공여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대표자로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20○○년 월 일에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이 공익법인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하고, 연임의 경우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취임 신청을 하여 임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20◇◇.◇◇.◇.자로 감사 △△△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20◇◇.◇◇.◇자로 감사 연임신청을 하여 임원의 공백이 생기고 법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주무관청의 사용승인 후 집행하여야 하나,
동 법인은 기부금 사용 신청 없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기부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이는 귀 법인 이사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 엄중히 **“주의”** 조치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 서식 ② - 공익법인 고발 처분 서식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수신자 □□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임의처분에 따른 ○○공익법인 고발 조치

1. 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제19조
2. 전라북도교육발전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3. ○○공익법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을 무단 임의처분을 한 정황을 발견하여 고발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인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고발내용	고발근거
			기본재산 무단 처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제19조

붙임 1. 위임장 1부.
2. 고발장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 팀장 과장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 (20 .00.00.) 접수 ( )
우 /
전화 (063)000-0000 전송 (063)000-0000 / 비공개

【 서식 ②-1 - 위임장 】

위 임 장

○ 소　　속 :
○ 성　　명 :
○ 직　　급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공무원에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장 귀하

【 서식 ②-2 - 고발장 】

고 발 장

(고발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발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피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3. 고발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 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발이유

※ 고발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발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발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고발인 _____ (인)*

제출인 _____ (인)

※ 고발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발인 란에는 고발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귀중

※ 고발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직장 :	직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 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발장 제출 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발장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증거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원사무처리 기준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관 및 기간			근 거 법 령
	접수(경유)	처리(협의)	계	
법인설립허가신청	도교육청	도교육청	14일	민법 제32조 법률 제4조, 제5조
법인 해산 신고	도교육청	도교육청	10일	민법 제86조
정관변경허가신청 (목적, 명칭, 소재지)	도교육청	도교육청	7일	민법 제42조, 제45조 시행령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그외 나머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7일	민법 제42조, 제45조 시행령 제10조
임원의 취임 승인 신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5일	민법 제42조, 제45조 법률 제5조 시행령 제7조
이사회소집승인신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5일	법률 제8조 시행령 제15조
상근임직원의정수 승인신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5일	법 제5조 시행령 제14조
수익사업 승인 신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5일	법 제4조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5일	민법 42조, 제45조 시행령 제17조

3 관련 법령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때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나 “수익사업의 시정 및 정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음.

나.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공익법 제16조)

■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의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②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⑤ 공익법 또는 공익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⑥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승인 취소 (공익법 제14조②)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익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③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라. 수익사업의 시정 및 정지 (공익법 제14조③)

■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②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마. 공익법인(이사, 감사, 법인)에 대한 벌칙조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법 제19조①·③)

■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한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한 경우
■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임에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장기차입한 경우
■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도 않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도 않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법 제19조②·③)

■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을 첨부서류와 함께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한 경우
■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 이사나 감사가 상기 1), 2)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1), 2)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법 제19조③)

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민법 제97조)

- 등기를 해태한 경우
- 재산목록 또는 사원(회원)명부 작성·비치·기재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기재 한 경우
- 주무관청 및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경우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 총회의 의사록 작성·작성방법·비치 의무 위반
-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변제한 경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인이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 및 청산 중의 파산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경우

세무서 통보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상증법 제48조①단서,②,③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48조⑦, 상증령 제41조③)

공익법인 행정처분 절차

교육지원청이 공익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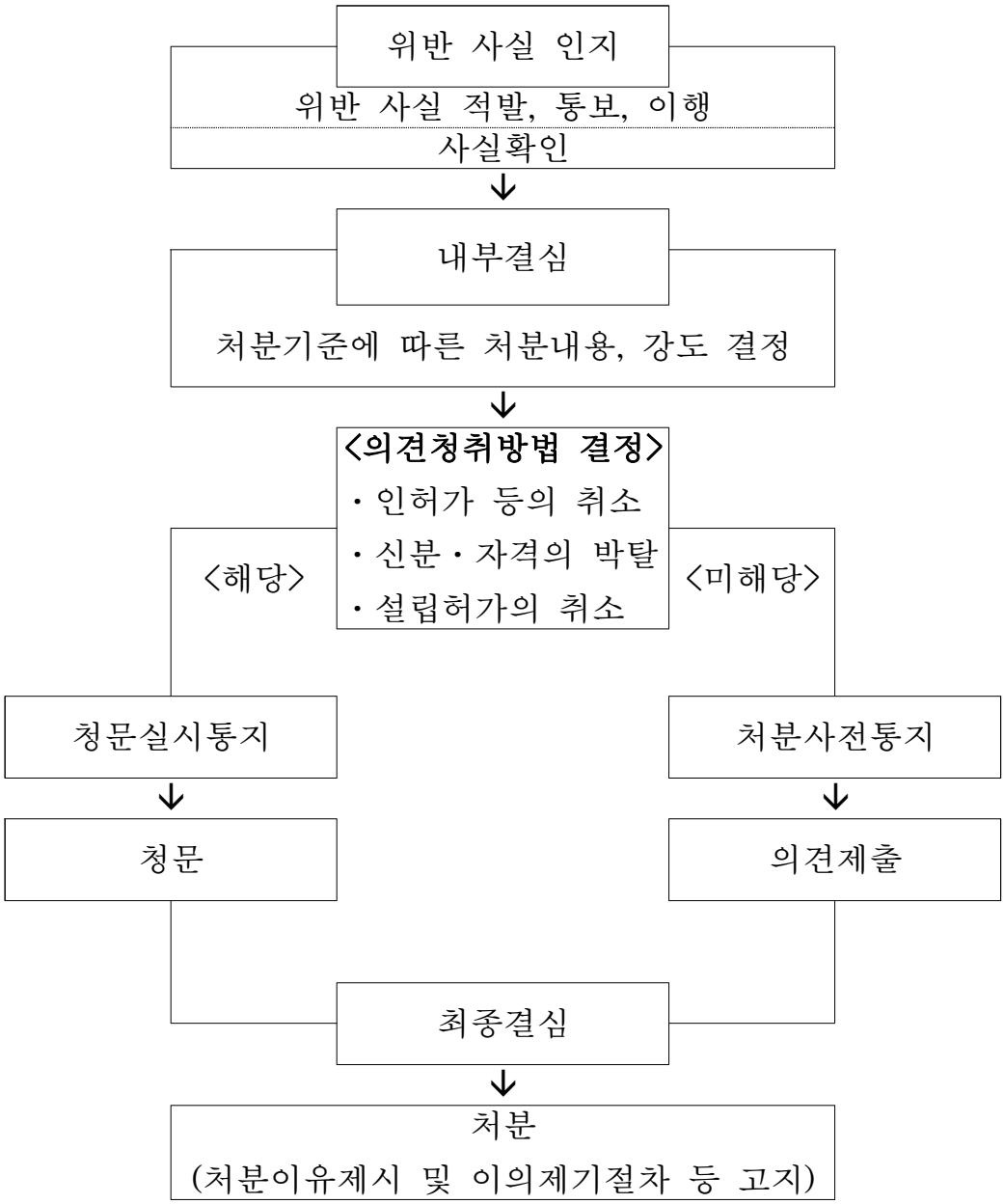

【 서식 ①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 colspan="2">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7"></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7"></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전자우편주소</td><td colspan="3"></td><td>팩스번호</td><td></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5">년 월 일까지</td></tr>
</table>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 서식 ②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③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청문실시</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일시</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시간)</td><td>장소</td><td></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td></tr>
<tr><td>성명</td><td colspan="4"></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 서식 ④ - 청문조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8>

청 문 조 서

<table>
<tr><td>제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문주재자</td><td>소 속</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td><td>성명(명칭)</td><td colspan="2">주소</td><td>출석여부</td><td>불출석한 경우의 사유</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2">참석한
행정청의 직원</td><td>직위</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성명</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청문의
일시 및 장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문공개</td><td>공개 여부</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이유</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당사자등의
진술내용</td><td>요지</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제출된 증거</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증거조사</td><td>요지</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증거</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기타</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⑤ - 청문조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4.7.28>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⑥ - 행정처분명령서 】

행 정 처 분 명 령 서

법 인 명			
소 재 지			
대 표 자		**법인번호**	
처분이유			
근거법령			
행정처분내용			
의견청취결과	청문 출석 및 의견서 제출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행정심판의 청구는 전라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기간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청구 또는 제기하지 못합니다.		

20○○년 월 일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익법인 과태료 부과절차

※ 교육지원청이 공익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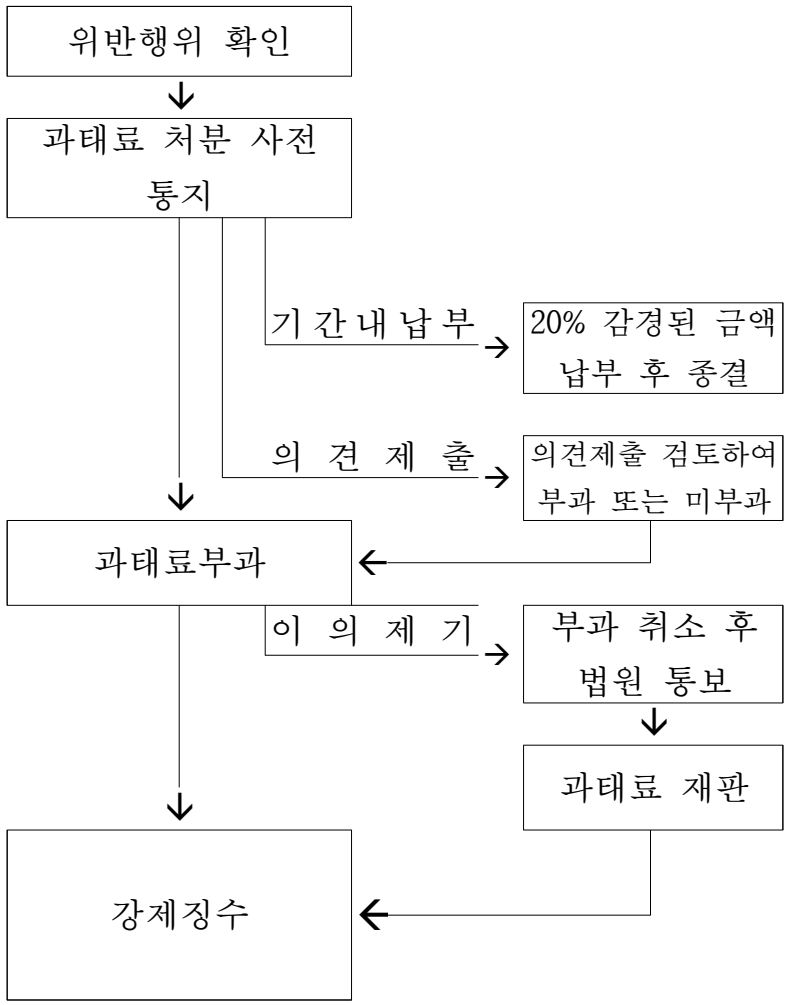

【 서식 ①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6"></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7"></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7">과태료 부과</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전자우편 주소</td><td colspan="3"></td><td>팩스번호</td><td></td></tr>
<tr><td>의견제출(자진납부)기한</td><td colspan="5">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3">납부하실 계좌번호</td><td colspan="5">***-****-******</td></tr>
</table>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이 없으신 경우에는 20% 감경된 고지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가 없으면 위 부과예정금액으로 부과됩니다.
2.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 신 명 의 직인

【 서식 ② - 의견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라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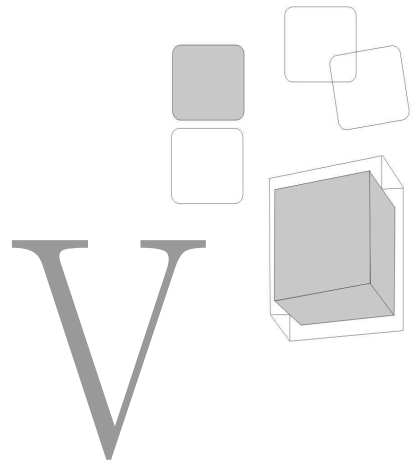

V

부 록

1. 법인 관련 판례 및 질의 · 회신

2. 법인업무 관련 법령

▢ 목 차 ▢

▣ 질의 회신

1. 학문,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목적사업이 학술사업 여부 · 353
2.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사업목적이 공익법인 사업목적에 포함 여부 · 354
3. 사단법인 대의원회 또는 일부사원이 참석한 회의 결과로 정관을 변경토록 한 정관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 354
4. 정관변경 신청내용이 법인설립취지에 반하나 비영리성 유지 시 허가 여부 · 356
5. 주무관청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358
6. 주사업 주무관청이 부수사업 주무관청에 허가 의사 확인하여 주사업 주무관청이 일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여부 ····· 361
7. 해산법인의 재산증여 조건으로 기본재산 미확보된 채 재단법인 설립허가 여부, 재단분리 조건으로 설립허가 여부 ····· 363
8. 장학재단 정관규정 및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여부 ····· 365
9. 공익법인의 통합 여부 ····· 367
10.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 평가금액과 처분금액 차액 발생시 기본재산의 과실 여부 ····· 368
11. 공익법인의 미출연 재산이 임대시설 사용여부 ····· 372
12. 부동산 임대업시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승인을 받는지 여부 ··· 375
13. 재단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76
14.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목적사업인 경우 공익재단 설립 가능 ····· 377
15. 공익법인의 학교법인 설립기금 지원 여부, 목적사업으로 학교법인 설립사업 가능 여부 ····· 380
16. 아파트를 장학법인 사무소로 사용 여부 ····· 384

17.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386
18. 재단법인의 이사 위임행위에 대한 유효 여부 ····· 387
19. 일부이사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이사회결의 유효 ····· 388
20.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선임시 정식개최 이사회 결의 필요여부 ····· 389
21. 외국국적인이 공익법인 임원으로 취임여부
취임가능시 임원 결격사유 확인 증빙서류 ····· 390
22.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출연자인 경우,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감사 및 교사는 출연자와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393
23. 임원 보수를 미지급하는 정관을 둔 법인이,
사무국장 겸직하는 이사에게 보수 지급 여부 ····· 397
24. 질의에 대한 회신(임원 기산일) ····· 398
25. 법인의 학교발전기금 기부를 위한 교육감의 중개에 관한 회답 ····· 398
26.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 관련 유권 해석 ····· 403
27. 비영리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 회신 ····· 407
28. 공익법인의 이관 제한의 타당성 여부 질의 회신 ····· 409
29. 기본재산 처분 시 기부자 동의 ····· 410
30. 비영리사단법인 동일명칭 관련 ····· 412
31. 공익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414
32. 해산관련 질의 회신 ····· 415
33.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범위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받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설립허가권을
별로도 위임받지 않았을지라도 설립 허가 가능한지? ····· 415
34.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은? ····· 416
35. 공익법 시행령에는 그 이외의 사업의 한계는 ····· 417
36. 정관에 “문화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장학사업이 안니) 등의
사업”을 학술과 관련된 목적사업과 정관승인 가능 여부? ····· 417

37. 특수교육기관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
특수교육기관을 어린이육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 418
38. 비영리사단법인 사업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 418
39.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에 관한 질의? ····· 419
40. 법인 통합인가와 관련된 질의? ····· 420
41.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일정액 확보 기준에 관한 질의 ····· 421
42. 농지(전, 답, 과수원)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421
43. 공익법인이 농지를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기본재산으로 증자? ····· 422
44. 농지를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하여 경작할 경우 농지개혁법 저촉 ··· 422
45.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에 관한 질의? ····· 422
46. 사업목적이 복수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법인의 관리? ····· 425
47. 해산한 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질의? ····· 427
48.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에 관한 질의? ····· 427
49. 사무소 소재지 변경 범위(최소행정구역)? ····· 429
50. 법인설립 시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 431
51.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일? ····· 432
52. 법인의 사무실 및 상근임직원에 대하여 ····· 432
53. 주무관청의 범위에 관한 질의 ····· 432
54.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설립가능? ····· 433
55. 동일한 명칭에 관한 질의 ····· 433
5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34
57. 공익법인 청산인 보수 부담 주체 ····· 435
58. 공익법인의 공동이사장 가부 및 특정 동창회장의 당연직 이사장 취임 · 436
59.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증여 ····· 437
60. 기본재산 증가에 따른 정관변경 관련 법령해석 ····· 439

61. 금융위원회(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유권해석 ····· 440
62. 공익법인 잔여재산 귀속주체 관련 법령해석 1 ····· 441
63. 공익법인 잔여재산 귀속주체 관련 법령해석 2 ····· 443
6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증여 관련 질의 ····· 444
65.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서명날인 대상자 ····· 445
66. 기본재산 임의처분 법인 고발 방법 ····· 446
67. 부동산 출연(기부)시 가격평가 ····· 446
68. 당연직 이사의 임기 기산일 ····· 447
69. 기본재산 주식에서 발생된 무상주 처리 방법 ····· 448
70. 이사정수의 과반수에서 “과반수”의 의미 ····· 448
71. 비영리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관한 질의 ····· 449
72. 기부행위(위원 취·해임) 해석에 관한 질의 ····· 450
73. 임원 임기에 관한 질의 ····· 451
74. 임시이사가 선출한 임원의 취임승인에 관한 질의 ····· 452
75. 가처분으로 제3자의 이사 직무대행에 관한 질의 ····· 452
76. 회의의 표결성립 여부에 관한 질의 ····· 453
77. 이사회 소집에 관한 질의 ····· 454
78. 이사장 선정 및 이사회 소집권자에 대한 질의 ····· 454
79. 이사회 의결권 위임에 관한 질의 ····· 455
80. 총회 소집에 관한 질의 ····· 456
81. 국가공무원이 이사로 취임할 때 특수관계에 대한 질의 ····· 456
82. 법인의 조건부 임원 취임에 관한 질의 ····· 457
83. 가이사 직무 권한에 관한 질의 ····· 457
84. 당연직이사 취임등기 신청 시 첨부할 서면 ····· 458
85. 감사가 소집한 이사회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질의 ····· 459
86. 총회의 서면 결의에 의한 정관개정의 유효 여부 ····· 460
87. 분사무소 설치 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여부 ····· 460

88. 허가 없이 처분한 기본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소송 제기 여부 ····· 461
8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질의 ····· 462
90.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관한 질의 ····· 463
9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한 질의 ····· 464
9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방법 ····· 468
93.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목적변경 관련 질의 ····· 475
94.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관련한 질의 ····· 478
95.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변경 ····· 481
96.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사업실적 등을 제출하는 규정 위반 ····· 482
97. 임기기간의 공백 시 임원의 연임 여부 ····· 483
98. 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 날인 여부 ····· 482
99.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관련 ····· 484
100. 공익법인 의료기관 개설 운영 및 주무관청 관련 ····· 485
101. 공익법인 주무관청 변경 관련 ····· 486
102.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등(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관련 ····· 486
103. 감사와 이사의 겸직가능성에 대한 회신 ····· 488
104. 비영리법인 활동범위(다른 지역에서 목적사업) 관련 ····· 488
105.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및 관리 관련 ····· 489
106.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정관변경) 관련 질의 회신 ····· 490
107. 비영리재단법인의 분할 ····· 491
108.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한 법인 설립 ····· 491
109.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에로의 전환 ····· 492
110.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 492
111. 임원의 임기 개시일 ····· 493
112. 재적이사의 기준 ····· 493
113.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질의 ····· 493
114.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한 기본재산의 사용·처분 ····· 494

115. 기본재산 처분(기본재산으로 부동산 매수) 관련 ····· 494
116. 기본재산 처분(정기예금을 유가증권으로) 관련 ····· 495
117.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공증 ····· 495
118. 조례를 근거로 한 감독권의 행사 ····· 496
119. 비영리사단법인 총회 의사정족수 완화 ····· 496

▣ 주요 판례

1.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 무효인 부관 ····· 497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 ····· 497
3. 변경등기는 대항요건 ····· 498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498
5. 사단의 성립과 권리·의무 ····· 498
6. 법인의 목적범위에 관한 판단 ····· 499
7. 설립허가 ····· 499
8. 설립취소 ····· 500
9. 출연재산 귀속시기 ····· 500
10. 청산종결 시기 ····· 500
11. 상속세 ····· 501
12. 사업소세 ····· 501
13. 재산세 ····· 502
14. 당연무효인 정관변경 ····· 502
15.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불허가 ····· 502
16.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 ····· 502
17. 평가액 영의 출연효과 ····· 503
18. 기본재산처분 등의 절차방법 ····· 503
19. 채권계약으로의 무효 ····· 503
20. 경매인 경우의 인허가, 기본재산 처분행위 ····· 504

21. 법령 오해한 감독관청 명령에 따른 행위 ····· 504
22. 호선의 의미 ····· 504
23. 이사의 대표권, 해임등기 ····· 505
24. 잠정적 직무수행 ····· 505
25. 이사의 묵시적 유임 ····· 506
26. 이사 표결권의 위임 또는 포기, 후임이사 선임 권리행사 ····· 506
27. 대표자의 제한이 미등기인 때 제3자 대항력 ····· 506
28. 법인총회/이사회 의사록 증명력 ····· 507
29.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 ····· 507
30. 예탁금-기본재산 처분의 효력(무효) ····· 507
3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508
32.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1 ····· 516
33.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2 ····· 518
34. 소유권 이전등기 ····· 520
35. 소유권 말소등기 ····· 522
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업무방해 ····· 527
3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1 ····· 532
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2 ····· 536
3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3 ····· 538
40. 거절사정 1 ····· 540
41. 거절사정 2 ····· 542
4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545
43.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 549
44.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 551
45. 법인성립의 준칙 ····· 554
46. 법인의 권리능력 ····· 555
47. 법인의 설립허가와 취소 ····· 555

48.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 558
49. 이사(임원) ····· 561
50. 총회 및 이사회 ····· 566
51. 해산(청산법인) ····· 572
5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 572
5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 577
5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위반 ····· 580
55.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절차 이행 ····· 584

▣ 관련 법령

1. 법인설립 허가 ····· 586
2. 법인해산 허가 ····· 590
3. 정관변경 허가 ····· 593
4. 기본재산 처분 허가 ····· 595
5. 임원취임 승인 : 공통 ····· 599
6. 수익사업의 승인 ····· 601
7. 상근임직원의 정수 승인 ····· 602
8. 이사회 소집 승인 ····· 603
9. 공익(비영리)법인 지도 감독 : 공통 ····· 604
10. 예·결산서 검토 : 공통 ····· 605

1 법인 관련 질의 · 회신

1. 학문,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등 목적사업이 학술사업 여부

(2007. 1. 교육인적자원부)

□ **질의요지 : 학문 또는 과학 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학술' 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

○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이라고 함)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을 포함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법무부에서 유권해석 하였는바(법무심의관실-5682호, 2006.8.11.)

○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문 또는 과학 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학술' 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

□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이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산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세부 사항을 제1호~제4호 및 제5호까지 나열하고 있는바,

○ 제1호는 학자금장학금, 제2호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제3호는 학술, 제4호는 자선에 대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은 "학술" 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2.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사업목적이 공익법인 사업목적에 포함여부

(2006. 8. 법무부)

□ 질의요지 : 「민법」상 비영리사단의 사업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공익법인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아래 공익성을 보장하여 그 본래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동법이 정하는 범위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법상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신규 설립하는 법인의 사업 목적에 동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동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함

○ 다만, 사안에서 "불우아동 무상교육, 청소년 선도,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 사업이 동법 제2조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이 판단해야 할 부분임

○ 한편, 이미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동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려면 단순한 정관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법인으로의 설립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할 것임

3. 사단법인 대의원회 또는 일부사원이 참석한 회의 결과로 정관을 변경토록 한 정관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2011. 5.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사단법인에서 대의원회 또는 일부사원이 참석한 회의 결과만으로 정관을 변경토록 한 정관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 민법 제42조 상 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임에도 대의원회 또는 일부 사원이 참석한 회의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토록 한 정관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 관련 규정 및 견해의 대립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갑” 설

-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은 사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들 또는 일부 사원들로 구성된 회의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견해임

○ “을” 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총회의 결의 없이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은 무효라는 견해임

□ 검토의견

○ 통설(通說)은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 규정은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해석하며,[1)]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가능한 것은 사단의 본질이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로써 재단과는 다른 것이며, 사원총회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음

○ 결국, 통설(通說)은 사원총회에 의한 정관 변경을 사단법인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대법원은

- “구성 교인(敎人) 전원의 총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 교인이 그 지교회를

1) 민법주해 [1], p623, 박영사(2008) 등

소속 교파로부터 탈퇴하여 타교파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는 그에 찬동한 교인 개개인의 탈퇴 내지는 타파가입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결의에 가담하지 아니한 교인에까지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여,

-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임에도 일부 사원의 결의만을 거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정관 변경을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민법의 규정은 사단법인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대의원 또는 일부 사원의 회의 결과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은 무효라고 판단됨

○ "을" 설이 타당함

4. 정관변경 신청내용이 법인설립취지에 반하나 비영리성 유지 시 허가 여부

(2011. 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비영리·공익 사단법인이 변경 허가를 신청한 정관 내용이 법인의 본질(설립취지)에 반하나 비영리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청내용대로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 **관련규정**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 제2항, 동법 제45조 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4.(생략)

□ 검토의견

1. 민법상 비영리법인

○ 대법원은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 라고 보아야 한다”로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95누4810), 민법 제42조 ‘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고 통설[2]은 위 민법 제42조의 허가 역시 ‘인가’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이러한 판례와 통설의 태도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비록 설립 당시 신청하였던 사업목적과는 다르더라도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이상 이를 허가하여야 함 따라서, 기본적으로 ‘갑’ 설이 타당함

○ 다만, ‘정관변경금지 조항’, ‘총회 결의 없이 정관 변경을 가능케 하는 조항’,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조항[3]’ 등은 민법상 법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당연히 효력이 없는 정관에 해당하며, 당연 무효인 정관에 대하여까지 그 변경을 허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관에 대하여는 그 변경을 불허할 수 있음

2. 공익법인상 공익법인

○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설립후의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나(대법원 2000두5661), 공익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례나 학설이 존재하지 않음

---

2) 민법주해 [1], p622, 박영사(2008) 등

3) 대법원은 종중 규약이 문제된 사건에서, “일부 종원을 종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종중규약개정은 종중의 원래의 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80다516 등)

○ 공익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허가시부터 주무관청에 정관 외에 설립취지서를 제출하여 사업목적과 설립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조), 주무관청 역시 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공익법인으로서 목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설립 허가를 할 수 있는 등 (시행령 제5조), 설립 허가 시부터 특정한 공익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함

○ 그리고, 공익법인법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재산 평가액 변동시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무화(법 제11조), 주무관청의 감독권, 시정요구권, 이사취임 승인 취소권 등(법 제14조) 공익법인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민법과 달리 주무관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설립 허가 이후의 정관 변경 허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익법인에 대한 정관 변경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신청시 목적 사업의 수행 가능성 정관 변경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관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이 설립 허가시의 설립취지(사업목적 등)에 반하는 이상 변경을 불허하여야 함. '을' 설이 타당함

5. 주무관청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 기본재산 확보가 타당여부

(2007. 5. 법무부)

□ 질의요지 : 법인설립의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① 법인설립의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법인과 그 사업의 영속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기준으로 기본재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확보 외에 다른 선택안(예 : 안정적 회비수입 등 재산확보방안)을 허가기준으로 동시에 제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여부

③ 장학법인의 기본재산 확보에 관하여 부처별 내지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한데, 이는 행정의 통일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검토의견

귀부에서 질의하는 사항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관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기초하여 답변함

□ ①에 대한 검토의견

○ 법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기본재산이라고 함)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은 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세계잉여금중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과 시행령의 취지를 보면,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재산내용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익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단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신청시에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설립 이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할 것임

※ 예컨대 회비징수를 재원으로 삼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현재까지 회비징수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회비징수를 하여 기본재산을 마련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인설립허가 이전에 사원이 될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회비징수를 하여 인적구성 및 기본재산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향후 회비징수를 통해 목적사업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만일 기본재산의 확정을 전혀 요구하지 않게 되면, 현재 기본재산이 없고, 향후 기본재산의 적립여부가 불투명한 공익법인이 생길 수 있게 되어 거래의 안전 및 공익법인법의 입법취지를 심대하게 해칠 수 있음

□ ②에 대한 검토의견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단지 "안정적 회비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만 가지고는 기본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의 안전과 공익법인 활동의 보장,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정적 회비수입이 있을 예정인 법인이라면, 일단 일정액의 회비 징수를 통해 인적구성 및 기본재산의 토대를 마련한 후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면 될 것임

○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져야 하고, 목적사업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재산적 기초를 갖추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확정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③에 대한 검토의견

○ 재단법인의 경우

- 장학법인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기본재산의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현재 시도별 장학법인(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시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보면 2억원(광주광역시, 전남, 경북 등)부터 5억원(서울, 경기)까지인 바, 그와 같은 차이는 각 지역의 경제력, 인구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각 교육청에서 설정한 기본재산 확보액의 차이가 클 경우,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기본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교육청별 편차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인 장학법인의 경우 향후 회비징수를 통해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만으로는 기본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장학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 기본재산의 확보는 필요함주무관청인 각 지역 교육청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재산 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각 교육청에서 설정한 기본재산액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현재 사단법인에 대하여는 기본재산을 요구하지 않는 교육청(광주광역시)부터 3억원을 요구하는 교육청(서울특별시)까지 다양함
- 사단법인인 장학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여 각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교육청별 편차를 줄이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임

6. 주사업 주무관청이 부수사업 주무관청에 허가의사 확인하여 주사업 주무관청이 일괄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여부

(2007. 5. 법무부)

□ **질의요지 : 주된 사업 담당 주무관청이 부수된 사업의 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의사를 확인하여 주된 사업의 담당 주무관청에서 일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복수 관청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번거롭고 행정실무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주된 사업 담당 주무관청이 부수된 사업의 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의사를 확인하여 주된 사업의 담당 주무관청에서 일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 타 부처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주된 목적사업 주무관청이 추가된 목적사업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관변경 허가를 하면서 일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 추가된 목적사업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된 별도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①항에 대한 검토의견

- 학술, 종교, 기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복수의 주무관청 소관사항에 해당한다면,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법인 설립이후에도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고(법 제37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배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바(법 제38조)
- 만일 질의내용과 같이 주된 사업담당 주무관청이 부수된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의사만을 확인하여 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된 사업담당 주무관청만이 법인설립허가의 주체이고 부수된 사업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의 주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수된 사업 주무관청은 해당 업무에 대한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거나 법 제38조 사유 발생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의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기게 됨

□ ②항에 대한 검토의견

- ㉠ 질의에 대하여는 위 ①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업목적이 복수의 주무관청 소관사항에 해당한다면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 질의에 대하여는 추가된 목적사업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한 이상 해당 주무관청에서 별도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7. 해산법인의 재산증여 조건으로 기본재산 미확보된 채 재단법인 설립허가여부, 재단분리 조건으로 설립허가여부

(2006. 11. 법무부)

□ 질의요지 : 해산법인의 재산 증여를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재단법인 설립 허가 가능 여부, 재단분리를 조건으로 설립허가 가능 여부

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3억원)으로 유가증권 (채권, 주식)을 구입하여 운용하거나 금융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② 사단법인의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된 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존속중인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질의 ①에 관하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이라고 함) 제11조제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는 바,

○ 이는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은 한시적 열거로 볼 수 없고, 사회관념상 통상적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기본재산의 원형이 변경되어 재산의 감소 위험이 증대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동 조항을 한시적 열거로 보는 경우 공유물인 기본재산의 분할, 공익법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등의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

○ 따라서, 공익법인의 안정적 기본재산인 정기예금(3억원)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는 물론, 금융펀드에 가입하는 행위역시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공익법인법 제11조제4항이 규정하는 통상적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임

※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금이나 확정금리를 보장하지도 않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도 않으므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하여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이 큼

○ 한편,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주식, 채권,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질의②에 관하여

○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재산에 향후 동일 목적으로 갖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증여한다는 필수적 조건을 부가할 수도 없음

○ 설립되어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준비위 또는 설립된 재단법인에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연(사단법인의 정관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하고, 그 이후 사단법인을 해산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일 것임

※ 단, 동 사단법인이 해산절차를 마치기 이전에는 설립되는 재단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단법인 이사는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질의 ③에 관하여

○ 설립되어 활동하는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준비위 또는 설립된 재단법인에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기본재산을 증여한 재단법인(A)은 설립되는 재단법인(B)의 출연자로서 재단법인(B)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출연 재단법인(A)의 이사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재단법인(A)에 대한 출연자 등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게 됨

○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는 없음

8. 장학재단 정관규정 및 해산시 장여재산 귀속여부

(2011. 8. 법무부)

□ **질의요지 : 장학재단 정관규정 및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여부**

○ ‘11. 6. 마포구 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한 질의

- 마포구가 설립을 추진 중인 법인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마포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조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4)]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

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가. 출연자인 ‘시·군·구’를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할 수 있는지

○ 공익법인법은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법인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5]. 따라서, ‘시·군·구’도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음

○ 또한, 공입법인법이 귀속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한 취지는 법인이 해산된 이후에도 잔여재산을 계속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토록 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따라서, 출연자인 ‘시·군·구’를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로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나. 설립허가 신청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해당 ‘시·군·구’로 정관에 기재한 경우,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는 것인지

○ 다만, 공익법인법은 법인설립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외에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여야 함

○ 공익법인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정관에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누구로 하고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 ‘법인을 통해 공익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재산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여야 함

---

4) 유사한 입법형식을 취한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도 공익법인법과 유사하게,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5) 지방자치법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제2조)

○ 따라서, ‘시·군·구’를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명시한 정관 규정이공익법인법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은 그 규정에종속되지 않고, 사업의 수행 가능성과 함께 ‘공익사업의 유지·존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허가를 결정하는 것임

다. 결론

○ ‘시·군·구’가 출연을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해당 ‘시·군·구’로 지정하는 것이 공익법인법에 반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해당 ‘시·군·구’를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목적사업의 수행 및 유지·존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판단하여야 하며, ‘재산의 일시적 편법운용’을 위한 법인설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

9. 공익법인의 통합 여부

(법무 25001-15,’88.1.13. 대:서울특별시교육감)

□ 질의요지 :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장학회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학술연구재단을 통합함에 있어 다음 3가지 방안 중 현행 법체계상 적법한 것은 무엇인가?

1. 소멸예정법인을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밟은 후 재산을 존속법인에 양도하는 방안
2. 학교법인이나 회사법인의 경우를 준용하여 합병에 의하여 통합하는 방안
3. 소멸예정법인의 재산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증여한 후 소멸예정법인의 해산절차를 밟는 방안

□ 검토의견

○ 합병에 의한 방법은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소멸예정법인의 해산 및 청산 후 존속법인에의 잔여재산 양도방법은 잔여재산의 귀속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그목적 실현이 보장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증여 후 해산하는 “3”의 방안만이 적법하다 할 것임

10.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 평가금액과 처분금액 차액 발생시 기본재산의 과실 여부

(2007. 7. 법무부)

□ 질의요지 :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의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고 함) 제11조 제3항 소정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
④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의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민법 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에서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의 의미
⑥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규정에서 정관변경의 범위 및 제45조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과의 관계

□ 검토의견

□ 질의 ①에 대한 검토 의견

○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기본재산이라고 함)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세계잉여금중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각 규정에서 보듯이 기본재산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확보된 경우에 공익법인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점,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규정(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있지만, 그 반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 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등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②에 대한 검토 의견

○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곧바로 충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비용과 운영경비는 보통재산 (기본재산의 수익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것임

○ 질의에 거시된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는 정관의 규정에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 은 보통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이므로,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음

□ 질의 ③에 대한 검토 의견

○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7조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제1항),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제2항),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제4항)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용도변경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및 담보권 설정등의 처분행위와는 구별되며, 재산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매도·증여·임대·교환 및 담보권 설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공익법인법에 “용도변경”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기본재산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예컨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부동산의 용도변경(임야, 택지 등) 등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갑론·을론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위 검토의견 1.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음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시행령 제16조 제3항]하는 것일 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하여도 용도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 질의④에 대한 검토 의견

○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은 기본재산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하여 얻은 대금 전부가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임

○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처분금액과 정관상의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그 차액을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는 없음

※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

□ 질의 ⑤에 대한 검토 의견

○ 재단법인은 민법 제43조에 의한 정관의 목적과 조직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자주적 의사결정기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 등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45조 제2항) 및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법인의 목적의 변경 등의 정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제46조)

○ 민법 제45조 제1항의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라고 하는 의미는, 설립자가 정관 내에서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정관내용의 실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 즉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정관의 변경이 아니며, 단순히 정관내용의 실행에 지나지 않는 것임

□ 질의 ⑥에 대한 검토 의견

○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단법인이 그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해산한다면 설립자의 의도나 사회적 이익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재단법인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정관변경의 범위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관에 기재된 모든 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변경되면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의 변경이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제45조와의 관계를 보면, 제46조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때에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제45조의 적용이 없으며 이 때 정관변경의 대상은 모든 규정임

11. 공익법인의 미출연 재산인 임대시설 사용여부

□ 질의요지 : 공익법인의 미출연 재산인 임대시설 사용 여부

○ 공익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기본재산에 출연시키지 않은 개인 소유의 교육용 시설을 임대(賃貸) 방식으로 사용하며 시설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지

□ 관련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4조 (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단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평생교육법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⑤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대립되는 의견

1. '갑' 설

○ 공익재단법인은 출연재산 수입으로만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기본재산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개인 소유 시설을 유상 임차하는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견해

2. '을' 설

○ 주무관청이 제시한 기본재산 출연한도 범위 내에서 재산을 출연한 이상, 이후 개인 재산을 유상 임차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

□ 검토의견

1. 본건 질의의 배경 및 질의취지

○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공익재단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평생교육법의 시행[6]에 따라, 종전의 평생교육시설 개인 운영자들이 공익법인 전환을 시도하며, 주무관청인 교육청이 고시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한도액(3~5억)의 범위 내에서 현금 등을 출자할 뿐, 그 외 부동산 등의 시설은 유상 임차 방식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이 배경임

○ 그런, 본건 질의서만으로는 ①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지만, 시설물은 설립자 개인 소유 부동산 등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자에게 공익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② 일단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재단법인이 설립 허가 이후에 개인소유 시설물을 유상 임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의견을 제시함

2. 공익재단법인의 설립허가

○ 먼저 일정한 재산만을 출연할 뿐, 부동산 등 개인 시설물은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익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주무관청은 출연되는 재산의 수입으로 공익재단법인의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관·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 관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공익법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5조)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일정 재산을 출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는 없으며, 주무관청은 출연재산의 규모,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기존 평생교육시설 운영 실적과 공익 기여 여부 등을 토대로 “출연재산 수입으로 공익재단법인 운영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하여야 함

---

6) 2008.2.15. 시행. 부칙 제3조에 ‘법 시행 전 인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종전부터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특히, 공익재단법인 운용을 통해 세제상 특례를 얻으며 개인적인 임대 수익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주무관청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설립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공익재단법인의 재산 운용

○ 다음으로, 일단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 이후 개인 시설물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 재산의 일부만 출연하되 개인 소유 시설물을 유상 임차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정관 등에 기재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고,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하였다면, 출연된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의 수입을 사용하여 시설물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며, 시설물의 유상 임차를 한다는것만으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그러나, 공익재단법인은 설립 허가 신청시 주무관청에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기본 재산에 대하여는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에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법 제11조 제2항) 재산의 관리에 있어 주무관청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됨

○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출연한 재산 중 기본재산 내지 기본재산의 수입으로 시설 임차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수입으로 임대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 변경은 불필요하나,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하고,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법 제12조),

○ 기본·보통재산의 수입이 아닌 본인 개인의 재산으로 유상임대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이는 기부에 의한 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기본재산변동으로 의제되므로(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지체 없이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비록 일정한 기본·보통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출연 재산의 수입으로 시설물 유상 임차료를 지불하는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여지가 큼

○ 결국, 공익재단법인화한 평생교육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정관 등에 기재한 바와 같이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시설물을 유상 사용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재산의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시설물 이용료 지불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여지가 있고, 재산 운용 과정에서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결론

○ 일부 재산, 특히 현금만을 출연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거나, 공익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공익법인의 엄격한 재산관리 규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농후함

○ 따라서, 주무관청은 출연재산의 규모,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등을 토대로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공익사업 수행 능력, 출연재산의 충실 관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그리고, 공익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재산의 수입 범위 내에서 시설물 임대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출연재산의 편법적인 운용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주무관청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2. 부동산 임대업시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승인을 받는지 여부

(2006. 07. 법무부)

□ 질의 요지 : 부동산 임대업시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정관변경 허가로 포괄적인 권리능력이 부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익사업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검토 의견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해당 법인이 받은 허가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허가이지, 기본재산임대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는 아니므로 ,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동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와 동법 제4조의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할 것임(同旨 : 서울고등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누20090 판결)

13. 재단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심:2301-17317, 198812.21. 대: 문공부장관)

□ 질의

○ 다음 각 경우에 당해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의 부동산이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2. 법인의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무부 장관에게 동 재산에 대한 증가 보고를 하였을 경우
3. 법인의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무부 장관에게 연도말 보고 시 기본재산목록에 동 재산을 포함하여 보고한 경우

□ 답변

○ 어느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이유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써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32조,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이미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67.7.23. 선고 67다568판결, 1978.7.25.선고 78다783판결, 1978.8.22. 선고

78다 1038, 1039판결, 1982.9.28.선고 82다카 499판결 등 참조),
본 건에 있어서 위 각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

※ 요지 : 기본재산으로 편입 허가를 받지 않아 정관상의 기본재산에 등재되지 않는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아니다.

14.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목적사업인 경우 공익재단 설립 가능

(2008. 11.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배경

○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의 공익재단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관련 검토 의뢰

- 「평생교육법」은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의 하나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함(제28조 제5항)
- 이에 따라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됨

□ 검토의견

□ 질의 1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을 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1-1),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을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정가능한지(1-2)

□ **답변 1**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관련**

-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1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법 제33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법 제37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법 제38조)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함
- 그 중,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함 (헌법재판소 2004.8.26. 2003 헌마33 참조)
- 그리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임(「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 이상을 종합하면,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그 기본이 되는 중등·고등학교와 유사한 평생 교육시설의 경우, 공교육에서 이탈된 자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것임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 2조의 해석**

- 「공익법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규정함
- 여기서 규정하는 '학술'은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할 것임.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법」의 규율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다만,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공익법인의 범주에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음

○ 그렇다면,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더하여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범주에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공익법인은 비영리사업만 가능하므로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운영이 비영리일 것을 전제로 함

○ 덧붙여 평생교육법의 해석상 평생교육시설이 기본적으로 비영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판단되며, 그렇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영리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공익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2

○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2-2)

□ 답변 2

○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할 수 있다고 교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요건에 반하지 않는 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보임

○ 덧붙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1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람

□ 질의 3

○ 교육과 학술과의 관계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답변 3

○ 질의 1과 2의 답변으로 갈음함

15. 공익법인의 학교법인 설립기금 지원 여부, 목적사업으로 학교법인 설립사업 가능여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학교법인 설립기금 지원 가능 여부, 목적사업으로 학교법인 설립사업 가능 여부

1.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의 설립기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여 목적사업에 학교법인 설립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추가할 수 있다면 기본재산을 학교법인으로 직접 출연가능한지

2. 국방부 질의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법인이 장학재단기금을 학교법인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로 제한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 관련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재산)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 · 조사 · 개발 ·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 · 박물관 · 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
4. 불행 · 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검토

1. 장학재단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가. 학교법인 설립

○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이 규율하고, 이중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익법인 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특별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법인 허가를 받은 장학재단법인이 학교법인 설립을 하거나 학교법인 설립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학교법인 설립이 공익법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사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규범체계상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이 별개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점,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등을 설치 · 경영할 수 없도록 한 점,(사립학교법 제2조, 제3조),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는 '교육'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한다면 공익법인이 직접 학교법인을 설치 · 경영하는 것은 공익법인이 정한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남

나. 학교법인의 설립 기금 등 지원

○ 공익법인법 시행령은 '장학금 · 학자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 ·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 ·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을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1항 제1호)

○ '학자금' , '장학금' , '장학' 등의 용어는 공익법인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어의(語義)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고, 법문상으로도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 · 지원하면 족하며, 학교 설립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학습을

장려하는 '장학(奬學)' 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생 등의 학습을 권유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목적에서 지급·지원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뿐 아니라 학교법인 설립기금 등의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한바(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기본재산 처분은 공익법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공익법인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됨[7)]

○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 재단법인의 성격상 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본체인 '재산' 이 형해화(形骸化)되어서는안 될 것이며,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인해산사유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공익법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한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이 허용되는 것임

○ 따라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학교법인 설립기금을 지원하거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학교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본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기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받거나 기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3. 결론

○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석상 장학재단법인이 학교법인 설립을 하거나 학교법인 설립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학생 등의 학습을 권유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목적에서 학교법인 설립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7) 노행남,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의 동향", 재판실무연구, 권호: 2001(2002년), 광주지방법원, 61면, 77면 참조

○ 다만 기본재산 처분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재산 감소로 인하여 기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고 이는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16. 아파트를 장학법인 사무소로 사용 여부

(2010. 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아파트를 장학법인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 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재산인 "아파트" 를 법인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함)」 제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검토의견**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자기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재산이므로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집합건물법」 제5조는 이러한 취지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항), 특히 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전유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2항)

○ 이 때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 사용의 방식과 형태 및 그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 소유자의 주거생활에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공익법인의 사무소】

○ 공익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곳으로서 이 중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되고 법인 관련 송달의 기준지가 되나, 공익법인법상 사무소에 대하여 일정한 설치요건이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집합건물법 위배 여부】

○ 「집합건물법」 제5조제2항의 취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이 주거용으로 분양된 건물에서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전유부분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민원인은 장학법인의 경우 직원 출입이 잦다거나 물품 반출 등을 수반하는 업무가 거의 없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입힐 일이 거의 없으므로 아파트를 법인사무소로 사용해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 (공익)법인의 사무소는 상근임직원이나 담당공무원, 법인관계자 그밖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그에 따른 주차문제, 소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구분소유자의 민원제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파트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아파트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용될 수 없을 것임

○ 다만,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거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약이 있거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법인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집합건물법은 건물 등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8조 제1항), 규약으로 주거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

【법인사무소 사용을 위한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 「집합건물법」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나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 재건축결의(제47조)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또는 4/5와 같이 특별다수결로 결의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인 선임(제24조제2항)과 같이

집합건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8조제1항),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음

○ 한편,「집합건물법」이나 규약에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법 제41조제1항)

○ 사안의 '법인 사무소'는 장학에 관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거나(제38조제1항), 집회개최 없이 서면으로 결의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동의서(제41조제1항)가 있어야 할 것

17.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2005. 1. 법무부)

□ 질의요지

○ 동법 제5조 제6항 제4호에서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분과 관련,

○ 임원자격 여부

2001. 5. 4.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2004. 12. 20. 공익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과규정 3년의 적용 여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의 경우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 임원자격 여부

○ 동법 제5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와는 무관함(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참조)

○ 입법론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공익법인 임원 결격의 제한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상 위 조항을 근거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임원 결격의 제한을 둘 수는 없음

※ 1975. 국회에 제출된 동법 제정안 원안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임원 결격의 제한을 두었으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선고유예 부분에 관한 결격 사유를 삭제하면서 해당 부분도 함께 삭제되어 수정 의결된 바 있음

○ 따라서, 문제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공익법인 임원 결격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경과규정 적용 여부

○ 동법 제5조 제6항 제4호 규정의 표현상, "3년의 경과규정" 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 를 포함하는 것임

※ 문언상 당연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실형을 받아 만기출소한 자를 가석방 된 모범수나 국가로부터 사면받은 자보다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름

○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자의 경우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만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18. 재단법인의 이사 위임행위에 대한 유효 여부

(법무 810-417, '71.10.15 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질의

○ 재단법인 낙산장학회에서는 ' 71.9.10자 이사회 안건 의결에 관하여 동 법인 이사가 그 이사 본인에 속하는 일체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한 사례가 있는 바

가. 민법 제62조에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인 정관에 이사의 대리행위를 금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위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나. “가” 에서「타인」이라 함은 같은 법인 타 이사만을 지칭함인지 또는 이사 아닌 외부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다. “가” 에서「특정한 행위」란 구체적인 행위만 인지 또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일체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질의 “가, 다” 에 대하여

민법 제62조에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인 정관에 이사의 대리에 관한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동 법인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정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민법 제62조의 특정한 행위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사안의 위임장 내용과 같이「’71.9.10자 개최되는 이사회 안건의결에 관하여 본인에 속하는 일체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민법 제62조의「특정한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위임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 나에 대하여

민법 제62조에서「타인」이라 함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인의 다른 이사가 아닌 자도 포함되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는 동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이사가 아니면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 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이사회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에는 같은 법인 다른 이사만을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19. 일부이사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이사회결의 유효

(1960.4.26.법무부)

□ **질의요지 : 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

○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여 임원의 진퇴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기관인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발함에 있어 이사 1명이 범죄모의로서 구속 중이라는 사유로 동인에게 소집

통지를 발함이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이사취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에 위 결의는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귀 견의 여하

□ 검토의견

○ 재단법인의 이사는 민법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권의 내용으로서 법인의 이사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므로 정관에 별단의 예회 규정이 없는 한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발함이 없이 개최된 이사회는 적법이 소집되고 구성된 것이라 인정하기 난하고 따라서 동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사료된다.

20.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선임시 정식개최 이사회 결의 필요여부

(법무부 1957.11.19. 문교부장관)

□ 질의

가. 재단법인 기부행위 준칙(이하 "준칙" 이라 함) 제13조에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명을 선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의 이사의 호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귀견 여하

(1) 전설 "이사의 호선" 이라 함은 정식으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이사장을 선거함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사 전원이 한 장소에 집합하여 이사장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2) 후설은 「이사장의 호선」이라 함은 사실상 이사전원 또는 과반수가 한 장소에 집합하여 이사장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사장 선정에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만일 후설을 취한다면 반드시 이사 전원의 집합과 찬성이 필요한지 불연이면 과반수의 집합과 찬성으로도 가한 것인지의 여부

다. 만일 전설을 취한다면 현행 기부행위로서는 이사회 소집권자의 결여로 영원히 이사회를 소집할 방도가 없는 바 그 구제방도 여하

□ 검토의견

○ 이사장은 소정절차에 의한 이사회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선정하는것이 원칙이나 이사전원이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목적하에 집합하여 이사장을 호선할 수도 있다.

○ 일부 이사의 태만 기타 고의에 의한 불협력 등 사유에 인하여 이사 전원의 집합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그대로 방치하면 재단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67조에 의한 감독권을 발동하여 전 이사를 집합시켜 이사장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21. 외국국적인이 공익법인 임원으로 취임여부와 취임가능시 임원 결격사유 확인 증빙서류

(2011. 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외국 국적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임이 가능하다면 임원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 검토배경

○ 11. 9. 전라남도 교육청, 공익법인에 대한 외국 국적 임원취임 여부와 관련한 공익법인법제5조 제6항 및 시행령 제7조 등 해석 질의

○ 외국국적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임이 가능하다면 임원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등)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검토의견

1. 공익법인법의 규정 취지

○ 공익법인법은 임원 취임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권, 임원의 자격제한 등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이무언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공익법법인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권[8], 이사취임승인취소권, 예·결산 자료 제출요구 및 심사권 등을 인정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은 ‘허가’로써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임

8) 대법원 95누18437, ‘주무관청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진 것임’이라고 판시

2. 공익법인법상 임원의 자격제한

○ 공익법인법은 ‘금치산·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금치산·한정치산’은 민법에 따라 심신미약 등을 사유로 법원이 금치산 선고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함으로써 일정한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제도이며[9][10], ‘파산선고’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재산처분 등에 대한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제도임[11]

○ 즉, 공익법인법은 민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유 및 법원의 확정 선고에 의해 일정한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자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들의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 법률 및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금치산 선고 등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하여 이러한 자격제한 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 임원취임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 공익법인법 시행령은 주무관청이 임원의 결격 사유와 특수관계존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된 서류 중 ‘가족관계 증빙자료’, ‘민원인 신원보증서’는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주무관청에게 임원취임에 대한 승인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법의 취지상, 주무관청은 위와 같은 서류 외에도 임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공익성 확보 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소명자료의 제출 역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즉, 공익법인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이력서’,

---

9) 민법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0) 민법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11)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①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만이 필수적인 제출서류이고, 그 외 제출서류 등은 주무관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게 됨

○ 따라서 범죄사실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등은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제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제출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는 필수적인 제출서류 이외에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임원의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결정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임

4. 결론

○ 공익법인법상 외국인의 임원 취임은 제한되지 않으며 금치산·한정치산 파산선고 등의 자격제한은 우리나라 법원의 선고가 없는 이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외국인에게 위와 같은 제한 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 범죄사실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등은 필수 제출서류라고 할 수 없고 외국인에게 그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게 외국인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

22.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출연자인 경우,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감사 및 교사는 출연자와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출연자인 경우,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감사 및 교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OO학교법인 재단이사장이 공익법인의 출연자인 경우 당해 학교법 인의 이사·감사 및 교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 교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가. (1)번 질의에 대하여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이라 함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넘을 수 없으며 동조 제8항

에서는 감사는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2)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임원 및 교원의 임면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며 (제16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제20조),교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면합니다(제53조의 2)

(3) 한편 법은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요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은 1998.8.21. 선고 97다13702 판결). 또한 임면권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로서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은 1986.7.8. 선고 86722 판결)13)[12)]

(4) 이사장과 이사가 사용 ·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본다면, 학교법인에 있어서 이사들은 회의체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심의 ·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장은 집행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심의의결권을 가지는 임원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컨대 부부나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등) 이사가 이사장의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자는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5) 이사장과 감사의 경우, 감사는 이사회의 회계 및 업무운영 등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6) 반면, 교원들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면하는데 학교법인의 의사는 이사장이 대표하므로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지휘감독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7) 그렇다면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

12)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는 이사장은 그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을 재단이사장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공익법인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8) 그러나 임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2)번 질의에 대하여

(1)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교원이 공익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공익법인법」에서는 제5조 제6항 소정의 결격사유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사립학교법」 제23조에서는 임원의 겸임을 제한하고 있는 등[13],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교원 등의 겸임을 제한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인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임원 · 교원에 관한 법령을 소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등에서 소관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15조 (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3)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3. 임원 보수를 미지급하는 정관을 둔 법인이, 사무국장 겸직하는 이사에게 보수 지급 여부

(2006. 01. 법무부)

□ **질의요지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정관을 둔 법인에 있어서,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9항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한 사안에서, 사무국장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이사회에서 임명된 상근임직원인 경우, 비록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상근임직원의 지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한편, 질의한 사안에서 A재단의 정관 제17조에서 말하는 상임이사와 법률상의 위 상근임직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어서, 사무국장이 상임이사가 아니므로 보수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24. 질의에 대한 회신[임원 기산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공익법인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의 경우,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법인 이사회의 임원선임일인지 아니면 주무관청의 승인일인지 여부**

□ **검토의견**

○ 임원선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임기개시일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참조)[14]

25. 법인의 학교발전기금 기부를 위한 교육감의 중개에 관한 회답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관할 공익법인의 장학 및 교육기관지원 관련 목적사업 운영을 지도함에 있어, 학교교육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과 지원이 필요한 교육감 관할 학교를 연계하여 주는 일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질의요지**

○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14)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정관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4년인데, 박성학은 1992.4.9.이사회에서 임기만료된 신금봉의 후임 이사로 선임되어 1992.5.16.교육장관의 취임승인을 받고 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그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로 취임한 1992.5.16.부터 1996.5.15.까지 4년이고, 참가인이 그 취임승인신청을 하면서 박성학이 이사회의 선임결의도 없이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윤철순의 후임 이사로 선임되어 그 임기가 윤철순의 잔여임기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취임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박성학의 임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서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고 규정 및 같은 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규정들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바,

-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공익재단법인 중 장학 및 교육기관지원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책사업 관련 학교교육활동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발전기금 사용목적(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개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학교교육활동을 설명 및 해당학교들에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홍보하여,
-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청 시책사업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 및 지원 희망법인들에 지원대상학교를 연계하여 주고, 해당 법인이 지원대상학요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의한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 설

- 의견: 「공직선거법」에 위배됨
- 이유

· 현직 교육감은 차기 선의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로 보아야 함

· 교육감이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공익법인의 교육감 선거구내 학교의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조성·지도·지원하는 것은 학부모 등의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고, 또한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공립학교에 대한 인사권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속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장의 행위를 교육청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없는 바,

· 차기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감 자신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것 또는 교육감 자신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배되며, 이때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구내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공모하는 부분은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위배됨

○ 을 설

- 의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음
- 이유

· 학교교육활동 지원은 교육기관지원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임

·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 관할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운영을 지도·지원하는 것과 관할 학교가 교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부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은 교육감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임.

· 따라서, 이 사안에서 교육감의 행위는 '차기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감 자신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것 또는 교육감 자산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게 하는 것' 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원 대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공익법인은 제116조의 "기부행위가 제한 되는자"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은 학교교육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연계하여 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고, 지원여부는 법인이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지원대상학교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것이므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령해석 요청 기관 의견: 을설과 같음

□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규

○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제1항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법령해석과 관계되는 기타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류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2011. 6. 13. 서울특별시교육감 질의)

□ 답변

○ 귀문의 경우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교육감의 지역구 관내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교육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교육감을 위하여 기부하거나, 교육감이 법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기부하도록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및 제257조에 위반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교육감이 법인과 학교를 연결시켜 주거나 학교발전기금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2011. 6. 1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6.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 관련 유권 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6)

□ 검토배경

○ ‘11.5.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질의 회신

□ 질의내용

○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경우, 기부 또는 출연한 개인이나 단체 직원 등이 공익법인법 제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률

※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등)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6., 2012. 11. 6., 2014. 12. 9.>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 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대립하는 견해

○ 甲설 : 출연은 법인설립 이후에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에도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법인설립 이후에 출연(기부)한 자 또는 그 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공입법인법 제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乙설 : 출연은 법인설립 허가 당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만, 기부는 법인설립 이후에 내놓은 금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기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丙설 : 기부는 공공사업 등 사업목적을 지정하여 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개념이므로 출연과는 구분되는바, 기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법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검토: 甲설이 타당함

1. “출연”과 “기부”의 정의

○ 「공익법인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기부와 출연의 정의, 구분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출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통설은 출연행위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15]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정의를 판시하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음[16]

15) 곽윤직, 민법총칙 p205, 박영사(2002)
16) 대법원 2002도43

○ 이와 같이 판례와 통설을 출연과 기부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며, 특별히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의 체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6조 이하[17]에 공익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不산입토록 규정하나, 법령상 출연의 정의는 명시되지 않았음. 이 경우 출연은 무상의 재산취득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법령상 별도로 기부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음

○ 반면,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제34조 이하에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하여 규정하며, 기부 또는 기부금[18]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출연내지 출연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등 다른 법률 역시 출연과 기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법인설립의 시점을 기준으로 출연과 기부를 구분하고 있는 법률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후의 무상 재산취득 역시 출연으로 표현하고 있음

3. 검토의견: 甲설이 타당함

○ 판례, 학설 다른 법률의 입법 형식 등에 의하면, 출연과 기부 모두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며,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님

○ 「소득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문 체계 및 해석상, 기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소액 금전의 무상증여”, 출연은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의 무상증여”의 의미로 기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임

○ 공익법인이 출연 및 기부에 대하여 명문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앞서 본 출연 및 기부의 개념과 달리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

17) 상속세 및 증여세 제48조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8)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의 요건을 정하여 이러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1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법인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내지 기부를 통해 법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모두 출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출연을 통해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 甲설이 타당함[20][21]

27. 비영리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0.11)

□ 질의요지

○ 비영리사단법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회를 개설하고 있을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민법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 위와 같은 경우 지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지

□ 관련규정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출연자에 불특정 다수의 소액 기부자를 포함시킬 경우 무상기부 내지 무상출연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연자의 범위 자체를 명문으로 제한하는 입법형식 취하고 있음(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21)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출연자의 범위를 명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음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검토의견

(1) 지회의 개념 및 별도 법인 설립 필요성에 관하여

○ 민법에서는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지회’란 것은 법정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일반적으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하여 법인격을 갖게 되지만,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지회가 법인 본부와 재산관계와 조직 등에 있어서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법인격 및 권리능력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지회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에 관하여

○ 민법에서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0조), ‘사무소’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모두 포함되므로 지회의 소재지 또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회 설치·이전·폐지시 사무소 소재지가 신설되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이 있게 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이므로(제42조 제2항), 주무관청으로부터 지회의 설치·이전·폐지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분사무소 설치 등기에 관하여

○ 민법은 분사무소 설치시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지회의 실재 여부에 관한 효력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회를 독립한 법인으로 별도 설립하지 않는 한, 분사무소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제50조),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제97조)

28. 공인법인의 이관 제한의 타당성 여부 질의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0.10)

□ 질의요지

○ 설립 시 소재한 시·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에 따라 설립 허가된 공익법인이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이관하고자 할 경우, 이관하려는 소재지 시·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관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원(財源) 수입으로 법인 목적 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교육감 명의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각의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독립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적법·타당하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의 적정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주된 사무소를 타지역으로 아예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이관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전혀 무관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각각의 교육감이 설정한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관 시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고, 나아가 불응 시 이관을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만약 요건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의 이관을 허용한다면, 甲지역에서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되었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乙지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실을 이전, 甲지역으로 공익법인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와 같이 허가 시와 감독 시의 요구기준이 현저히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결과적으로는 '설립지 쇼핑'과 같은 우회적인 행정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29. 기본재산 처분 시 기부자 동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0.12)

□ 질의요지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기부된 주식 관련, 주식의 처분 및 주주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식기부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해석상 가능한지 여부**

□ 관련 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 ⑤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검토의견

1. 주식 처분 관련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인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적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기본재산 처분 등을 감독·규제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재산 건전성 침해 소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정관에 주식기부자에 대한 주식처분 동의권 부여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핵심적 취지는 특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주식을 기부한 주식기부자가 기부 목적에 적합하게 기부 주식이 사용될 것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방만한 재산 운영을 방지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주식기부자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이사로 취임하지도 않은 채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여부를 좌우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정관 규정은 공익법인의 적극적인 재산 처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목적에 반하는 재산 처분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취지이므로 공익법인의 재산 건전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법상 부담부증여[22] 또는 조건부 증여[23] 등의 법리에 의하여도 기부자가 기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 기본재산 관리의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공익법인법 제5조, 제7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반대론에서는 주식기부자 사망의 경우, 기부자의 세금 포탈·주가조작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나, 기부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기부자의 증여계약상 지위가 포괄승계되므로 일반 민사상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고, 세금 포탈·주가조작 등은 주무관청의 감독과 형사처벌 등에 의하여 방지할 사항임

2. 주주 의결권 행사 관련

○ 주식기부자가 주식을 기부하였으므로 이미 주주가 아님에도 정관의 규정에

22) 민법 제561조. 지정된 목적에의 사용을 부담하는 증여

23) 원칙적으로 지정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즉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복귀됨. 다만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5584 판결)

의하여 주주인 공익법인이 가지는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법리상 가능한지 문제됨

○ 이처럼 주주가 제3자와 의결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결권구속계약'이라 하는바, 의결권구속계약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그 회사의 이사·감사 등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여야 된다거나 이들의 제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의무를 지우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주는 그 의결권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24]이자 하급심 판례[25]의 입장임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부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식기부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익법인이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부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리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 귀 청에서 질의한 공익법인의 정관변경 내용은 공익법인법 및 민·상법의 해석상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30. 비영리사단법인 동일명칭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중앙 행정기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들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2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2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2010), 441;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2009), 500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2008), 542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10.25.결정, 2007카합1082, 교환사채발행회사가 교환대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교환사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하기로 약정한 것을 유효한 의결권구속계약으로 판단.

사단법인으로의 설립신청을 함에 있어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검토의견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인 상호(相互)간의 식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법인단체'는 동 조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법인사단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해석론상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27]

○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법인격 취득 유무와는 관계없이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으로서 법인설립과 관련된 민법등과는 평면을 달리하는 법이라는 점, 민법상의 법인은 '등기'를 통하여 공시되는데 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주무장관 등에게 '등록'을 할 뿐이어서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상법」 제23조·「변호사법」 제44조·「의료법」 제42조 제3항 등과는 달리 민법상 법인의 경우 명칭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비법인단체'에게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26) 예컨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27) 민법총칙, 백태승, 법문사, 2000년, 205쪽; 김상용, 법문사, 1999년, 277쪽;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5년, 91쪽

31. 공익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의요지

○ **공익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의견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8] 한편 보통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추진 및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 만약 기본재산을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는 허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은 그대로 둔 채 그 운용수익을 보통재산으로 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장기 존속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질의하신 장학재단이 설립자의 뜻대로 현금 10억원 전부를 보통재산으로 하여 바로 장학금 지급에 사용한다면 재단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원(財源)은 곧 소멸하게 될 터인데, 애초 법인의 한시적 존속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배치되는 결과일 것입니다.

○ 한편 기존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중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하는 규정일 것입니다.

○ 결론하면, 장학금 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을 지속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계획 등을 모두 고려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서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28) 노행남,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련된 판례의 동향”, 재판실무연구, 권호 2001(2002년), 광주지방법원, 61쪽

32. 해산관련 질의 회신

(2008.11. 평생학습진흥과)

□ 질의요지

○ **재단법인 대진문화장학재단의 설립 모체인 "종단대순지리회성주회"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 "중원대학교"를 개교하면서 장학재단 해산 후 그 기본재산을 중원대학교에서 인수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검토의견

○ 공익법인(장학재단)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해산할 수 있으며(대진문화장학재단 정관 제33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귀속(대진문화장학재단 정관 제34조)됩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 또는 무상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 설립한 중원대학교는 재단법인 대진문화장학재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장학재단의 해산 후 잔여재산은 사립대학에서 인수하여 운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3.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범위?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받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설립허가권을 별도로 위임받지 않았을지라도 설립 허가 가능한지?

(법무법 1498, 62.4.25 대 : 상공부장관)

□ 질의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범위 여하

□ 답변

○ 비영리법인 중에는 국가에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것도 있으며, 또한 학술, 종교, 자선, 기타 미명하에 부정을 획책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통일된 입장에서 일정한 기준 하에 그 설립의 가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는 법인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동조에 규정된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함

□ **질의 :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허가권을 별도로 위임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등 지방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코자 한다면 법률로 각 중앙행정관청의 허가권을 지방행정관청에 위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지방행정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34.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은?

□ **질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각호에서 각각의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

□ 답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각호에서 각각의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음

① 제1호의 경우 : 교육인적자원부

② 제2호의 경우 :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각 부처

③ 제3호의 경우 :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각 부처

④ 제4호의 경우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타 부처

⑤ 제5호의 경우 : 문화관광부

35. 공익법 시행령에는 그 이외의 사업의 한계는?

□ 질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의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에서 "그 이외의 사업" 의 사업의 한계

□ 답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그 이외의 사업" 의 의미를 보조 사업으로만 한정할 만한 특별한 단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한 각호의 사업을 위시하여 동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비영리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36. 정관에 "문화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장학사업이 아닌) 등의 사업" 을 학습과 관련된 목적사업과 정관승인 가능 여부?

(진흥 81701-144, 97.3.6. 대 : 충청남도교육감)

□ 질의 :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의 정관에 "문화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장학사업이 아닌) 등의 사업" 을 학술과 관련된 목적사업과 함께 정관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인할 수 있다면 법인에서의 학술과 관련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여부

□ 답변

○ 위 법인의 주된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관장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부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음. 다만, 1개의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설립허가시의 주된 사업이 설립 후에도 타부처의 사업에 비하여 계속 주된 사업의 위치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즉 위 법인의 주된 사업은 학술로 보아야 하며, "문화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업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실정에 따라 일정비율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음

37. 특수교육기관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 특수교육기관을 어린이육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법무 02143-296, 92.6.4. 대 : 학교법인 제주교육학원이사장)

□ 질의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라 볼 수 있는 바, 교육법 제85조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의 특수교육기관을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불행, 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을 운영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신장애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7호 후단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교정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수교육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선사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수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7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38. 비영리사단법인 사업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법무부 2006.08.)

□ 질의: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 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사적자치의 원칙 아래 공익성을 보장하여 그 본래의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은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동법이 정하는 범위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법상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신규 설립하는 법인의 사업 목적에 동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동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함

○ 다만, 사안에서 "불우아동 무상교육, 청소년 선도,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 사업이 동법 제2조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이 판단해야 할 부분임

○ 한편, 이미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동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려면 단순한 정관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법인으로서의 설립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할 것임

39.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에 관한 질의?

(법무부 '61.5.5. 대 보건사회부장관)

□ 질의 :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절차에 관한 질의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는바 동 법인의 사업목적이 양부의 관장에 있을 때 동 설립허가는 그 양부 중 어느 한 부의 허가만 얻으면 되는지 또는 양부 공동명의의 허가를 요하는지 귀견 여하

2. 위 설립의 경우(양부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이미 어느 한 부에서 허가를 부하였을 때 다른 한 부에서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는가? 만일 허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무처리 방법 여하
3. 관광호텔협회 사단법인 허가에 관하여 관광사업의 관장 부는 교통부이므로 동부에서 이미 사단법인체로 허가 하였는바 호텔 영업허가 사무는 보건사회부 관장 사항이라 하여 다시 동일한 정관으로 사단법인 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처리할 것인지 귀견 여하

□ 답변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양부 관장에 긍할 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가 양부인 때에는 양부장관 공동 명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귀문의 경우에는 양부의 공동 명의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지만 어느 한 부에서 그 주관 사항에 관하여 이미 허가를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한 부에서 다시 동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3. 귀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의 성격상 양부 공동 명의의 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동 법인의 사업을 주관하는 다른 부에서 동 법인의 설립 허가를 이미 하였다면 귀 부에서 다시 위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필요는 없고 위 법인의 호텔 영업허가의 여부만 결정하면 될 것이다.

40. 법인 통합인가와 관련한 질의?

(법무 810-22181 '72.10.11. 대 문화공보부장관)

□ 질의

○ 재단법인 한국문화협회와 동 부산영원은 서로 합병할 것을 의결하고 당국에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은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하였으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위기일 내에 설립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귀 문의 경우 주무관청은 위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41.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일정액 확보 기준에 관한 질의?

(사회 25630-219 '91.5.20. 대 대구직할시교육감)

□ 질의

○ 공익법인에 관한 관련법규에는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규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허가 청에서 일정액을 허가기준으로 정할 경우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

□ 답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기준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법 제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청에서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적립토록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음

42. 농지(전, 답, 과수원)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사회 1732.53-18, '77.2.21. 대 전라남도교육위원회)

□ 질의

○ 농지(전, 답, 과수원)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

□ 답변

○ 농지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17조 규정의 농지의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행위를 할 수 없다는 농지자경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지는 현금, 주식 등 동산의 수익성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농지를 기본재산으로 한 법인설립은 당부 방침상 불허하고 있어 이는 불가능

43. 공익법인이 농지를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기본재산으로 증자?

(사회 1732.53-18, '77.2.21. 대 전라남도교육위원회)

☐ 질의

○ 기존 공익법인이 농지를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 기본재산으로 증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 기존 공익법인에 대한 농지의 기본재산 증자여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27조, 동시행령 제11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으로 보아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독지가가 기부하려는 농지를 매매하여 현금이나 주식, 건물 등으로 기존 공익법인에 기부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능함

44. 농지를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하여 경작할 경우, 농지개혁법에 저촉

(사회 1732.53-18, 77.2.21. 대 : 전라남도교육위원회)

☐ 질의

○ 기존 공익법인이 농지를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하여 경작할 경우, 농지개혁법에 저촉을 받는지의 여부

☐ 답변

○ 공익법인이 농지를 소작·임대차 위탁경영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저촉됨

45.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에 관한 질의?

(교육과학기술부 2008 질의답변사례집)

☐ 질의1

○ 한국 ㅇㅇㅇ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 41개 언어치료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협회는 언어치료사들의 자격에 관한 질적 향상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주목적으로 4,000명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와 1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협회는 보다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고자 하였으나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협회의 허가를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1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사 관련 사단법인의 설립은 언어치료사 자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언어·청능치료사의 공인 민간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법인설립허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2

○ ㅇㅇ시 교육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실제로 급식비 지원이 시급한 학생이 ㅇㅇ시 교육청에서만 매년 3,000여명이나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식하여 중식시간에는 급식하는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생활지도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역 기관장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님과 시장님 그리고 독지가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모금하여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과 시청에서 각각 10억원씩, 독지가가 5억원을 법인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중식지원이 필요

함에도 법정요건 불비로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학교급식ㅇㅇㅇ”이라는 공익법인(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설립허가 주무관청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 학교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민법」제32조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자선’사업에 해당되고 ‘자선’사업에 관련된 모든 법인 설립허가는「정부조직법」제39조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며 업무의 성격상 교육과학기술부(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교육청)는 권한을 벗어나 허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견해
2. ‘을’설 :‘자선’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어 허가하지 않고 자선사업의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이 2개 이상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학기 중에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의 주무관청은 학교급식비 지원의 주된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권한 위임받은 시·도교육청)라는 견해

□ 답변2

○ 현재 학생급식비 지원 기관이 교육청(학기 중)과 자빙자치단체(결식아동, 방학기간 중 토·공휴일)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인 설립의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모두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ㅇㅇ법인의 지원대상자가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된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허가 시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3

○ 저는 ㅇㅇ미술치료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ㅇㅇㅇ(ㅇㅇ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입니다. 저희 학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 학회는 1,000명 이상의 회원이 ㅇㅇ시에 주 사무국을 두고 16년째 활동하고 있는 전국규모의 학회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 ㅇㅇ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언어치료사 관련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임을 이유로 ㅇㅇ시청으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ㅇㅇ시청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본 학회가 학술단체이므로 교육청으로 신청하라고 하여, ㅇㅇ시교육청으로 다시 접수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자가 바뀌었고, 바뀐 담당자는 전임자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신청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3

○ 치료서비스 분야 자격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언어, 청능치료사 관련 국가공인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 하는 것으로 조정(07.12.21.)된 바 있으나, 그 외 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합의, 결정된 바가 없어, 부처 담당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회의 경우 학회의 목적과 학술대상에 따라 소관이 결정될 것이고, 이 경우 미술치료를 교육적인 측면으로 볼 것인지, 치료의 측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사업목적이 복수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법인의 관리?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교육정책과-976. 2007.4.6. 대 법무부)

□ 질의1

○ 비영리법인을 2개 부처에서 허가를 한다고 할 경우 허가증 관리 부처, 지도·감독 부처 등 세부적인 법인 관리 방안은?

1. A 주무관청의 경우 법인 목적 중 A 주무관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하는지?(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나, 관련규정 준수 여부, 회계처리 등은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2. 허가증 교부 부처 및 교부 방법
3. 지도·감독의 중복여부 및 책임소재 등

□ 답변1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또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고(민법 제32조, 이하 '민법' 생략),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이 복수의 관청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각 관청이 모두 주무관청이 되므로 각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함. 또한 법인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제37조), 감독 사무의 범위는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 불비 여부를 포함하며(제67조 제3호),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설립을 취소(제38조)할 수도 있음. 당해 목적사업을 규율하는 법령의 소관관청 역시 설립허가 관청과 동일하므로 당해 목적사업을 검토하여 설립을 허가한 관청이 그 목적사업에 대하여 각 지도·감독 토록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타당하며, 특별히 지도·감독의 중복 여부 및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많지 않음.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허가증을 교부함

□ 질의2

○ A 부처에서 허가를 얻어 비영리 법인을 일정기간 운영 후, 필요에 의해 B 부처에 해당되는 목적을 추가할 경우의 처리 방법은?

1. B 부처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인이 직접 B 부처에 허가 요청을 하는 것인지?
2. B 부처에서 허가를 해줄 경우 A 부처 허가증 외에 별도로 허가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B 부처의 지도·감독 범위 등 세부 방안은?

□ 답변2

○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 목적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다른 관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현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42조제2항), 그 후 추가된 목적사업 소관 관청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 각 부처는 독자적으로 허가증을 교부하므로 추가 목적사업 소관 관청도 별도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 추가 허가 관청의 지도·감독 범위에 관하여는 위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과 같음.

47. 해산한 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질의?

(문기회 810, '65.8.25. 대 보통교육국장)

□ 질의

○ 민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법원이 검사·감독하므로 해산한 재단법인의 청산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기본재산의 일부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바 귀견 여하

□ 답변

○ 귀 견과 같습니다.

48.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에 관한 질의?

(교육과학기술부 평생81700-376, '03.6.18. 대 경상남도교육감)

□ 질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의 정관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군(기조자치단체로서 가칭 “사단법인 ㅇㅇ군교육발전위원회”에 향후 5년간 상당액을 출연할 계획임) 또는 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교육청 중 어느 기관으로 함이 적법한지의 여부

1.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 또는 자빙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산법인의 귀속 잔여재산을 관리,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 귀속재산의 관리주체 및 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경상남도교육청이므로 귀속재산의 관리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잔여재산을 귀속하여야한다는 견해

2. 법인의 주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해당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군(기초자치단체)으로 하여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다는 견해

□ 답변

○ 동법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확히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라고 기재하여 허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49. 사무소 소재지 변경 범위(최소행정구역)?

(2007.7.2. 공탁상업등기과-725 질의회답)

□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무소의 소재지'(민법 제40조 제3호)는 어느정도 범위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

○ 유권해석 대상 규정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회신(결론) : 최소행정구역설**

○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법인 내부의 규범으로서, 민법 제40조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 또는 해산시기 등 법인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무소라 함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기재하여야 함은 명확하나, 정관은 법인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정하는 자치법규 내지 근본규칙이므로 법률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법인의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정하는 정도면 족하고,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상 편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특히 사회가 복잡다기화 되어 분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법인이 수시로 사원총회 및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관상 분사무소 소재지를 행정구역 범위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그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예규 및 법인등기 선례[29]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분사무소 등기 신청시 최소행정구역설의 입장에서 정관상 최소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등기신청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것임

○ 상법상 회사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바(상법 제289조), 이 때 '소재지'의 해석론으로도 최소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만을 표시하는 정도로 족하고 동명과 지번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음.[30]

○ 최소행정구역설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송달 등 의사전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원의 법인등기 실무상으로는 분사무소 등기신청시 정관변경허가서 첨부에 관하여 최소행정구역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등기부의 공시력을 감안하여 실제 법인등기부에는 사무소의 지번, 동·호수까지 정확히 신청받아 사무소의 주소를 공시하고 있어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충분히 공시되므로, 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하여 의사전달,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임

○ 법인이 분사무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분사무소 설치는 등기사항으로 해당 법인은 미등기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뿐 아니라(민법 제97조 제1호, 제50조 제1항), 해석론상으로 법인이 분사무소의 존재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어 법인 스스로 미등기에 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됨

○ 결론적으로, 최소행정구역설을 취하더라도 법인등기부를 통하여 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의사전달 및 지도·감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최소행정구역설이 타당함

---

29) 등기예규 제604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법인등기 선례 2007.7.2. 공탁상업등기과-725 질의회답

30) 손주찬, 정동윤, 주석 상법(회사Ⅱ), 81쪽

※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민법상 사단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604호 참조)
2.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2조). 그러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0. 법인설립 시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 법인설립 시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 교육규칙 제4조①-3에 의하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은 물론 영리법인, 특수법인 등의 명칭과도 동일하면 안된다고 해석됨
- 상법 제22조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①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영리법인과의 동일한 명칭 사용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51.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일?

○ 최초 임원의 임기

-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므로 법인 최초의 임원 임기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 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52. 법인의 사무실 및 상근임직원에 대하여

○ 법인의 사무실 및 상근임직원

- 법인의 사무실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목적사업 수행 등 법인의 운영을 위해 상근임직원이 있어야 함.

53. 주무관청의 범위에 관한 질의

(법무부, ′62.04.25 대 상공부장관)

□ 질의

①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범위 여하

②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도 법인 설립허가권을 별도로 위임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① 귀 문의 경우 주무관청이라 함은 각 중앙행정관청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함

② 귀 문의 경우 지방행정관청은 법률의 위임 없이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없음

54.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설립가능?

(법무부 2007.7.30.,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 공익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공익령 제12조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공익법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다만,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

55. 동일한 명칭에 관한 질의

(법제처 2006.04.21.,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질의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①-3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①-1 및 2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4조①-3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음

○ 그 사유는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①-3의 규정(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5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585, 2014.03.06.)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칭)「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연구원」의 법인 명칭이 「평생교육법」 제4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어떤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것은 당해 명칭을 일반인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가칭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연구원」은 교육부 출연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오인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7. 공익법인 청산인 보수 부담 주체

(법무심의관실-10343, 2015.09.07.)

□ 질의내용

○ 민법 제83조에 따라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시 청산인의 보수를 당해 법인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당해 법인의 주무관청과 법원 중 청산인 보수를 부담하여야 할 주체는 어느 기관인지

□ 검토의견

【청산인의 보수는 민법 제80조의 잔여재산으로 충당됨】

○ 당해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근거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인 점으로 보아 당해 법인은 공익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바, 공익법인은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법인의 해산·청산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됨

○ 민법 제80조의 "잔여재산"이란 법인 해산 당시 존재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종료한 후 잔존한 법인의 적극재산을 의미함

○ 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 및 제77조에 따라 법원은 법인 해산 시 회사로 하여금 청산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경우 제3자가 아닌 법인을 청산인 보수 부담 주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

○ 청산인은 본래 법인의 이사의 지위에 상당한다고 봄이 일반적이고,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6조제1항) 청산인 역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및 제77조에 따라 법원이 회사로 하여금 청산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청산인과 법인 사이에 청산사무처리에 대한 보수 지급약정이 있고 법원에 의해 청산인 보수 부담 주체가 법인으로 정해진 경우, 청산인의 보수 역시 청산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청산인의 법인에 대한 채권인바, 청산인은 직접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의 채무 변제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청산인 보수는 법인의 재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산인의 보수를 주무관청이나 법원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나 법원을 그 부담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민법에 규정된 청산절차 외에 법원의 청산 선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 아님 】

○ 법무부는 민법상 규정된 법원의 청산인 선임 요건, 법원의 청산인 선임이 요구되는 경우 등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것이지 법원의 청산인 선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 아님

○ 따라서 법원의 청산인 선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법원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8. 공익법인의 공동이사장 가부 및 특정 동창회장의 당연직 이사장 취임

(법무심의관, 2015.10.)

□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동이사장제 도입이 가능한지, 특정 동창회장의 당연직 이사장 취임이 가능한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②(생략)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 공동이사장제 가부: 가능 】

○ 공익법인의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됨(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

○ “호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를 의미하는 바,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 중에서 2인의 공동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정관은 법인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공익법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이사장은 1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동이사장제를 규정한 정관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이사장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고, 상법 상 “공동대표”란 법인 외부에 대해 법인을 대표할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상법 제208조의 준용 여부는 사안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 특정 동창회장의 당연직 이사장 취임 가부: 불가능 】

○ 검토한 바와 같이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를 의미함

○ 즉, 이사장 선임에 관한 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의 취지는, 특정한 사람들인 이사들이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골라 뽑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정관의 당연직 이사장 선임 규정은 이사들의 이사장 선출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특정 동창회장을 공익법인의 당연직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정관의 규정은 공익법인의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59.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증여

(법무심의관-12991, 2015.11.12.)

□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이 민법 상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변경될 경우 주된 주무관청의 변경이 가능한지

□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 민법 상 비영리법인 전환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

○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공익법인법 제1조), 조세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대신 임원의 취임, 기본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민법 상 비영리법인과 차이가 있음

즉, 공익법인 제도의 취지는 공익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일정한 특혜를 인정하는 대신 법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해 법인의 설립 목적을 유지시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고하는 데 있음

특히,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주체 및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상(공익법인법 제13조), 법인 해산 시에도 공익법인의 재산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달리 공익 목적 외 사용·처분 등이 제한됨

민법 상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제3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민법상 비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한다면 공익법인에 공여된 재산을 출연자 또는 이사 임의로 유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현행 법제 상 공익법인을 그대로 민법 상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고, 다만 기존 공익법인을 해산하고 새로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의 주된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음 】

○ 공익법인 설립 시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주체가 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위 규정의 취지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관리·감독 주체를 주된 사업 소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 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이 영속적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려움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0조), 주된 사업 소관 주무관청이 주된 주무관청이 되므로(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정관 변경으로 주된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도 변경될 수 있음

60. 기본재산 증가에 따른 정관변경 관련 법령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2014.12.)

□ **질의내용**

○ 기부에 의해 공익법인이 취득한 재산을 성실공익법인 지정 여부 확인(실제 재산 증가액 확정) 후 편입해야 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미 기본재산에 편입되었음 】

○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공익법인법 제11조 제1항),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에 해당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본 건 출연재산은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다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원칙적으로 이미 기본재산이고, 별도의 기본재산 편입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

※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은 공익법인이 신속히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한 것이지, 정관변경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기부받은 재산이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

【 기본재산 증가에 따른 정관의 변경 허가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됨 】

○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의무적으로 송인이 필요한 '인가' 와 달리 '허가' 처분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됨

※ 대법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는 판시(대법원 84누509호 판결) 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 사항임

○ 본건에서 D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즉시 정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관변경의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판단할 “재량사항” 임

- 성실공익법인 지정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기부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포함하는 정관 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다만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 정관상 재산보다 적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어 재정상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성실공익법인 지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과 협의하여 증액이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본재산을 증액하는 정관 변경을 허가할 수도 있고, 기본재산 증액 금액이 확정된 후 정관변경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61. 금융위원회(유사수신행위법 관련) 유권해석

(금융위원회-1289, 2017.09.21.)

□ 질의내용

○ 상조회 운영방식(해당법인 상조회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

1. 대상 : 해당 비영리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함
2. 자금 운영 : 상조회 자금은 금융기관에 여치 및 국채 증권, 지방채 증권의 구입 또는 수익사업의 투자
3. 상조금 지급 : 상조금은 시중 3개 대표은행 정기예금금리 + 정기예금금리의 10%로 분기마다 조정하는 자동연동제로 시행

○ 위 비영리 사단법인 상조회의 운영형태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에 의거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비영리법인 회원도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말한 불특정다수에 해당하는가? (2017. 8월 현재 전체회원 14,335여명 중 상조회 회원 4,824여명)

○ 만약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향후 해당법인 또는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이 위와 같은 운영형태로 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 **질의회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에 따른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질의한 내용만으로 동법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다만, 대법원은 '조달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13.11.14. 선고 2021도 6674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21도4640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다수 참조),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를 은행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다는 점(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9654 판결)을 참고 바람

62. 공익법인 잔여재산 귀속주체 관련 법령해석 1

(출처 : 법무심의관실-4844, 2014.5.13.)

□ **질의내용**

○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 잔여재산 귀속기관을 '충청북도'로 변경하는 신청이 있으면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하는지

□ 질의검토

【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는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나, ‘교육청’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귀속주체로 정함이 상당함 】

○ 공익법인법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2조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에는 교육청보다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규정상 상당함

○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장학, 교육, 학술 등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교육이라면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잔여 재산도 그 관리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임

【 변경신청에 따라 정관변경을 해 줄 의무는 없으나, 주무관청에서 구체적으로 사정을 검토 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정관변경 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행위이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해 줄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대법원은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라고 판시(대법원 84누509호 판결)

○ 다만, 주무관청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63. 공익법인 잔여재산 귀속주체 관련 법령해석 2

(출처 : 법무심의관실-13088, 2014.12.19.)

□ 질의내용

○ 공익법인 해산 시 재산의 귀속주체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로 제한되는지, ②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시・시・군・구) 모두가 포함되는지

□ 질의검토

【 공익법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

○ 공익법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정관에서 정하는 잔여재산이 귀속 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규제이므로, 명백한 근거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판단함이 상당한데,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등은 지방자치단체임

○ 다른 주무관청 소관 법인과 달리 교육부 소관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주민자치행사·축제 등 활성화를 위해 소위 '문화재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 조례 및 정관으로 재산의 귀속주체를 이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주무관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를 포함하는데 교육부 소관 법인의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별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함

○ 교육감이 관리주체이므로 교육감이 관장하지 않는 시·군·구는 잔여재산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장학·교육 등 관련 법인의 관리·감독권은 원래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나,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등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임
- 그런데 교육감이 이러한 권한도 대부분 조례에 따라 교육장(시·군·구 단위)에 재위임 되어 관리 감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교육감이 관리·감독 주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감 소관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64.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 관련 질의

(출처 : 법무심의관실-7949, 2013.08.14.)

□ **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에도 출연가능한지 여부

□ **질의검토**

【 공익법인은 재산을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수 있음 】

○ 공익법인 및 동 시행령은 공익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음
-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하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도 출연 가능함
-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 등으로 취득되고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통재산의 처분방법에 대하여 공익법인법 및 동 시행령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보통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함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신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에 대한 규정이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님

-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운용소득 포함)을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이러한 출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산세 등 과세 관련)는 과세관청 등에서 판단할 별개의 문제임

65.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서명날인 대상자

(법무부 홈페이지 제4630호 2005.7.5)

□ **질의**

○ 공익사단의 정관에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규정이 누락되어 새로이 정관을 변경할 때 회의록 서명과 관련하여 아래 조항을 신설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관 제22조제3항 : 총회 회의록에는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이사가 서명날인한다.
- 정관 제26조제5항 :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이사가 서명날인 한다.

○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할 때, 민법76조에 의하면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총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장 및 2인의 이사가 서명해도 되는지 여부

○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도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하는지 의장 및 2인의 이사가 서명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 민법 제76조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의 벌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의 성격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정관은 본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법상 사원총회의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회의록의 경우에도 총회회의록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6. 기본재산 임의처분 법인 고발 방법

□ **질의**

○ 기본재산 임의처분 법인 고발 방법

□ **답변**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위반과 「형법」 제356조 위반(업무상의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조치 한다.

○ 공익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3년이나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중(重)한 형(刑)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 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

67. 부동산 출연(기부)시 가격평가

□ **질의**

○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액을 재산가격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 답변

○ 부동산은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출연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증여나 상속에 의한 재산의 취득은 반드시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증여나 상속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상증법 1조내지2조) 다만, 상증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 가세과액 불산입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서 공익법인등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상증법 16조, 48조).

○ 공익법인에 출연(기부)된 재산은 정관에 등록되어야만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출연금이나 기부금 등을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는 취득당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한다.(공익령제24조)

○ 재산의 평가는 부동산(상증법 제61조, 상증령 제50조), 주식등 유가증권(상증법 제63조, 상증령 제53조·제54조·제58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상증법 제66조) 평가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출연재산의 가격을 상증법에 의한 재산평가외에도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격평가도 인정하고 있으며,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상증법에 의한 재산평가액보다 높게 평가됨에 따라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재산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68. 당연직 이사의 임기 기산일

□ 질의

○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허가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득한 날(인사 발령일 등)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 답변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소급할 수 없다.

69. 기본재산 주식에서 발생된 무상주 처리 방법

□ 질의

○ 기본재산 주식에서 발생된 무상주 처리 방법?

□ 답변

○ 무상주는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당된 주식이므로 일종의 배당소득이다. 따라서 무상주는 기본재산의 과실소득에 해당하므로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증자를 하여야 한다.

○ 보통재산으로 처리할 경우 매각하여 그 대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기본재산으로 증자를 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증자를 할 경우에는 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며,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 시가(공익령 제24조)에 의한다. 시가는 증자 시점의 시가를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문제는 주식의 경우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에 증자 시점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이다.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 정관상의 재산목록 표기시 주식명이 같으나 취득단가가 다르므로 별도 항목으로 표기 관리한다.

70. 이사정수의 과반수에서 “과반수”의 의미

(법무부 홈페이지 제5209호 2005.6.28.)

□ 질의

○ 정관상 이사의 정수가 ’5인’에서 ’10인’이고, 재적이사의 수가 5인일 경우 이사정수의 과반수는?

□ **답변**

○ 본 사안의 법인 정관에 이사의 정수를 10인으로 하고 있고, 이사의 선출을 이사정수(재적이사의 수가 아님)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사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 본 사안 법인의 이사는 5인이므로 이사의 정원이 부족하여 이사 선임결의가 불가능하며,

○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71. 비영리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관한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3154 2006.11.23 대 법무부)

□ **질의**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 목적에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예 : 불우아동 무상교육, 청소년 선도,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공익법인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아래 공익성을 보장하여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여 동법이 정하는 범위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법상 공익법인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신규 설립하는 법인의 사업 목적에 동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동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함

○ 다만, 사안에서 “불우아동 무상교육, 청소년 선도,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 사업이 동법 제2조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주무관청이 판단해야 할 부분임

○ 한편, 이미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동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려면 단순한 정관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법인으로의 설립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할 것임

72. 기부행위(임원 취·해임) 해석에 관한 질의

(법무부 1957.3.2 대 문교부장관)

□ **질의**

○ 재단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임기를 선임일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 문교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기산한다고 사료 되는바 귀견 여하

○ 재단법인 기부행위에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최초부터 결원이 있을 때에도 본 조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귀견 여하

○ 재단법인 기부행위에 「임기 전에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자진사임의 경우에도 본 조를 적용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귀견 여하

□ **답변**

○ 모두 귀견과 같음

73. 임원 임기에 관한 질의

(기획 811-73 1969.1.20 대 대한교육연합회장)

□ 질의

○ 1967.11월 개최된 대한교련 대의원 대회에서 부회장의 선출은 대회 사정에 의하여 보류되어 동 정관 제27조에 의하여 임기만료된 전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1968.11.14까지 집행하여 왔는바 1968.11.15선임 보류되었던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 동 부회장의 임기는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년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동조 단서규정에 의한 결원 보임으로 보아 1년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

□ 답변

○ 대한교육연합회 정관 제26조에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는 2년, 감사는 1년으로 한다. 단, 감사 중 1명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임 선거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68.11.15 선출된 부회장의 경우 동 정관 제26조 단서 규정에 의한 결원보임이 아니며 이는 선출 보류되었던 임원에 대한 새로운 선출행위이고 전임부회장은 임기만료 된 부회장이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후임 부회장의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968.11.15 선출된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74. 임시이사가 선출한 임원의 취임승인에 관한 질의

(법무 810-328 1975.8.30 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 질의

○ 재단법인의 이사정수 7인중 5인이 임기만료로 결원이 되어 민법 제63조에 따라 1975.7.9 법원에서 임시이사 5인을 선임한 바 있고, 위 임시이사로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1975.7.28자로 이사 5인을 선출하여 감독청에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한 경우

○ 이사 2인이 1975.7.31자로 위 법인의 위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또한 임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도 이사취임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 2인이 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점하고 있어서 이사장 직인의 날인 없이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사인만을 날인한 이사 취임승인 신청서(이사회 회의록 정본 첨부)의 효력 여부

□ **답변**

○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참조) 임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처분이 없는 한, 임시이사들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출하여 감독청에 그 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취임승인 할 수 있다고 본다.

○ 귀 질의의 경우 이사 취임승인 신청서에 법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는 법인 명의의 신청서로 보지 아니함이 가할 것임

75. 가처분으로 제3자의 이사 직무대행에 관한 질의

(법무부 1955.8.19 대 문교부장관)

□ **질의**

○ 법원에서 가처분으로서 재단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동시에 제3자로 하여금 이사 직무를 대행케 하였던 경우에 이는 소위 가이사인가?

○ 직무대행 이사의 수는 동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정한 이사정수에 충원될 것인가?

○ 과거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감독청에 인가신청 중 동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 대다수가 그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때에 있어서 감독관청은 이를 인가할 수 있는가?

□ 답변

○ 가처분 결정으로서 법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동시 법원으로부터 선정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가 이사가 아니며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임시적으로 이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이다.

○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정수에 충당된다.

○ 직무 집행정지 전의 이사 등의 행위에 의하여 신청 중인 안건에 대하여 감독관청은 직무대행 후에라도 인가할 수 있다.

76. 회의의 표결성립 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 1955.8.1 대 문 교부장관)

□ 질의

○ 위원 10인으로 구성되며 개회 정족수는 7인 이상이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 위원회에서 위원 9인이 출석하여 회의가 성립하여 모 안건에 관하여 표결하자는 의견과 토의 표결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여 논쟁 중 의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선언하였던 바, 이에 반대한 위원 1인이 퇴장하고 그 후 같은 위원 3인이 표결에 반대하며, 또 퇴장함으로써 잔여 출석위원 5인만으로 표결을 실시한 바 의장은 전기 퇴장위원 3인을 기권으로 인정하여 출석위원 8인 중 이에 “찬성 5” “기권 3”으로 가결 처리하였음

○ 안건을 표결에 부하는 여부를 토의 중 의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선언함은 유효한가?

○ 출석위원 3명이 표결에 반대하여 퇴장한 경우에 ①회의성립 요건인 정족수 7명에 미달한 바 5명만으로 투표할 수 있는가? ②이를 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귀견 여하

□ 답변

○ 회의석상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하는 여부에 관하여 토론 중 의장이 토론 종결 전에 일방적으로 표결을 선언함은 무효이다.

○ ①회의정족수 미만의 인원수로는 표결할 수 없고 ②표결 전에 퇴장한 위원은 기권자도 아니며 유효 표결 수에 산입할 수 없다.

77. 이사회 소집에 관한 질의

(법무부 1960.4.26 대 문교부장관)

□ **질의**

○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여 임원의 진퇴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기관인 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발함에 있어 이사 1명이 범죄모의로서 구속 중이라는 사유로 동인에게 소집통지를 발함이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이사취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에 위 결의는 법인 이사회의 결의로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귀견의 여하

□ **답변**

○ 재단법인의 이사는 민법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권의 내용으로서 법인의 이사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므로 정관에 별단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발함이 없이 개최된 이사회는 적법이 소집되고 구성된 것이라 인정하기 난하고 따라서 동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사료된다.

78. 이사장 선정 및 이사회 소집권자에 대한 질의

(법무부 1957.11.19 대 문교부장관)

□ **질의**

○ 재단법인 기부행위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13조에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명을 선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의 이사의 호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귀견 여하

○ 전설 "이사의 호선"이라 함은 정식으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이사장을 선거함을 의미하며 사실상 이사 전원이 한 장소에 집합하여 이사장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 후설은 「이사장의 호선」이라 함은 사실상 이사전원 또는 과반수가 한 장소에 집합하여 이사장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사장 선정에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만일 후설을 취한다면 반드시 이사 전원의 집합과 찬성이 필요한지 불연이면 과반수의 집합과 찬성으로도 가한 것인지의 여부

○ 만일 전설을 취한다면 현행 기부행위로서는 이사회 소집권자의 결여로 영원히 이사회를 소집할 방도가 없는 바 그 구제방도 여하

□ 답변

○ 이사장은 소정절차에 의한 이사회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전원이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목적하에 집합하여 이사장을 호선할 수도 있다.

○ 일부 이사의 태만 기타 고의에 의한 불협력 등 사유에 인하여 이사 전원의 집합을 기대할 수 없고 또 그대로 방치하면 재단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67조에 의한 감독권을 발동하여 전 이사를 집합시켜 이사장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79. 이사회 의결권 위임에 관한 질의

(법무부 1952.12.24 대 문교부장관)

□ 질의

○ 재단법인 기부행위에 이사회의 의사는 현원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의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사는 타 이사 또는 제삼자를 이사회에 대리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답변

○ 이사는 재단법인 기부행위에 금지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타 이사 또는 제3자를 이사회에 대리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80. 총회 소집에 관한 질의

(법무 810 1978.3.8 대 체육국장)

□ **질의**

○ 사단법인 대한기도회의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의 후임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구 이사들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감독청에 총회소집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 해당법인은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감독청은 총회소집 승인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81. 국가공무원이 이사로 취임할 때 특수관계에 대한 질의

(문교부 사회1070-353 1976.6.15 대 서울시교위)

□ **질의**

○ 국고보조금에 의한 자금으로 공익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답변**

○ 국가가 출연한 법인의 임원에 국가공무원이 취임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82. 법인의 조건부 임원 취임에 관한 질의

(문교부사회1070-235 1978.6.21 대 전북도교위)

□ 질의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은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원조사 결과 통보 전에 조건부로 임원 취임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중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신원조사 결과 통보 전에 조건부 임원취임 승인이 가함

○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법인 임원은 동 조사통보 후 임원취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동 신원조사 소요기간으로 인한 법인 업무처리 마비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건부 행정행위로서 신원조사 통보 전에 임원취임 승인을 하는 것이 능률적 업무수행에 기여한다고 사료됨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중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어 첨부하지 않음

○ 이는 임원취임 승인에 따른 본인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됨

83. 가이사 직무 권한에 관한 질의

(법무부 1958.9.19 대 문교부장관)

□ 질의

○ 법원에서 선정한 가이사 전원과 재임 중 이사인 학교장이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 모여 의결한 모든 사항은 적법으로 보는데 귀견 여하

○ 위 회의 장소에서 그 중 1명이 퇴장한 후 의결한 것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권은 이사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위와 여한 의결은 불법이라는 견해와 가이사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것이므로 가이사

개개인이 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사 결여가 법인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 있을 경우에 이를 방지하고자 가이사를 임명한 취지에 비추어 위 이사 선임 등 의결행위는 모두 적법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귀견 여하

□ **답변**

○ 귀견과 같음.

○ 당초 전원이 동일 목적하에 동일 일시, 장소에 집합하였다면 회의는 성립된 것이므로 의결 시에 그 중 1인이 퇴장하였더라도 당초 회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을 의결하지 않는 한 유효함

○ 참고 : 민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84. 당연직이사 취임등기 신청 시 첨부할 서면

(대법원 등기 3402-256 1997.4.4 대 서울특별시교육감)

□ **질의**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어느 직에 있는 자가 임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직(당연직)에 있는 자에 대한 이사취임등기를 하려면 등기신청서에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서만 첨부하여도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 **답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당연직이사 취임등기를 하려면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서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면 되고 이사회회의록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

85. 감사가 소집한 이사회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질의

(법무부 1954.2.5 대 문교부장관)

□ 질의

○ 재단법인의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사가 소집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사가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에 출석치 않고 감사가 소집한 이사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 그 이사에 대하여 이사장은 해임, 직무집행 정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 이사회로부터 별첨 기부행위(정관) 예문 제19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고의로 이사회를 소집치 않거나 또는 상기 기부행위(정관) 예문 제15조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리를 지명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이사장도 이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고로 이사장이 고의로 감사가 소집한 이사회에 참석치 않을 경우 동 이사회는 임시의장 선거권과 이사장 파면 청구권을 가진다고 사료하는 바 귀견 여하

○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자의로 중도 퇴장을 하였을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사료하는 바 귀견 여하

□ 답변

○ 이사를 임기 전에 해임하는 것은 기부행위(정관) 예문 제17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이 이사의 해임 및 직무집행 정지의 신청을 주무관청에 할 수 없다고 봄

○ 이사가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볼 것이나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봄

○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으므로 감사가 소집한 이사회의 임시의장 선거권 및 이사장 파면 제청권 유무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음

○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퇴장하였을 때에도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없고 유회가 된다고 봄

86. 총회의 서면 결의에 의한 정관개정의 유효 여부

(법무부 1963.12. 대 건설부장관)

□ **질의**

○ 건설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협회의 정관에 의하면 정관의 개정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정관변경의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승인 신청한 개정 정관의 일부조항 개정에 있어서는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정원미달)로 인하여 서면결의로서 동 정관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고 후일 서면으로서 동 정관의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승인 신청하였을 경우 동 개정정관은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

□ **답변**

○ 귀 문의 경우 동 정관의 개정은 무효라고 사료 함

87. 분사무소 설치 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여부

(법심2301-14678 1985.11.21 대 농수산부장관)

□ **질의**

○ 주무관청에서 이미 허가한 사단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을 경우, 추후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등기를 할 경우에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필요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민법 제40조) 그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위 필요적 기재사항 중 “사무소의 소재지”라 함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모두 포함한 사무소 전부에 대한 소재지를 말하는 바, 귀부 질의와 같이 정관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정관에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귀부 질의의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함

88. 허가 없이 처분한 기본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소송 제기 여부

(법무810-3486 1972.2.15 대 보사부장관)

□ **질의**

○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주무관청은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 귀문의 경우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 민법 제43조 동법 제40조제4호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정관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정관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법 제45조 제1항, 동조제3항, 동법 제42조제2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정관에 정하여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

○ 한편, 민법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8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연된 재산은 성립과 동시에 재단법인에 귀속되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제공된 일정한 재산을 바탕으로 하여 관리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공익과의 관련성이 중시되어 동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고 규정하여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운영과 사무에 관하여 감독, 검사 및 감독관의 행사로서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주무관청이 감독권의 행사로서 재단법인의 해산 또는 해산후의 청산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재단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귀 문의 경우 주무관청이 직접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함

8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질의

(법심 810-168 대 보건사회부장관)

□ **질의**

○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효력 유무

□ **답변**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무효임

○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재산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하고(민법 제43조, 제40조제4호), 따라서 그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결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으로써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됨(민법 제45조 제3항, 1966.11.29 대법원판결 66다 1668호, 1969.2.18 대법원판결 68다 2323호)

○ 위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매매, 증여, 교환 등 계약에 의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에 의하는 경우나(1965.5.18 대법원판결 65다 114호,

1967.2.22 대법원 결정 65마 704호), 소송상 청구에 의한 경우도(1974. 4.23 대법원 판결 73다544호) 포함된다고 봄이 재단법인을 보호하려는 민법취지에 부합함

○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는 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효임

○ 참고 : 민법 제45조③, 제43조, 제40조④

90.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여부에 관한 질의

(법심 2301-17317 1988.12.21 대 문공부장관)

□ 질의

○ 다음 각 경우에 당해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부동산이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 법인의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무부장관에게 동 재산에 대한 증가보고를 하였을 경우
- 법인의 부동산이 등기부상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주무부장관에게 연도말 보고 시 기본재산목록에 동 재산을 포함하여 보고한 경우

□ 답변

○ 어느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음.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써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대법원 1969.7.23선고 67다 568판결, 1978.7.25선고 78다783판결, 1978.8.22선고 78다 1038, 1039 판결, 1982.9.28선고 82다카 499판결 등 참고)
- 본 건에 있어서 위 각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

9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한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3154 2006.11.23 대 법무부)

□ 질의 1

○ 기본재산인 예금(현금)을 유가증권(채권, 주식) 및 주식과 채권이 포함된 펀드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교환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 또는 동법 제11조 제4항을 적용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 책임으로 집행되는 고유 업무로 해석하여 허가 없이 변경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민원인(공익재단) 입장

- 기본재산(3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그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인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바, 최근 금리 인하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수익성이 있는 각종 금융상품(예금, 유가증권, 금융펀드 등) 등에 가입·투자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바,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를 적용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관리 책임으로 집행되는 고유한 업무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다.

○ 주무관청(교육청 및 교육부) 입장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정관의 준칙 등)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 신청) 4호에 의하면 정관 및 설립허가 신청시 재산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인 예금(현금)을 유가증권(채권, 주식)으로의 변경 및 주식과 채권이 포함된 펀드로의 변경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교환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의 변경에 의하여 수익의 증대 여부 및 기본재산의 감소 가능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과실금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부정 및 재산의 부당한 감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산을 성실하고 올바르며 적정하게 운용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이 경우 기본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음)

□ 답변 1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11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 이는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므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은 한시적 열거로 볼 수 없고, 사회관념상 통상적 관리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기본재산의 원형이 변경되어 재산의 감소 위험이 증대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동 조항을 한시적 열거로 보는 경우 공유물인 기본재산의 분할, 공익법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등의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

○ 따라서, 공익법인의 안정적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는 물론, 금융펀드에 가입하는 행위 역시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공익법인법 제11조 제4항이 규정하는 통상적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임

○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금이나 확정금리를 보장하지도 않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도 않으므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하여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이 큼

○ 한편,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주식, 채권,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질의 2**

○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재단법인(장학재단)으로 운영 형태만 바꾸고자 할 경우에도 일단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친 후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며, 해산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주무관청(교육청)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증여할 수는 있다.

○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해산한 사단법인의 교육청 귀속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 준비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차액만큼의 출연금 확보만으로도 재단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건부 허가 : 공익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동일 목적의 공익재단법인으로 형태를 바꾸기 위한 기본재산(준비금)으로 증여받는다는 조건으로 허가)

○ 갑설 :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않다.

- 운영 형태만 바뀌는 것이라 해도 사단법인 해산과 재단법인의 설립은 별개로 보아야 하며, 해산 사단법인의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에 포함하여 인정해 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의 기본재산 확보 없이 설립 허가해 줄 수 없다.
- 을설이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 앞으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선례를 남길 수 있고, 재단법인 보다 기본재산 확보가 적은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보다 쉽게 기부금을 확보한 후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등의 편법 운영의 소지가 있음

○ 을설 : 설립허가가 가능하다.

- 법인의 설립취지, 사업목적, 사무소, 임원 등이 바뀌지 않고 단지 운영 형태만 사단에서 재단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교육청에 귀속된 해산 사단법인의 재산을 재단법인 설립 후 교육청으로부터 증여받아 등기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확보로 인정하여 설립허가가 가능하다.
- 위 질의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된 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질의배경

○ 가칭 “달성고동창장학회”라는 장학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익법인 기본재산 확보 기준금액(사단법인 1억 원 이상, 재단법인 3억 원 이상)에 맞추어 현재 확보하고 있는 1억 원 정도의 재산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향후 기부 등을 통하여 재산을 더 확보하여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옴에 따라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

□ 답변 2

○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재산에 향후 동일 목적을 갖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증여한다는 필수적 조건을 부가할 수도 없음

○ 설립되어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준비위 또는 설립된 재단법인에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연(사단법인의 정관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하고, 그 이후 사단법인을 해산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일 것임

○ 단, 동 사단법인이 해산 절차를 마치기 이전에는 설립되는 재단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사단법인 이사는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질의 3

○ 동일 목적의 장학재단을 통합 또는 분리 신설을 전제로 통합 법인 또는 신설 법인에 기본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지?

○ 기존 장학재단을 분리하면서 증여 받는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지방경찰청이 분리됨에 따라 "전남경찰무궁화성옥장학회"를 가칭 "광주경찰장학회"로 신설 분리하면서 기존 전남경찰무궁화성옥장학회의 기본재산을 신설 장학법인에 증여할 수 있는지와 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2

○ 설립되어 활동하는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준비위 또는 설립된 재단법인에 자신의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기본재산을 증여한 재단법인(A)은 설립되는 재단법인(B)의 출연자로서 재단법인(B)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출연 재단법인(A)의 이사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재단법인(A)에 대한 출연자 등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게 됨

○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음

9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방법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2035 2007.7.10 대 법무부)

□ 질의요지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소정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

4.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의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민법 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에서 “정관의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의 의미
6.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규정에서 정관 변경의 범위 및 제45조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규정과의 관계

□ 질의 1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기본재산은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이고 제2항에 의하면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 허가할 수 있는지?

○ **갑론 :** 공익법, 동법 시행령, 민법,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의 어디에도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 허가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 **을론 :** 공익법 제11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용도변경’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전환이 포함된다. 단,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용도변경 허가는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감자를 위한 정관변경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병론 :** ‘용도변경’이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을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기본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그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다.

□ 답변 1

○ 공익법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이라고 함)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①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각 규정에서 보듯이 기본재산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확보된 경우에 공익법인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점,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규정(공익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있지만 그 반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기본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공익법 제11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

○ 정관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 법률은 무엇인지?

○ **갑론 :**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본재산을 증여하거나 조건부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을론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한 후, 전환한 보통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답변 2

○ 공익법 제11조 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곧바로 충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비용과 운영경비는 보통재산(기본재산의 수익, 수익사업으로 벌어드린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것임

○ 질의에 거시된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으로 조달한다.” 는 정관의 규정에서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익” 은 보통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이므로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음

□ 질의 3

○ 공익법 제11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는 바, 용도변경의 의미는 무엇인지 ?

○ **갑론 :** ‘용도변경’ 이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을 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가’ 기본재산을 ‘나’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기본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그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을론 :** ‘용도변경’ 은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재산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 답변 3

○ 공익법 제11조 제3항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7조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제1항),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제2항),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제4항)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용도변경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및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와는 구별되며, 재산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매도·증여·임대·교환 및 담보권 설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공익법에 “용도변경” 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기본재산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예컨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부동산의 용도변경(임야, 택지 등) 등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갑론, 을론의 내용에 대하여 보면, 위 검토의견 1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할 수 없음(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시행령 제16조 제3항] 하는 것일 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하여도 용도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 질의 4

○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정관상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이 다른 경우, 평가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 발생을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

○ **갑론 :** 주식·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의 처분금액은 주식·부동산 등이 현금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당연히 기본재산이 된다. 공익법 제11조 제2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는 규정,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 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는 규정, 제2항 “재평가적립금은 1.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 한 대차

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존 4. 환율조정계 정상의 금액과의 상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볼 때, 주식·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의 처분금액은 당연히 기본재산이 된다.

○ **을론 :** 부동산. 기타 가격변동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는 성격의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는 ‘갑론’과 같으나 주식 등 가격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유가증권은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을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과실’은 공익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에 의하여 보통재산이 된다.

○ **병론 :** 주식·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에 있어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액은 공익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시행령 제16조 제2항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에 의하여 보통재산이 된다.

□ 답변 4

○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은 기본재산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하여 얻은 대금 전부가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임

○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처분금액과 정관상의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익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평가금액과 처분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그 차액을 기본재산의 과실로 볼 수는 없음

○ 공익법 제11조 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규정

□ 질의 5

○ 민법 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의 의미는?

○ **갑론 :**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및 의결정족수 등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 등을 정관에 정한 때“의 의미이다.

○ **을론 :**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란 "목적, 자산 등 변경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구체적인 사항의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및 의결정족수 등의 절차를 정관에 정한 때"의 의미이다.

□ 답변 5

○ 재단법인은 민법 제43조에 의한 정관의 목적과 조직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사단법인의 사원 총회와 같은 자주적 의사결정 기관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의 소재지 등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45조 제2항) 및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법인의 목적의 변경 등의 정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제46조)

○ 민법 제45조 제1항의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라고 하는 의미는, 설립자가 정관 내에서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정관 내용의 실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 즉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정관의 변경이 아니며, 단순히 정관 내용의 실행에 지나지 않는 것임

□ 질의 6

○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의 의미와 민법 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와의 관계는?

○ **갑론 :**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이란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정관 규정"을 의미한다.

○ **을론 :**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이란 "목적 또는 목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 목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정관 규정"을 의미한다.

○ **병론 :**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이란 "모든 정관 규정"을 의미한다.

□ **답변 6**

○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단법인이 그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해산한다면 설립자의 의도나 사회적 이익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을 변경해서라도 재단법인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음

○ 이 경우 정관변경의 범위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관에 기재된 모든 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변경되면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의 변경이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제45조와의 관계를 보면, 제46조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때에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제45조의 적용이 없으며 이 때 정관변경의 대상은 모든 규정임

93.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목적변경 관련 질의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과-8044 2007.9.11 대 교육인적자원부)

□ **질의 1**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하 "공익법인" 이라 함)에서 목적사업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과 과목을 교육 또는 교습" 하거나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함) 제2조(정의)제1항 각호의 사업 중 해당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정관에 정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들 에게 학교교과 과목을 교육 또는 교습하는 것도 같은 사업의 범위로 보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금전에 갈음한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설립·운영" 하는 사업도 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견 1** : 공익법인의 적용범위는 법 제2조에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없음. 영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사업에도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을 받는 학생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되어야 하며, 공익법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교습을 실시하거나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봄. 다만, 금전에 갈음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숙사의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

○ **의견 2** :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의로 해석하여 학원(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도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

□ **답변 1**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법인의 목적 사업은 학술·자선, 장학금 등 사업의 내용·성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단순히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즉 시설을 중심으로 법인의 목적 사업 범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 본 사항은 학원법 및 공익법 제2조에서 정한 목적사업 내용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당해 사업의 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라고 판단됨(평생학습정책과)

□ **질의 2**

○ 재단법인의 정관 중 목적변경에 관한 질의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장학회의 당초 정관의 목적에는 수혜대상자를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해오다 설립자가 수혜자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여 정관 중 목적을 “경남지역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아래 의견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의견 1** :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목적변경을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단법인과 같이 자율적인 법인이 아니고 타율적인 법인이라는 점, 또한 동 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수혜범위의 확대를 위해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추가 출연과는 관계없이 목적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견해

○ **의견 2**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설립허가 시에 붙일 조건) 제1항에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에는 수혜자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공익법인이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설립자가 생존 중에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목적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

□ **답변 2**

○ 공익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을 반드시 붙이되,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한 것을 볼 때,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임

○ 정관 변경의 목적과 내용이 공익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후,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람

94.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관련한 질의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과-8205 2007.9.19 대 법무부)

□ **질의요지**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에서 목적사업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또는 교습)"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학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1**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정의)제1항 각호의 사업 중 해당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정관에 정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사업의 내용에 " 학생들에게 교육(또는 교습) "을 하는 사업도 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1**

○ 공익법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금전의 지급에 갈음하여 물건·용역·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여야 함

○ 여기서 "장학" 이라 함은 학생 또는 학생이 되려는 자의 학습을 장려하는 것인 바, "학습을 장려한다." 는 것은 학습을 권유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행위로서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간접적·보조적 행위라고 할 것임

○ 그러나, 교육 또는 교습은 학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직접 학습을 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교육 또는 교습을 가리켜 학습을 장려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

○ 교육 또는 교습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육 또는 교습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며, 교육 또는 교습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습득하게 하는 것임

○ 교육 또는 교습행위가 공익법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용역 제공"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용역의 제공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되려면 학습을 장려하는 행위(예컨대,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편, 숙식의 제공 등)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교육 또는 교습은 직접 학습을 하게 하는 행위이지 학습을 장려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공익법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역 제공"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학생들에게 교육(또는 교습)을 하는 사업" 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

○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금전에 갈음한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 하는 사업도 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청의 견해** : 공익법인의 적용범위는 법 제2조에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없음

○ 영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사업에도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으로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을 받는 학생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되어야 하며,

○ 교육(또는 교습) 사업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또는 교육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공익법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원을 설립·운영(교습)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봄

○ **공익법인의 견해** :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이라 함은 광의로 해석하여 학원(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포함)을 설치·운영(교습)하는 사업도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

□ 답변 2

○ 학원은 학습자에게 지식 등을 교습하는 시설 또는 학습장소 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함(학원의 설립·운영 법 제2조 제1호 참조)

○ 학습자에게 지식 등을 교습하는 시설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결국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므로, 질의 1항에 대한 답변에서 보듯이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학습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바, 해당 시설이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학습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위가 “장학금의 지급에 갈음(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하여야 하므로, 학습장소 등 일정한 시설(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포함)을 운영하면서 학습생들로부터 숙식비, 이용비 등 일체의 대가(명칭, 형식, 금액의 다소, 실비 변상 여부를 불문함)를 받는다면, 이는 장학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95.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변경

(외무부 1981.4.22)

□ 질의

○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국제 people to people 한국본부의 업무상 감독 주무관청을 문화공보부에서 외무부로 변경가능 여부

□ 답변

○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관한 민법규정에 의하면 어느 주무관청에 의해 설립이 허가되었고 그 관청에 등록된 법인을 다른 주무관청으로 그 관할을 옮기거나 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다만 당해법인의 정관에 비추어 그 목적이 다른 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다른 관서에도 등록할 수 있음(특히 기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관청의 감사, 등록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

○ 상기 사단법인에 대한 감사감독업무가 문화공보부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으로 당부와 합의될 경우에는 문화공보부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이 외무부장관에 의하여 허가 되어야 할 것임

96.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사업실적 등을 제출하는 규정 위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6.06.27)

□ 질의

○ 법인이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조의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문제

□ 답변

○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임원자체가 공중분해 되어 모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설립허가의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7. 임기기간의 공백 시 임원의 연임 여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0.02.09)

□ **질의**

○ 공익법인의 임원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하는 경우, 임원임기만료일과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일까지 사이에 일정 기일의 공백이 있는 때에도 연임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연임(連任)이란 원래 정해진 직위를 다 마친 후에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임의 임기를 마치고 누군가 새로운 자가 직위를 담임하지 않고 전임자가 계속하여 그 직위를 담임한다면 연임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의 경우, 전(前)임기 만료일과 후(後)임기 개시일 사이에 공백이 있지만 해당 직위를 다른 자가 담임하지 않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담임하는 것이므로 연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98. 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 날인 여부

□ **질의**

○ 공익법인 임원 취임승낙서 작성 시 인감 날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이 민법법인 또는 특수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므로, 공익법인의 이사 · 감사 등의 임원취임 승낙서에는 서명 · 날인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폐지)

99.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2. 5.)

□ **질의**

○ 교육청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30% 이내에서 인건비 등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불이행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세무서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음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세무서는 인건비 지출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등 지출의 합계액이 운용소득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미부과하고 있음

○ 이에 교육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교육청이 공익법인에게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

□ **답변**

○ 교육청은 소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므로, 공익법인에게 장학금 수행률을 높이도록 단순 권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상증세법 규정은 장학금 수행률 70%의 근거조항이 아니므로, 운용수익 70% 미만 장학금 지급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 각 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음

○ 상근임직원의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 금액임,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1항 해석상 8,000만원 이내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100. 공익법인 의료기관 개설 운영 및 주무관청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2. 7.)

□ 질의

○ 공익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공익법인이 소변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업을 추가할 경우 주무관청의 판단기준

□ 답변

○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 이 존재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는 의료법인을 광의의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공익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은 당연함. 또한 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위 특별법에 공익법인법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②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협의의 공익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 통상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을 주무관청(협의)으로 칭하고 있으나, 법인의 목적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은 모두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광의)임 따라서 교육 관련 법인이 보건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 모두가 광의의 주무관청에 해당되나, '협의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협의의 주무관청임

101. 공익법인 주무관청 변경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2. 8.)

□ **질의**

○ 공익법인의 정관상 주 사업을 ‘장학’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주 목적사업의 변경으로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가 가능한지

□ **답변**

○ 공익법인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데, 주된 사무를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 결국 정관 변경으로 주된 사무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관청도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XXXX기념재단’의 현 주무관청인 OOO 교육청이 본건 정관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변경이 가능함

※ 다만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취지상 본 사안의 경우 OOO교OOOO와 협의하여 정관 변경을 허가해야 함

○ ‘XXXX기념재단’이 정관 개정안에 기재한 ‘청소년 교류협력사업’, ‘교육지원사업’ ‘문화교류지원사업’의 실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함. 따라서 주무관청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의 실제 사업 내용이 ‘장학’, ‘학술’, ‘자선’에 관련된 것인지 및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공익법인 여부를 검토해야함

102.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등(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3. 1.)

□ **질의**

○ 장학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익법인이 기존의 장학사업과 함께 교육사업의 일환인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 통상 ‘공익법인’이라 칭해지는 법인은 공익법인법에 따른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있는데, 협의의 공익법인에는 상증법 등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짐.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지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설립할지 여부는 법인 설립자의 자유라 할 것이며, 장학 사업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익법인 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장학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인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 판례가 ‘설립허가 근거법’이 아닌 ‘법인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고, 공익법 제2조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법인도 장학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익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음

※ 우리 민법 및 공익법은 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준다는 의미이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및 어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는 설립자의 자유이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

○ 장학 사업을 부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가능함. 따라서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일부 수행하더라도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주무관청에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설립을 불허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민법 제32조와 공익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그 독립된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그러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이 명시적으로 공익법인을 평생교육시설 설립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도 공익법인이 통상의 목적사업 외 다른 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도 평생교육 사업 수행이 가능함

※ 공익법인이 평생교육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학술·자선단체가 부수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예컨대,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단체가 그들을 상대로 미용·메이크업 등의 직업 교육을 하는 경우)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및 공익법 규정상 가능함

103. 감사와 이사의 겸직가능성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3. 4.)

□ 질의

○ ’13. 4. OOOO가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중 감사가 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정관의 타당성 ‘에 대하여 질의

□ 답변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있어서, 감사와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백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만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직무 성질상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는 것’으로 통상 해석되고 있음

○ 본건에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사, 감사 겸직이 규정된 정관을 이유로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또는 위 정관을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4. 비영리법인 활동범위(다른 지역에서 목적사업)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4. 8.)

□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한 지자체의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분사무소 설치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

□ 답변

○ 민법 제32, 33, 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이 때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한 지자체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이 있음

※ A 지자체에서 설립 허가한 장학재단이 반드시 A지역 주민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B 지자체에서 설립 허가한 문화 재단이 B지역 주민에게만 공연·전시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105.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및 관리 관련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4. 8.)

□ 질의

○ AA구에서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질의

1. 재단법인 OO장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AA구인지 AA교육청인지
2. 해산 후 잔여재산의 관리주체는 AA구인지, AA교육청인지
3. 잔여재산을 사회복지 및 인재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재단에 증여 및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 답변

○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는 ‘AA구’ 임. 공익법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재단법인 정관 제36조는 “잔여재산은 AA구에 귀속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는 ‘AA구’ 임

○ 잔여재산의 관리주체는 ‘AA시교육청’ 임

공익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재단법인은 장학재단으로 주무관청은 교육부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AA시교육감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재산의 관리주체는 ‘AA시 교육청’임

※ 따라서 잔여재산의 등기명의자 및 예금주 등은 AA구가 될 것이지만, 위 재산의 관리는 AA시교육청이 담당

○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증여 및 무상대부가 가능한지는 주무관청의 판단 사항임. 공익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대부될 수 있는데, 목적의 유사성 및 대부 등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주무관청(AA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06.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정관변경) 관련 질의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691, 2015. 2. 12.)

□ **질의**

○ 공익법 시행령에 해산시 재산의 관리주체가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공익법인이 해산시 재산의 귀속 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신청에 따른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가 의무적인지

□ **답변**

○ 공익법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천안시가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고, 해산시 재산 귀속주체를 천안시로 변경해 줄 것을 법인이 신청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

○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의무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인가’와 달리 ‘허가’처분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됨

※ 대법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고 판시(대법원 84누509호 판결)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 사항임. 따라서 공익법 시행령에 따라 장학 등 사업에 바쳐진 재산의 관리권한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해산시 재산귀속 주체를 변경해 줄 것인지 등은 주무관청(교육감)에서 결정할 사항임

107. 비영리재단법인의 분할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법인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민법에는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현행법상 불가능함

108.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한 법인 설립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도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법인이 성립될 수는 없음. 다만 설립된 법인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조례에 규정될 수는 있음

109.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에로의 전환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이미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주무관청은 기존의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의 설립허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단법인의 목적이 동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110.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사단법인의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된 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이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기본재산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으로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재산에 향후 동일 목적으로 갖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증여한다는 필수적 조건을 부가할 수도 없음

111. 임원의 임기 개시일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비영리재단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 후 관할관청의 취임 승인을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임원의 임기개시일을 이사회 의결일로 소급하여 승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청의 승인을 얻은 날인지의 여부

□ 답변

○ 임원선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그 임기개시일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참조)

112. 재적이사의 기준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법인정관에 기재되어 등기된 이사 수와 현재 이사 수가 다를 경우, 이사회 의결 시의 재적이사 수는 어느 것이 기준인지 여부

□ 답변

○ 재적이사 수는 정관상의 이사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흠결이 있을 경우, 해당 결의는 절차상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음

113.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질의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공익법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③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할 것임

114.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한 기본재산의 사용·처분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비영리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사용·처분 하였을 경우 주무관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답변**

○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사실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은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민법 제97조 제4호)

115. 기본재산 처분(기본재산으로 부동산 매수)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장기차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충당하여야 함.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116. 기본재산 처분(정기예금을 유가증권으로) 관련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정기예금(3억원)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여 운용하거나 금융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답변**

○ 공익법인법 제11조제2항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주식, 채권,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117.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공증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변경 등기시 의사록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법인이 관련 등기를 할 때, 의사록의 공증은 모든 법인에 필요한 것이 아니며,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됨(「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참조). 따라서 귀 법인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의사록의 공증이 요구되지는 않음

118. 조례를 근거로 한 감독권의 행사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법인에 대해, 조례에 따라 해당 법인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감독권 등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근거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119. 비영리사단법인 총회 의사정족수 완화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2014년도 법무부)

□ **질의**

○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총회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이 위법 또는 무효인지, 주무관청 직권으로 정관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

□ **답변**

○ 총회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정관변경이 위법 또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정관을 변경할 사항은 아님

2 법인 관련 주요 판례

1.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 무효인 부관

□ 발기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

- 재단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행위로 재산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등기의 명의신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연히 이를 계승한다.
(1973.02.28. 72다2344)

□ 무효인 부관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의 기증(기부행위)에 있어 재산기증자는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기증자에게 보류하는 따위의 부관을 붙여도 그 부관의 효력은 재단법인에 미치지 않는다.
(1971.08.31. 71다1176)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

□ 비영리법인 설립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 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민법 제77조 소정 당연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1968.05.28. 67누55)

□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1977.08.23. 76누145)

3. 변경등기는 대항요건

□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1967.02.21. 66다1347)

□ 민법 제54조제1항,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 (1984.9.25. 84다카493)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재단

□ 법인격없는 재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조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하나의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64.6.2. 63다856)

5. 사단의 성립과 권리 · 의무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하여지고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하며, 그 조직상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한다. 이 사단의 이름으로 대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것이다. (최고재 1964.10.15. 민집18권 8호 1671)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이름으로 거래한 채무는 사단 구성원 전원에게 1개의 의무로서 총유적으로 귀속하고 사단의 총유재산만이 그 책임재산으로 되며, 구성원 각자는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개인적 채무 내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최고재 1973.10.9. 민집27권 8호 1129)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사단을 구성하는 총사원의 총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총사원의 동의로서 총유의 폐지 기타 이 재산 처분에 관한 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현사원 및 원사원은 당연히 위 재산에 관하여 공유의 지분권 또는 분할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최고재 1957.11.14. 민집11권 12호 1)

6. 법인의 목적범위에 관한 판단

□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목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법인을 위하여 그 효력이 없다. (1965.7.6. 65다854)

□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내란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말한다. (1946.2.8. 4278민상179)

7. 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2.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의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 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관계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할행정청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8. 설립취소

□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982.10.26. 선고 81누863)

□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사고 일부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이 수긍된다. (1982.10.26. 선고 81누863)

□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 설립 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1966.06.21. 선고 66누21)

9. 출연재산 귀속시기

□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설립에 있어서 재산출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한다. (1981.12.22. 80다2762)

10. 청산종결 시기

□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 등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할 것이다. 청산종결등기가 종료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1980.04.08. 79다2036)

11. 상속세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을 따르지 않은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 (2005.06.23. 2005두3271)

□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인 박영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안종만이 위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출연재산 중 이사로 취임한 원고 안종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1997.01.24. 96누10461)

□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2005.05.26. 23두 6153)

12. 사업소세

□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또는 의료 등 사업목적을 가진 이른바 전형적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각 사업목적 외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이 행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른바 행정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공익법인으로서 위 지방세법에 규정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988.09.27. 86누827)

13.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당해 사찰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가 된다거나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로 된다고 할 수 없다. (1988.07.24. 98두 7053)

14. 당연무효인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이사는 필수적 기관으로서 그 선임방법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므로 문교부장관이 법인의 정관 중 이사의 임면방법을 삭제하는 부분의 변경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1966.05.10. 65마109)

15.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불허가

□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985.8.20. 84누509)

16.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

□ 재단법인의 임원 취임이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그 임원 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따라서 재단법인의 위임취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000.01.28.)

17. 평가액 영의 출연효과

□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설사 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실질적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 (1984.09.11. 83누578)

18. 기본재산처분 등의 절차방법

□ 재단법인이 이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1969.07.22. 67다567)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새한다. (1976.11.09. 76다486)

19. 채권계약으로의 무효

□ **판시사항** : 주무관청의 허가없는 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행위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한가 여부

□ **판결요지**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1974.06.11. 73다1975)

20. 경매인 경우의 인허가, 기본재산 처분행위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65.0518. 65다14)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 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매매의 경우이든 경매의 경우이든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967.2.22. 65마 704)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1984.12.01. 84마591)

21. 법령 오해한 감독관청 명령에 따른 행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 함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거쳐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의 임원들은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을 신뢰하여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사 감독관청의 법률해석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꾸어 시행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법인의 임원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원들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감독관청의 명령을 따른 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85.3.26 84카 1923)

22. 호선의 의미

□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 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6.06.14. 2004다10909)

23. 이사의 대표권, 해임등기

□ **이사의 선임인가 전에 한 행위의 효력**

-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전 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1958.11.20. 4290 민상477)

□ **해임등기**

- 이사가 해임된 경우에 이에 관한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64.6.23. 64다129)

24. 잠정적 직무수행

□ 법인과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와의 관계는 수임자와 위임자와의 법률관계에 있고, 법인은 그 기관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1967.20.21. 66다1347)

□ 위와 같은 해석의 이유는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 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1968.09.30. 68다515)

□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00.01.28. 98다26187)

25. 이사의 묵시적 유임

□ 법인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의 개임이 없었다면 그 법인은 대표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해석할 것이다. (1970.9.17. 70다1256)

26. 이사 표결권의 위임 또는 포기, 후임이사 선임 권리행사

□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다. (1957.3.22. 4290)

□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 (1963.04.25. 63다15)

□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1982.07.13. 80다2441)

27. 대표자의 제한이 미등기인 때 제3자 대항력

□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이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87.11.24. 86다카2484)

28. 법인총회/이사회 의사록 증명력

□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과정,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 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1984.5.15. 83다카1565)

29.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

□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01.28. 98두16996)

30. 예탁금-기본재산 처분의 효력(무효)

□ **판시사항** :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7. 1. 17. 선고 95나7628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1억 원의 예금채권은 원고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이고,

그 예치은행이 당초의 주택은행에서 피고 은행으로 변경된 내용이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의 예금채권이 원고의 기본재산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참조),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나, 원·피고 사이의 상계 약정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대법원1988.12.11. 선고 97다9970)]

3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금액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나,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단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이 그 수입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실적이 위 조항에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익재단법인이 토익시험 등의 한국 내 독점사용 및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甲 회사와 토익시험 등의 시행·관리 권한의 위임 및 그 시험 자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위 공익재단법인이 자신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 예술품을 설치하여 특수관계자인 乙 회사에 혜택을 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 중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그 기준금액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이 그 기준금액에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금액은 각각 위 법률 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대응되는 점, 위 시행령 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는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의 소득은 기준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조항이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이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시행령조항이 위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증여세 등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에서 말하는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에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금액 외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위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이 없고 단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있는 상황에서 그 수입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실적이 위 조항에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국제적 의사소통능력의 개발 및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이 토익시험 등의 한국 내 독점사용 및 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甲 회사와 토익시험 등의 시행·관리 권한의 위임 및 그 시험자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위 공익재단법인이 자신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 예술품을 설치하여 또다른 특수관계자인 乙 회사에 혜택을 준 행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는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들 규정을 합하여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제1호)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제2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00분의 70이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8조는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4호의2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어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은 "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제1호)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제2호)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법규에 대하여는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는 점, 개정 전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개정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

(이하 이들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 중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그 기준금액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그 위임에 따라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하 이들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그 기준금액에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금액은 각각 이 사건 법률 조항 소정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대응되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2호는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의 소득은 기준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증여세 등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국제적 의사소통능력의 개발 및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은 현금 7,000만 원과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이하 생략) 외 2필지의 답 합계 1,049,524,000원 상당으로 구성된 사실, 원고는 토익시험 등의 한국 내 독점사용 및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와이비엠시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토익시험 등의 시행·관리권한의 위임 및 그 시험

자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토익시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997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출연재산과는 무관하게 토익시험 등을 시행·관리하면서 얻은 소득의 일부와 출연재산에서 나온 소득(임대료와 이자수입)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토익시험 등의 시행·관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의 비율인 50% 또는 7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1997, 1998, 1999 사업연도 귀속 증여세 합계 863,017,620원과 2000, 2002, 2003 사업연도 귀속 가산세 합계 512,226,5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금액 외에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 나머지,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이 다액이라는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하는 기준금액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원고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금액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에도 위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등을 부과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은 없고 단지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자 수입만 있는 상황에서 그 수입의 전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이상, 그 사용실적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게 거래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소외 회사와의 토익시험 관리계약에 따라 토익시험 등을 시행·관리하는 과정에서 응시생들로부터는 응시료를 미리 현금으로 수령하면서도 소외 회사에게는 시험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시험자료의 공급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의 평균 잔액이 14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소외 회사로서는 그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소외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20여 개 이상의 다른 거래처들로부터도 신용도와 거래규모에 따라 평균 채권액의 60 내지 150%에 상당하는 거래보증금이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제공받은 점,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JPT, SEPT 시험자료의 공급계약에 있어서는 별도의 거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험자료의 공급대금은 TOEIC 시험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보증금이 이 부분 채권도 사실상 담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거래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원고가 이 사건 예술품을 이 사건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 설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와이비엠에듀케이션(이하 '종로어학원'이라 한다)이 그 혜택을 누린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지상 2, 9, 10, 11층을 소유하면서 사무실 및 TOEIC 시험 등의 접수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예술작품이 설치된 장소는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앞 공용부분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를 임차한 종로어학원만이 이 사건 예술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독점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1층 공용부분에는 종로어학원의 수강생 외에 TOEIC 시험 등의 응시신청인 등이 서류작성 등에 사용하는 탁자 등이 비치되어 있어 이 사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중 원고의 고객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거래보증금 100억 원을 지급한 행위와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예술품을 설치한 행위는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계 법령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32.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1

□ **판시사항**

- 공익법인이 외형상 무상취득의 형태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판결요지**

-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 공익법인법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하나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법의 취지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기본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는 신설 학교법인이 ○○대학교의 모든 권리를 인수할 것, 소외인(원고의 동생)이 학장 및 이사로서 ○○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는 상임이사로 임명할 것, 재단 및 학교를 제3자에게 인계할 시는 상응하는 가치를 원고에게 보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필히 반환할 것,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재단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할 것 등의 조건들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재단의 설립목적과는 별 관계가 없이 주로 원고 형제의 ○○대학 인수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에 부가된 조건들도 이 사건 재단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연히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다8864)]

33.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2

□ **판시사항**

가. 소의 취하 및 그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과의 법적 성질

나.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소송물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와는 다르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의 효과임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라고 하여 실체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의 취하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0조 제2항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소송물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의 효과임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라고 하여 실체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의 취하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종국판결선고 후의 소취하가 사실상 권리의 포기와 같은 유사한 결과를 자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소가 금지됨에 따른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원고법인의 이 사건 소취하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취하의 요건이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대법원 1989.7.11. 선고 87다카2406)]

34. 소유권 이전등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법적 성질

나.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도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법인의 정관에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공익법인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조

나. 민법 제245조 제1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행위는 일종의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는 1952.12.18.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판단하여 망 소외인게 금 1,540환에 매각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사법상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고,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이 사법상의 매매계약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 일 수도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소외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소유였다면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는 것이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론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가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형설재단의 정관에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 형설재단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국가의 의무가 해산한 재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 원심은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잔여재산은 적극적인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한 것이지 원고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또 위 형설재단의 청산절차에서 그러한 권리신고의 최고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 원심판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 소론의 판례는 국가의 귀속재산 처분행위가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성질도 포함하고 있어서 민법의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며, 원심의 판단에 귀속재산 매각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0435)]

35. 소유권 말소등기

□ 판시사항

[1]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소극)

[2]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및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해석 방법

[3]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효력의 존속 여부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허가는 실효된 것으로 본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를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 판결요지

[1]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전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선행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그 성질상 특정 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허가는 실효된 것으로 본 사례

[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를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 주문

-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안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 및 원고와 피고 안산시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답변서 및 상고이유서 보충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윤응호, 윤영래, 윤영섭(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부터 전전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선행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가 위 제1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의 범위 및 주장과 부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등 참조), 위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재단의 주무관청이 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비롯한 판시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기본재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등 합계 3,189,475,200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확보하는 등의 조치의 이행을 위 허가의 유효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처분허가서 및 그에 기한 1997. 5. 16.자 처분허가 통보서 등 관련 공문에서 위 각 이행사항의 준수가 허가조건임을 명시하면서, 그 이행 후 허가조건에 따른 계약서류에 감독관청의 직인을 날인하기로 하는 등 처분허가의 효력발생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허가가 파탄상태에 놓인 재단의 재정적 안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그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처분허가에서 명시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점은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허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관청의 처분허가는 그 성질상 특정 상대에 대한 처분행위의 허가가 아니고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허가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4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에 따른 위 ○○○○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대로라 할 것이지만, 위 처분허가에 수반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조치의 이행이 허가의 유효조건이라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원고 및 재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이 사건 처분허가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

79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나아가 행정행위는 명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허가의 감독관청이 1998. 4. 2.자 공문의 발송으로써 1998. 3. 31.까지 위 허가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후 재단에 대하여 재단정상화계획의 제출 및 매매대금의 기한부 입금을 촉구하는 한편, 재단의 요청에 따라 1998. 7. 30.자 및 1998. 7. 31.자 각 공문을 교부한 등의 행위는 위 공문의 기재 내용 중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1997. 5. 2.자 처분허가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그 허가조건의 이행이 있는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뿐 당초 처분허가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감독관청의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의 실시 및 그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1999. 4. 14.자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공람,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위 허가조건의 불이행으로 이미 실효한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허가조건을 달리 정하는 별도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처분허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 안산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말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 안산시 명의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2의 지분에 관한 2001. 5. 29.자 압류등기는 2004. 5. 24.경 피고 2의 체납세액 완납을 이유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안산시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3.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안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위 각 상고비용 및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대법원 2005.9.28. 선고 2004다50044)]

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 업무방해

□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2] 이미 소집이 통지·공고된 주주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 판결요지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으로 그 재산을 대가의 출연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그 결의가 없으면 재산의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를 관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도,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2] 상법 제363조 제1항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들은 공모하여,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 및 공소외 재단법인의 설립자인 공소외 망인이 1990. 12. 30.경 공소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식 3,600주를 표창하는 주권 36장(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공소외 망인이 사망한 뒤 공소외 재단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5. 26. 피고인 2, 3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주식회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및 배서를 요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피고인 2 및 서강신의 명의로 명의개서 및 배서를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사회는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재산 취득행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공소외 재단법인이 이 사건 주권을 취득할 당시 이사회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권이 공소외 재단법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귀속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 뿐만 아니라 그 '취득' 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참조). 그런데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으로 그 재산을 대가의 출연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그 결의가 없으면 재산의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가 이 경우에까지 관철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도,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규정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도(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재산적 가치 있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그것은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 됨에도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그 취득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취득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따로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양자를 구별하는 것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 이와 달리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재산 취득행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6. 5. 29.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를 무산시킬 것을 마음먹고, 2006. 5. 26.경

피고인 2 등에게 주주총회 개최 중단요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5:24경 공소외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휴대전화로 주주총회가 연기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27.경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같은 달 29.경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하여 주주총회 개최연기를 반대하는 주주들이 정기주주총회장소에 진입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실력으로 저지하게 함으로써 위계 및 위력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및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 1은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및 배서가 이루어진 뒤 이제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된 피고인 2, 3으로부터 주주총회를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이사들(공소외 2, 3)과 협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뒤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의한 것이므로 이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통지·공고의 절차에 있어서도 예정되어 있던 주주총회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은 이상 주주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일간신문에의 공고, 주주총회 장소에 공고문 부착 등의 방법으로 통지·공고한 것을 문제삼기도 어렵다.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였다 하더라도 예정되었던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여 위 주주총회는 이미 적법하게 연기된 것이므로 보호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클럽하우스 현관문을 봉쇄하였을 뿐, 그 현관 앞에서 공소외 재단법인 등 다른 주주들이 자체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는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5. 15. 우편으로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일은 2006. 5. 29. 10:00, 소집장소는 ○○컨트리클럽 대식당, 회의부의안건은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등을 내용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그는 2006. 5. 26. 피고인 2 등에게 이 사건 주권에 관한 명의개서를 해준 후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주주

총회 연기 요청을 받고, 다른 이사와 협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주주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주주들에게 휴대폰으로 에스엠에스(SMS)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주주총회의 연기를 통보하는 한편 주주총회 연기에 관한 공고문을 주주총회 장소인 대식당 등에 게시하였고, 2006. 5. 27. 인천일보, 동아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 등에 주주총회 연기공고를 게재하였다.

(2)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재단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공소외 재단법인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2 등에 의한 위 주주총회 연기 요청은 적법한 주주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미 서면에 의한 우편통지의 방법으로 소집통지가 행하여진 주주총회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이사회가 주주총회 연기를 결정한 후 소집 통지와 같은 서면에 의한 우편통지 방법이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 및 주주총회 장소에 그 연기를 공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주주총회의 연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연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연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그 연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도8195)]

3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1

□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을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요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의 의미

[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위 규정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 보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출연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출연자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세(증여세)에 관하여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다만,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은 위 규정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지라도 그 법인의 조직상 공익성 보장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성을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 호 소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그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연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며,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이 모법인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산세에 대하여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한 결과 이 사건 출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고, 이에 따라 출연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세무당국에 출연재산명세서와 출연재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기 전까지 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2

□ **판시사항**

-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 **판결요지**

-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의 대표자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로 하여금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1988. 1. 1. 서울특별시로부터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00,200,000원에 매수

하는 매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때부터 1990. 5. 25.까지 사이에 망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0.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88. 1. 6.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유치원으로 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1988. 1. 14.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원 초기의 적자운영에 따른 원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망인에게 유치원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1988. 3. 18. 우선 망인의 명의로 유치원을 인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 후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93. 7. 27.경부터는 원고의 대표자 소외 2 명의로, 1995. 10. 5.부터는 원고 명의로, 위 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각 변경하여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1990. 5. 25.경까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인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출연한 것이고, 원고는 위 출연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아울러 1988. 3. 18. 부터 계속하여 망인에게 위탁하거나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옴으로써 위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연목적물 및 출연시기, 출연목적에의 사용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5320)]

3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3

□ **판시사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의 산정 방법

□ **판결요지**

-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요건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는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5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위 법 제34조의7 규정 등에 의하여 모두 증여세에 준용된다.

- 원심은, 원고가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79. 12. 3.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료 수입을 학교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1. 11. 20. 이 사건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1995. 2. 16. 원고가 1991. 3. 1.부터 1994. 2. 28.까지 3개 사업연도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개 사업연도별로 증여세를 각 부과한 사실, 피고가 위 시행령 규정상의 기준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원고 법인 수익사업부문의 모든 자산을 총자산에 포함시킨 후 그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 및 당기순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사후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스스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출연받았다거나 다른 재산을 출연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출연재산은 이 사건 토지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만의 평가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여야 할 기준금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그 미달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 그러나 앞서 본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의 1 내지 5(각 대차대조표)의 각 기재에 의한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출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채무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기에 피고가 그 출연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의 산식에 따라 총자산에 이 사건 토지 외에 이 사건 건물 등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증여받은 토지 외에 원고가 신축한 건물 등의 재산이 있다 하여 위의 산식에 의하여 한 출연재산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출연재산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13320)]

40. 거절사정 1

□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으로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 참조)
-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공단체로서, 그 업무표장(이하 인용 업무표장이라 한다)은 1985. 11. 7. 등록이 된

이래 계속 사용되어 일반인들에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인용 업무표장과 그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고, 본원상표가 효성그룹의 심벌마크(symbol mark)로서 인용 업무표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인용 업무표장과의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양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그러한 지정상품과 업무 상호간의 유사 여부 내지 견련관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대법원 1998.4.24. 선고 97후1320)]

41. 거절사정 2

□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가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인용상표의 저명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인 소외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을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자 'Q' 자의 도형내부에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 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고,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원심은, 출원인이 1986.4.28. 출원하여 1987.12.28.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와 소외 재단법인 한국잡화시험검사소(1987.1.1.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뒤에는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라고 칭한다)가 1982.11.22.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업무표장이라는 인용표장을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자 'Q' 자의 도형 내부에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 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바,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다만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것임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대법원 1990.5.11. 선고 89후483)]

42.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의 예시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3]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법인의 이사가 된 경우,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과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서로 규율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예외사유이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가 위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한 예시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위 법 제8조의2 제6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따라서 양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서로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지 않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동상속인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상속재산을 거기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출연재산 중 이사로 취임한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는 법 제2조 제1항의 예외로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되, 다만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 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과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열거한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며,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인바, 이와 같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과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는 서로 규율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개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예외사유라고 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한 예시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 2호 규정이 법 제8조의2 제6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리고 법 제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법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따라서 양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예외사유를 서로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가 법 제8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과,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지 않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 2호 규정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와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거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법 규정보다 확대·강화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1975. 12. 31. 법 제2814호로 제정되고 1995. 1. 5. 법 제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별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수에 관한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인 박영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안종만이 위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출연재산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출연재산 중 이사로 취임한 원고 안종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대법원 1997.1.24. 선고 96누10461)]

43.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1

□ **판시사항**

가.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서의 시가의 개념

□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그 특수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개인 공인감정사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당해 공익사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이상 당연히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나중에 이사직에서 사임한 여부, 출연재산의 법인목적에의 사용 여부 및 동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에 출연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각 참조), 개인공인감정사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 각 참조).
-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출연된 날인 1989.6.8.보다 약 한달 앞서 원고 법인이 개인공인감정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1989.5.13.자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의 평가금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1994.9.27. 선고 94누5472)]

44.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 **판시사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이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제5항의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 규정이다.

□ **참조조문**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원심판시 대지 2필지와 현금 2억 원을 출연하여 판시와 같이 1982.3.12. 법인 설립등기를 마쳐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피고가 1987.9.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인 병원건립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출연받은 위 토지들은 그 출연받기 이전부터 1987년경까지 군사보호지역이었고 소외 2가 원고법인을 상대로 토지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토지들을 가압류하여 그 토지위에 병원을 건립할 수 없게 되었음에 따라 부득이 1986.11.28.경 경남 진양군 일반성면 창촌리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출연된 2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병원건립을 지연하여 오다가 1986.12.1.에 이르러 소외 3으로 부터 위 진양군 창촌리에 있는 반성의원을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조건은 교문리에 병원을 건설하는 것임을 그 설립취지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위 반성의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원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출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다른 주장 즉,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직원이 허가조건에 명시한 기간경과 후에 다른 병원을 인수하라고 권유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분실된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여 준 것 등은 바로 원고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출연재산의 장기사용을 인정하여 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병원인수 권유사실이나 허가증의 재발급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서류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등과 기타 공익사업(동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이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위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에서는 위 법 소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의 하나로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 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그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은 법 제8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들과 이를 일정한 기간(결산보고일 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내에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의 이행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재산출연일로부터 2년의 기한 내에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같은조 제5항 소정의 서류제출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실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4355)]

45. 법인성립의 준칙

□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 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 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 사단의 성립과 관리·의무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이 행하여지고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하며, 그 조직상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관리 등 단체로서의 주요내용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한다. 이 사단의 이름으로 대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고 볼 것이다. (최고재 1964.10.15. 민집18권8호 1671)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이름으로 거래한 채무는 사단구성원 전원에게 1개의 의무로서 총유적으로 귀속하고 사단의 총유재산만이 그 책임재산으로 되며, 구성원 각자는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개인적 채무 내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최고재 1973.10.9 민집27권9호 1129)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사단을 구성하는 총사원의 총류에 속하는 것이므로 총사원의 동의로서 총유의 폐지 기타 이 재산처분에 관한 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현사원 및 원사원은 당연히 위 재산에 관하여 공유의 지분권 또는 분할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최고재 1957.11.14. 민집11권12호 1943)

46.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목적 범위에 관한 판단

-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내란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말한다. (1946.2.8 4278 민상179)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 (1969.8.26. 68다2320)

□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

-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목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하여 어떤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법인을 위하여 그 효력이 없다. (1965.7.6. 65다854)

□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

-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라 함은 그가 가지는 권한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며 이사가 전혀 무권한의 행위를 한 경우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심 1932.9.14.)

47. 법인의 설립허가와 취소

□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한지의 여부

- 판결요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 설립허가의 취소사유

- 비영리법인 설립 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는 민법 제77조 소정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1968.5.28. 67누 55)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한편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1977.8.23. 76누 145)

□ 비영리법인의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 판시사항 : 비영리법인에 있어 성질상 이사장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위법이 있는 예
- 판결요지 : 본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 설립 당시에는 그 목적사업도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후 사정변동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1966.6.21. 선고 66누21)

□ 유언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유언과 달리하여 한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 사례

- 판시사항 :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4.5.27. 선고93누23374)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2.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의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관계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관할행정청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외에 민법에 의한 한국공인중개사회의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 판시사항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 판결요지

1.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 사이에 불미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법인의 기관의 행위이었거나 사원총회의 결의 내용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법인에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해산명령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이 수긍된다.

48.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변경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편입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편입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78.8.22. 선고 78다1038)

□ 기본재산 처분 등의 절차·방법

-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편입 등은 기부행위에 정한 바에 따를 것이고 그 정한바가 없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1967.8.29. 67다 1015, 1016)
-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으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1969.7.22. 67다 568)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976.11.9. 76다 486)

□ 경매인 경우의 인·허가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 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965.5.18. 65다 14)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 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매매의 경우이든 경매의 경우이든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967.2.22. 65마 704)

□ 채권계약으로도 무효

-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채권계약이거나 물권계약임을 막론하고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1974.6.11. 73다 1975)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판시사항

1.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한다.
2.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5.16. 선고 95누4810)

□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 판시사항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제6조·제7조, 그 밖의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6.28. 선고2000 다20090)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제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강제 경매에 의한 처분에도 적용 되는지의 여부

-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강제 경매에 의한 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익법인이 기채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공익법인이 집행채권을 기채 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 있었다하여 그 허가의 효력이 기본재산의 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12.1. 자84마591)

49. 이사(임원)

□ 임시이사의 선임

- 후임이사 선임 신청 중에 임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구이사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임이사 선임에 대한 당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함을 요하므로, 제3자는 가이사(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1956.6.4. 56 민재항9)
-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여부를 불문하고 후임이사 없이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는 민법 제63조 소정의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970.8.31. 70다 1106)

□ 이사 표결권의 위임 또는 포기

- 임기 만료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나 그렇다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968.9.30. 68다 515)

□ 임시이사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임시이사 선임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며 위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위 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할 것이다. (1963.12.12. 63다449)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가 이사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1957.6.29. 4290민상 165)

□ 비영리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대법원 1995.7.25.선고95누2883)

- 판시사항

1. 이사·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재단법인 정관규정의 의의
2.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 규정의 성질
3.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임원취임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 판결요지

1. 민법 제32조·제37조·제40조제5호·제42조제2항·제43조·제45조 제3항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법인설립 또는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올리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의 당·부당을 검토하므로,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구 문화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93.12. 30.문화체육부령 제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의 규정 역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주무관청의 일반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3. 종교법인 임원의 취임이 사법인인 그 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종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단법인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행위의 성질

(대법원2000.1.28.선고98두16996)

- 판시사항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14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 중에 있는 이사 임기의 진행 여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5313)

- 판시사항

1.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임기의 진행 여부

(적극) 및 이사의 임기만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그 취소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
3. 위 2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임시이사들은 퇴임하고 취임승인이 취소된 원고들의 이사 임기는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된 경우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의 적부(소극)

- 판결요지

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는 (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수 없어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다.
2.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3. 위 2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다면 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들의 이사 임기는 진행되어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대법원 1988.3.22. 선고, 85누884)

- 판시사항

1.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2.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 판결요지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2. 당연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 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 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의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50. 총회 및 이사회

□ 통지 없이 모인 회의 결의

- 문중원이 매년 한식날에 묘소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날 거기서 다수결로 중요한 문중 일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소집통지나 결의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이 무효라 할 수 없다. (1970.2.24 69다 1774)

□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이사회) 범위와 이사 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26187)

- 판시사항

1. 임기 만료된 재단법인의 이사가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및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이사에게 이사를 개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소극)
3. 이사 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소극)

- 판결요지

1.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이사를 개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등기 이외의 법인등기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 변경의 법인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여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민법상 법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12.23. 선고97다26142)

-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임기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위 임기 만료된 이사를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 만료된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 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되는 등의 사유로 구 이사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현재의 임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이사가 사임함에 있어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 및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749)

- 판시사항 :

1.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비영리재단법인에 있어 정관에 규정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소극)와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의 표결이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

- 판결요지

1.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대법원 1984.5.15. 선고, 83다카1565)

- 판시사항

1.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의 증명력
2.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환송 전 원심에서 제출 조사된 자료만에 따라하여 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사실인정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

- 판결요지

1.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2. 환송판결의 취지가 원고 종약회의 상임이사회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처분하기로 하는 원고 종약회의 규약상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 등에 대하여 심리 조사한 바 없이 환송 전 원심에서 제출 조사된 자료만에 의하여 증거 없이 총회 결의가 있었다든가 또는 임원연석회의의 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와 최고회의의 인준도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그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고 다만 총회의 추인은 차기총회에서 받도록 하였다는 등 전후 모순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에 반한 것이다.

□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대법원 1978.8.22. 선고, 76다1747)

- **판시사항** :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판결요지** :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출석시켜 결의케 하는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가 사실상 이사전원의 의사에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있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 가담하고 동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을 운영하여 왔다고 해서 그로써 곧 그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소의 취하 및 그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과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9.7.11. 선고 87다카2406)

- **판시사항**

1. 소의 취하 및 그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과의 법적 성질
2.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소송물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와는 다르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의 효과임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라고 하여 실체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 하였다고 하여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의 취하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 대표자가 다른 법인과 겸임 시 송달장소와 이사회 의결에 부존재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대법원 2003.4.25. 선고2000다60197)

- 판시사항

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적법한 송달 장소인지 여부(소극)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 판결요지

1.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 [구 민사소송법 (2002.1.26.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소집절차 하자에 따른 결의의 효력

(대법원 1987.3.24. 선고85누973)

- 판시사항

1.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2.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당연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 취임 승인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1. 해산(청산법인)

□ 청산의 목적범위

- 해산된 법인이 부당히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다. (1957.1.11. 4289행상70)

□ 해산등기후의 소송당사자 능력

- 수 개의 洞 농업협동조합이 하나의 농협조합을 합병 신설하여 종전의 각 조합은 해산등기가 되고 신설조합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상 합병절차에 하자가 있어 합병이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소멸된 종전 조합은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1969.9.23. 69다837)

5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대법원, 2010다43580, 2010.9.30.)

- 판시사항

[1]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및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4]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2조 [2] 민법 제57조, 제111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4] 민법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5]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 2529)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판결 등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변론기일을 2010. 4. 9.로 한 제1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0. 4. 9. 당일 송달받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이 제2차 변론기일을 2010. 4. 23.로 지정하고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2010. 4. 14. 원고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2010. 4. 16.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위 변론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각 진술간주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0. 5. 7.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0. 4. 27.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0. 5. 7.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의 변론연기신청 또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임한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약 1년 10개월 전에 사퇴한 구 이사인 원고에게 직무수행권을 인정해야 할 정도로 피고가 현재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위 법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참조)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의료재단인 피고의 정관 제2조에는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하는 비영리 법인일 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5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8159)

-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

[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당해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자 치유를 위한 동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사회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 판결요지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이사 임명과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은 사회복지법인의 핵심 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임된 이사가 해임의 실체적 사유를 원인으로 그 해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해임의 절차, 특히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절차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 법률들과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공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심의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그 해임의 대상이 된 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로써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해 이사가 우연히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어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고, 당해

이사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인이 이사 1인을 전격 해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강행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이사 수를 일시적으로나마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

-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제22조),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되, 이를 구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라고 보인다.
-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이사 임명과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은 사회복지법인의

핵심 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임된 이사가 해임의 실체적 사유를 원인으로 그 해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해임의 절차, 특히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절차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 법률들과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공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심의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그 해임의 대상이 된 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로써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해 이사가 우연히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어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고, 당해 이사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인이 이사 1인을 전격 해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강행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이사 수를 일시적으로나마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소집통지 당시 명시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전제한 다음, 각종

재해로 인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과 안전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의 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바 없었던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이사해임안건에 관하여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4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인에 대한 이사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소외인을 해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외인이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의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의목적 사항 추가와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에 관한 동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회복지법인 이사해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5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4751)

-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및 수익사업의 계속 중 공소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임대업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방법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인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의 관계

- 판결요지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부동산 임대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부동산 임대행위의 동기 및 조건,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인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정의 적정을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와는 그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 참조조문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9조 제1항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1조 제3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공1981, 14510)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익법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19조 제1항에 마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법인(이하 '피고인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본재산인 어린이 회관 중 일부인 원심 판시 목적물을 1994. 10. 1. 처음 예식장업자 공소외인에게 임대한 이후 2차에 걸친 재계약을 거쳐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2003. 2. 18.까지 계속 예식장으로 임대해 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재단이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인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 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달리 원심 판시 목적물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별도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의 논리 전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에 대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2001. 2. 8. 선고된 판결의 확정에 의한 기판력은 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었던 피고인 1에게는 미치지 않고,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재단에 관하여도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3. 11. 6. 선고된 판결은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와는 임대 시기, 상대방, 목적물, 목적물의 이용 방법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임대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의 확정에 의한 기판력은 원심 판시 부동산 임대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동산 임대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부동산 임대행위의 동기 및 조건, 실제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은 청소년 육영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고, 원심 판시 임대행위는 재단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어린이 회관 중 일부에 대하여 거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차임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차 목적물은 예식장업자에 의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예식장 영업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위 부동산 임대행위는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사업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와는 그 입법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재단의 정관 제4조 제3항에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재단의 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강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임대행위 이전에도 승인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의 관계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이 원심 판시 임대행위에 대하여 기본재산 임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이 필요 없다고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55.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절차 이행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다20090)

□ 판시사항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재단 대표자가 정병만에게 판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의 처분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정병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대외적 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3 법인 업무별 관련 법령

1. 법인설립 허가

[관련법 : 민법, 공익법, 공익령]

▢ 민법 [시행 2021.1.26.]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7. 7. 18., 2010. 5. 4., 2010. 11. 2.>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2004. 3. 17., 2007. 7. 18., 2010. 5. 4., 2010. 11. 2.>

2. 법인해산 허가

[관련법 : 민법, 공익법, 공익령]

▢ 민법 [시행 2021.1.26.]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

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4. 12. 23., 1995. 7. 6.,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3. 정관변경 허가

[관련법 : 민법, 공익법, 공익령]

▢ 민법 [시행 2021.1.26.]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본재산 처분 허가

[관련법 : 공익법, 공익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 11. 20., 1995. 7. 6., 2011. 8. 19., 2016. 8. 31., 2016. 11. 29., 2020. 12. 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5. 7. 6.>

③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6. 11. 2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6. 11. 29.>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1995. 7. 6., 2011. 8. 19., 2016. 11. 29.>

②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입·지출을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② 공익법인은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 2021. 1. 5.>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3.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4.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본조신설 2016. 11. 29.]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6. 11. 29.>]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 또는 편입신고를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개정 2016. 11. 29.>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4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성실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21. 1. 5.>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최초 편입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⑤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성실공익법인은 편입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1. 8. 19.]

[제목개정 2016. 11. 29.]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6. 11. 29.>]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 임원취임 승인 : 공통

[관련법 : 공익법, 공익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5. 31., 1993. 11. 20., 1995. 7. 6., 2004. 3. 17., 2006. 6. 12., 2010. 11. 2.>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2006. 6. 12.>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삭제 <2010. 11. 2.>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6., 2012. 11. 6., 2014. 12. 9.>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개정 1995. 7. 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6. 수익사업의 승인

[관련법 : 공익법, 공익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상근임직원의 정수 승인

[관련법 : 공익법, 공익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이사회 소집 승인

[관련법 : 공익법, 공익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9. 공익(비영리)법인 지도 감독 : 공통

[관련법 : 공익법, 공익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 3. 14.]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4., 2018. 10. 30.>

④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 7. 24.>

⑤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4.>

10. 예·결산서 검토 : 공통

[관련법 : 공익법, 공익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12.]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14.]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1.5.]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 총　　괄

미래인재과장　　한 천 수

○ 편집위원

미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사무관　이 상 곤
미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주무관　신 수 환
미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주무관　김 마 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주무관　박 관 호

2021 전라북도 공익법인 업무편람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